

산재(사망)노동자 가족생활실태 및 경험에 관한 연구

2021. 11.

*이 연구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의 파트너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사는 삶 사단법인
희망씨

산재(사망)노동자 가족생활실태 및 경험에 관한 연구

2021. 11.

연구기관 더불어사는 삶 사단법인희망씨

연구팀

책임연구원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공동연구원 최진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지원센터 노무사)

 고태은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김호규 (사단법인희망씨 노동인권사업국장)

 김은선 (사단법인희망씨 상임이사)

목 차

제 1 장 서 론	7
제 2 장. 산업재해 현황 및 가족 지원체계	9
1. 산업재해 현황	9
1) 전체 산업재해 현황	9
2) 사고재해 발생현황	14
3) 질병재해 발생현황	15
2. 산재 가구의 생활 상태 분석(장해등급 1-3급 대상)	16
1) 산재보험 패널의 개요	16
2) 산재보험 패널 분석 결과	18
3. 산재법상 산재가족 지원 관련 법체계	23
1) 산재보험법의 개요 및 지원체계	23
2) 산재보험급여의 유형	23
3) 산재보험급여 수급 절차	24
4) 산재법상 가족 지원 체계	25
4. 산재근로자 가족 관련 공적 지원체계	25
1) 근로복지공단	25
2) 산업안전보건공단	36
3)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38
4)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보건센터)	42
5)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43
6)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긴급복지 서비스	45

7)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47
8) 산재근로자 가족 관련 공적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	47
5. 산재근로자 가족 관련 민간 지원체계 현황	49
1) 노동조합 및 시민대책위	49
2) 김용균재단	50
3) 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50
4) 근로복지공단 재활병원 산재장해가족 자조모임	50
5) 종교단체 중심 이주근로자 지원단체(엑소더스, 이주민쉼터, 교회 등) ...	51
6) 민간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	51
제 3 장. 산재노동자 가족생활 실태 및 경험	52
1. 질적 인터뷰 조사 개요	52
1) 조사 목적 및 연구 방법	52
2) 자료 분석 방법	54
2. 산재 유형별 사례 내 분석 결과	55
1) 사고사 유가족	55
2) 과로사 유가족	74
3) 중증 장애 가족	101
3. 사례 간 분석: 산재 가족의 주된 욕구 범주	125
1) 제도적 소외: 산재보험 승인 절차와 노동자 가족	125
2) 제도에서의 배제: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된 재난가족	128
3) 가족의 역할 과중: 일과 부담의 과중	131
4) 사회적 관계의 변화: 단절과 고립	133
5) 사회적 문제의 개인화	135
6) 가려진 경제적 욕구	141

제 4 장. 결론: 산재(사망) 노동자 가족지원 정책 제안	145
1. 산재 및 산재가족 지원을 위한 법체계 개선	145
1) 산재가족 지원 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한 법 개선: 재난가족지원법 제정	145
2) 산재가족 권익 옹호를 위한 법 개선	147
3) 산재법상 복지 증진 사업 지원 대상 및 사업 범위의 확대	148
2. 산재가족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와 서비스 욕구	149
1) 산재가족 지원 통합 시스템의 구축	149
2) 산재 가족의 주요 서비스 욕구	149
3. 나오며	152
참고문헌	153

제 1 장 서 론

- 본 연구의 목적은 산재(사망) 노동자 가족의 산업재해 관련 제도 경험 및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산재(사망)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드러내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 기존의 산재와 관련된 연구들은 크게 네 가지 이슈를 다루고 있다.
 - 첫째 산재보험 제도에 관한 연구이다. 이들 연구는 산재보험 제도의 사업 종류에 대한 합리적 재분류 방안(양재성, 2015), 산재보험 급여 선정기준의 적절성(박은주, 2015), 산재보험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장동한·문성현, 2015), 건설업 산재발생을 산정 및 평가제도 개선 연구(박용규, 2018), 예방적 산업재해 접근에 관한 연구(최창보, 2015)등 이다.
 - 둘째는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고용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에 관한 연구들이다. 비전속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국제노동법연구원, 2015), 대리운전(국제노동법연구원, 2015), 배달대행 배달원(한국노동연구원, 2016) 학생(충남대학교 산학연구, 2017), 서비스업종 취약계층(한국노동연구원, 2018) 플랫폼 기반 노동자(한국노동연구원, 2019) 등의 연구는 새롭게 등장하는 일의 형태들에 대한 산재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셋째는 산재노동자들의 실태 및 회복에 관한 연구들이다. 산재요양 종결이후 산재노동자들의 경제활동 상태분석(임찬수·신슬비, 2015),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 분석 연구(한충현, 2015; 한국사회정책연구원, 2018; 이준상, 2019), 원직 복귀 산재노동자들의 직장적응 분석(임정연·이영민, 2016), 산재노동자들의 일자리 만족도 조사 연구(강윤경 등, 2019), 산재 근로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김영춘, 2018) 등이 진행되었으며, 주로 산재 노동자들의 직업복귀와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 넷째는 산재노동자 대상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한충현·이승욱, 2015), 산재원인에 관한 연구(신운철 등, 2015) 등이 일부 진행되어왔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와 관련된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산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였다. 임신한 여성의 산재가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우송대학교, 2018; 2019)가 존재하긴 하지만 산재 가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산재는 산재 당사자가 가족의 주된 소득원이든 아니든 가족의 경제적 상태, 심리·정서적 상황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해당 가족은 산재 당사자에 대한 돌봄의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욕구에 직면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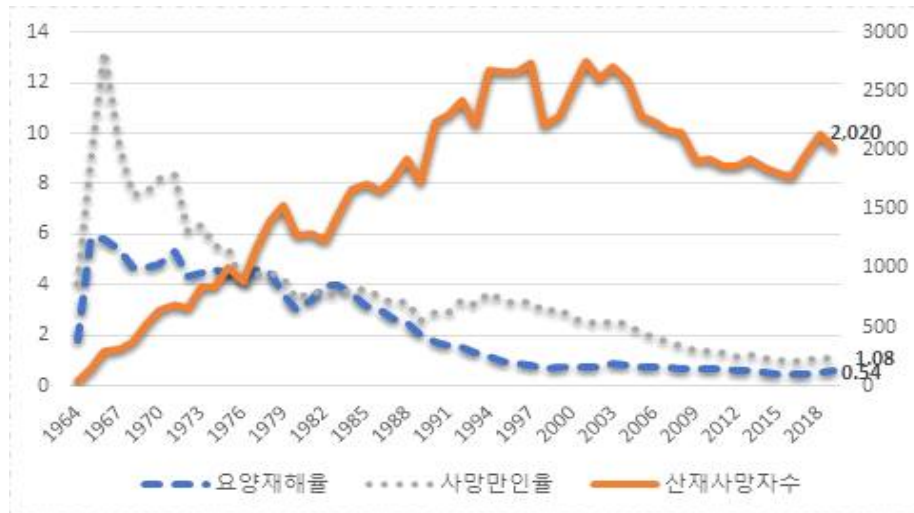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지원 체계는 산재 당사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산재가족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족부양’ 담론이 강한 한국의 경우 산재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가족들이 오롯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재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가족의 경험에 대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제 2 장. 산업재해 현황 및 가족 지원체계

1. 산업재해 현황

1) 전체 산업재해 현황

- 산재보험이 도입된 이후 요양재해율과 사망만인율¹⁾은 꾸준히 감소해 2019년 현재 각각 1.08과 0.54 수준이었다.



- * 산재사망자수에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통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 * 출처: 고용노동부(2020). 2019년 산업재해현황분석.

〈그림 1〉 요양재해율, 사망만인율, 산재사망자수 추이

- 최근 3년간의 요양재해자수 추이는 <표 1>과 같다. 산재사망자수는 꾸준히 증가하다 2000년대 중반부터 감소 경향을 보였으나(그림 1), 다시 201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8년 2,142명, 2019년 2,020명, 2020년에는 2,062명이었다. <표 1>의 사망자 통계는 산재로 인정된 경우 중에서도 사업장 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통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되었으며, 하루 평균 약 6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요양재해율은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요양재해자수의 비율이며,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산재 사망자수의 비율이다.

〈표 1〉 요양재해자수 현황

연도	대상 근로자수 (명)	요양재해자수(명)				요양 재해율 ²⁾ (%)
		계	사망 ¹⁾	부상	업무상질병 요양자수	
2018년	19,073,438	102,305	2,142	89,588	10,302	0.54
2019년	18,725,160	109,242	2,020	94,047	15,195	0.58
2020년	18,974,513	108,379	2,062	92,383	15,996	0.57

- 1) 재해자수에는 '18.1.1.부터 확대 적용된「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통상출퇴근 재해는 제외
2) 사망자수는 재해당시의 사망자수에 요양 중 사망자수를 포함한 것임.

※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의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통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3) 요양재해율(%) = $\frac{\text{요양재해자수}}{\text{근로자수}} \times 100$

○ 2020년 12월 말 기준 산재 증가현황은 다음과 같다.

- 재해율은 2020년 12월 기준 0.57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고, 사망만인율은 전년대비 0.9% 증가하였다. 재해자수 중 사고재해자수는 1.8% 감소한 반면, 질병재해자수는 5.3% 증가하였다. 사망자수는 전년대비 42명이 증가하여 2.1% 증가를 보였고, 그 중에서 사고사망자수는 3.2%, 질병사망자수는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산업재해 증감 현황(2020년 12월 말 기준)

구분	2020. 1~12월	전년 동기	증감	
			증감	증감율
○ 재해율	0.57	0.58	-0.01	-1.7
- 사고 재해율	0.49	0.50	-0.01	-2.0
- 질병 발생률	0.08	0.08	0.00	0.0
○ 사망만인율	1.09	1.08	0.01	0.9
- 사고 사망만인율	0.46	0.46	0.00	0.0
- 질병 사망만인율	0.62	0.62	0.00	0.0
○ 재해자수	108,379	109,242	-863	-0.8
- 사고 재해자수	92,383	94,047	-1,664	-1.8
- 질병 재해자수	15,996	15,195	801	5.3
○ 사망자수	2,062	2,020	42	2.1
- 사고 사망자수	882	855	27	3.2
- 질병 사망자수	1,180	1,165	15	1.3
○ 근로자수	18,974,513	18,725,160	249,353	1.3

* 출처: 고용노동부(2021). 2020년. 12월 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고용노동부.

- 2020년 12월 기준 사업장 규모별 재해자 및 사망자수와 그 비율을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재해율(1.13%)과 사망만인율(1.66‰)이 가장 높았다. 300인-999인 사업장의 경우 재해율은 낮았으나, 사망 만인율은 1.49로 두 번째로 높았다. 재해율의 증가는 300인-999인 사업장에서 12.5%로 가장 높게 증가하였고, 사망만인율은 5인-49인 사업장에서 5.4%로 가장 높게 증가하였다.

〈표 3〉 사업장 규모별 재해자수 및 재해율 증감 현황(단위: 명, %, ‰, %P, ‰P)

구 분	2020. 1~12월			전년 동기			증 감		증 감 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재해자수	재해율	재해자수	재해율
		사망자수	사망 만인율		사망자수	사망 만인율	사망자수	사망 만인율	사망자수	사망 만인율
총 계	18,974,513	108,379	0.57	18,725,160	109,242	0.58	-863	-0.01	-0.8	-1.7
		2,062	1.09		2,020	1.08	42	0.01	2.1	0.9
5인 미만	3,005,960	33,862	1.13	2,996,744	34,522	1.15	-660	-0.02	-1.9	-1.7
		500	1.66		494	1.65	6	0.01	1.2	0.6
5인~49인	8,272,899	47,048	0.57	8,166,782	49,156	0.60	-2,108	-0.03	-4.3	-5.0
		803	0.97		751	0.92	52	0.05	6.9	5.4
50인~99인	1,979,709	8,073	0.41	1,942,824	7,825	0.40	248	0.01	3.2	2.5
		160	0.81		180	0.93	-20	-0.12	-11.1	-12.9
100인~299인	2,523,122	8,933	0.35	2,459,398	8,263	0.34	670	0.01	8.1	2.9
		260	1.03		240	0.98	20	0.05	8.3	5.1
300인~999인	1,708,100	6,180	0.36	1,679,624	5,355	0.32	825	0.04	15.4	12.5
		255	1.49		271	1.61	-16	-0.12	-5.9	-7.5
1,000인 이상	1,484,723	4,283	0.29	1,479,788	4,121	0.28	162	0.01	3.9	3.6
		84	0.57		84	0.57	0	0.00	0.0	0.0

※ 출처: 고용노동부(2021)의 '2020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결과'

- 2020년 12월 기준 업종별 산재발생 현황을 보면, 기타의 사업이 전체 재해의 37%(40,573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제조업이 27%(28,840명), 건설업이 25%(26,799명), 운수·창고·통신업이 7%(7,251명) 등의 순이었다. 전년 대비 재해자수는 전산업에서 863명(0.8%) 감소했고, 산업별로는 제조업은 434명(1.5%), 건설업 412명(2.31%) 등은 감소하였고, 광업 210명(8.3%), 임업 13명(1.3%)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업종별 재해자수 및 재해율 증감 현황(단위: 명, %, ‰, %P, ‰P)

구 분	2020. 1~12월			전년 동기			증 감		증 감 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사망 만인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사망 만인율)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사망 만인율)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사망 만인율)
총 계	18,974,513	108,379	0.57	18,725,160	109,242	0.58	-863	-0.01	-0.8	-1.7
		2,062	1.09		2,020	1.08	42	0.01	2.1	0.9
광 업	10,664	2,753	25.82	11,108	2,543	22.89	210	2.93	8.3	12.8
		424	397.60		406	365.50	18	32.10	4.4	8.8
제 조 업	4,012,541	28,840	0.72	4,045,048	29,274	0.72	-434	0.00	-1.5	0.0
		469	1.17		492	1.22	-23	-0.05	-4.7	-4.1
건 설 업	2,284,916	26,799	1.17	2,487,807	27,211	1.09	-412	0.08	-1.5	7.3
		567	2.48		517	2.08	50	0.40	9.7	19.2
전기· 가스 수 도 업	79,034	105	0.13	76,687	111	0.14	-6	-0.01	-5.4	-7.1
		9	1.14		5	0.65	4	0.49	80.0	75.4
운수· 창고 통 신 업	936,449	7,251	0.77	910,585	6,173	0.68	1,078	0.09	17.5	13.2
		150	1.60		153	1.68	-3	-0.08	-2.0	-4.8
임업	101,404	1,030	1.02	91,682	1,017	1.11	13	-0.09	1.3	-8.1
		17	1.68		17	1.85	0	-0.17	0.0	-9.2
기타의 사업	10,683,419	40,573	0.38	10,239,876	41,811	0.41	-1,238	-0.03	-3.0	-7.3
		399	0.37		406	0.40	-7	-0.03	-1.7	-7.5
기타	866,086	1,028	0.12	862,367	1,102	0.13	-74	-0.01	-6.7	-7.7
		27	0.31		24	0.28	3	0.03	12.5	10.7

※ 기타는 어업, 농업, 금융보험업임

- 주요 업종별 재해 다발 상위의 세부 업종을 보면, 제조업에서는 기계기구, 금속,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의 재해자수 및 사망자수가 가장 많았고, 운수창고통신업은 육상 및 수상운송업의 재해자수 및 사망자수가 가장 많았다.
- 주요 업종에서의 산재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재해자수의 경우 도소매·음식·숙박업은 1,034명,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은 318명의 재해자 수가 감소했고, 육상 및 수상운수업에서는 1,079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서 342명이 증가하였다. 사망자수는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35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다음은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5명 감소였다. 사망자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으로 18명의 사망자가 증가하였다.

〈표 5〉 주요 업종별 재해 다발 상위 세부업종 현황(단위: 명)

대업종	중업종	2020. 1~12월		전년 동기		증 감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제조업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4,121	256	14,439	281	-318	-25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3,080	53	3,172	54	-92	-1
	식품제조업	2,920	25	2,905	19	15	6
	선박건조및수리업	2,492	28	2,306	29	186	-1
운수 창고 통신업	육상및수상운수업	4,607	108	3,528	104	1,079	4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 서비스업	2,402	36	2,422	43	-20	-7
	통신업	242	6	223	6	19	0
기타의 사업	도소매·음식·숙박업	18,592	117	19,626	114	-1,034	3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8,267	131	8,461	166	-194	-35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7,014	71	7,138	53	-124	18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사업	4,700	22	4,358	19	342	3

※ 출처: 고용노동부(2021)의 '2020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결과'

○ 재해정도(요양기간)와 요양재해 현황은 다음과 같다.

- 2019년 기준 91일-180일 사이의 요양재해자가 36,28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9-90일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29일~90일은 3,220명(11.21%), 6개월 이상은 1,700명(7.14%), 4일~28일은 1,241명(10.38%), 91일~180일은 911명(2.58%)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전년 대비 재해정도(요양기간)별 요양재해자 비교표(단위: 명)

구분	요양재해자	사망자	6개월 이상	91일 ~ 180일	29일 ~ 90일	4일 ~ 28일
2018년	102,305	2,142	23,826	35,377	28,734	11,953
2019년	109,242	2,020	25,526	36,288	31,954	13,194
증감 (%)	6,937 (6.78%)	-122 (-5.70%)	1,700 (7.14%)	911 (2.58%)	3,220 (11.21%)	1,241 (10.38%)

※ 사망자에는 사업장의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통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되어 있고, 재해자에는 제외되는 사고사망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재해정도(요양기간별)를 합한 수치와 재해자는 일치하지 않음.

- 산업별 재해정도와 요양기간을 살펴보면, 제조업에서는 91일~180일이 10,722명(36.63%), 건설업은 91일~180일이 10,286명(37.80%), 기타의 사업은 29일~90일이 14,651명(35.04%), 운수·창고·통신업은 29일~90일이 2,089명(33.84%)으로 가장 많았다.

〈표 7〉 재해정도(요양기간별) 산업재해 현황(단위: 명)

구분	전 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금융·보험업	기타의 사업
요양재해자	109,242	2,543	29,274	27,211	111	6,173	1,017	60	642	400	41,811
사망자	2,020	406	492	517	5	153	17	3	9	12	406
6개월 이상	25,526	487	7,835	7,981	28	1,303	255	14	146	67	7,410
91일 ~ 180일	36,288	181	10,722	10,286	34	1,799	367	14	215	127	12,543
29일 ~ 90일	31,954	231	7,819	6,478	32	2,089	300	23	203	128	14,651
4일 ~ 28일	13,194	1,235	2,347	1,870	10	814	75	6	67	64	6,706

※ 기타의 사업에는 통상 서비스업으로 지칭되는 도·소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음식·숙박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상세한 내용은「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참조)

2) 사고재해 발생현황

○ 2020년 기준 총 사고재해자는 92,383명이었다.

- 사고재해자의 재해유형은 넘어짐이 20,659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약 22%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떨어짐이 14,406명(15.6%), 끼임 12,894명(14%), 절단·베임·찢림 10,374명(11.2%) 순이었다. 2019년과 비교할 때, 사고재해자 중 가장 많이 증가한 재해유형은 교통사고 616명, 넘어짐 558명이었다.

○ 사고 사망자는 총 882명이었다.

- 사고 사망자의 재해유형은 떨어짐이 328명(37.2%)로 가장 많았고, 끼임 98명, 화재폭발과열 72명, 부딪힘 72명 순이었다. 사고사 중에서는 2019년 대비 화재폭발과열이 35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물체에 맞음 22명, 기타 7명, 교통사고 6명 순으로 증가하였다.

〈표 8〉 전년 대비 재해유형별 사고재해 현황(단위: 명, %)

구분		총계	떨어짐	넘어짐	깔림·뒤집힘	부딪힘	물체에 맞음	무너짐	끼임	절단·베인·찔림	화재·폭발·파열	교통사고	무리한동작	기타
2020. 1~12월	재해자	92,383	14,406	20,659	2,201	7,503	7,248	535	12,894	10,374	549	5,533	4,343	6,138
	사망자	882	328	17	64	72	71	34	98	1	72	61	0	64
전년 동기	재해자	94,047	15,103	20,101	2,235	7,828	7,358	610	13,007	10,734	490	4,917	4,548	7,116
	사망자	855	347	18	67	84	49	31	106	4	37	55	0	57
증감	재해자	-1,664	-697	558	-34	-325	-110	-75	-113	-360	59	616	-205	-978
	사망자	27	-19	-1	-3	-12	22	3	-8	-3	35	6	0	7
증감율	재해자	-1.8	-4.6	2.8	-1.5	-4.2	-1.5	-12.3	-0.9	-3.4	12.0	12.5	-4.5	-13.7
	사망자	3.2	-5.5	-5.6	-4.5	-14.3	44.9	9.7	-7.5	-75.0	94.6	10.9	0.0	12.3

※ 기타는 감전, 이상온도접촉, 빠짐·익사, 화학물질누출, 산소결핍, 체육행사, 폭력행위, 동물상해 등임

※ 출처: 고용노동부(2021)의 '2020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결과'

3) 질병재해 발생현황

○ 2020년 기준 총 질병재해자는 15,996명이었다. 이중 직업병은 4,784명, 직업관련성 질병은 11,212명이었다.

- 직업병 중에는 난청이 2,7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진폐가 1,288명으로 많았다. 직업관련성 질병 중에는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이 5,25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고성요통이 2,465명, 퇴심질환이 1,167명 순이었다.

- 질병재해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직업병의 경우 기타를 제외하면, 금속중금속 중독이 71.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난청이 36.5%로 높았다. 직업관련성 질병의 경우,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의 증가율이 높았다.

○ 2020년 기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1,180명이었다.

- 질병 사망자 중에서 직업병은 진폐가 412명으로 질병 사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직업관련성 질병에서는 뇌심질환이 463명으로 대부분의 사망원인이었다.

- 질병 사망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직업병의 경우 금속중금속 중독이 2명 증가했고, 진폐 사망자가 1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관련성 질병에서는 뇌심질환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40명 감소하였고, 나머지 질환은 사망자가 없었다.

〈표 9〉 전년 대비 질병재해 현황(단위: 명, %)

구분	직업병									작업관련성 질병						
	총계	소계	진폐	난청	금속중독	유기화합물중독	기타화학물질중독	기타	소계	뇌심질환	근골격계질환				기타	
											신체담작업	요통	사고성요통	기타		
2020. 1~12월	계	15,996	4,784	1,288	2,711	16	15	104	650	11,212	1,167	5,252	1,712	2,465	172	444
	요양자	14,816	4,135	876	2,711	12	6	65	465	10,681	704	5,252	1,712	2,465	172	376
	사망자	1,180	649	412	0	4	9	39	185	531	463	0	0	0	0	68
전년 동기	계	15,195	4,035	1,467	1,986	9	19	128	426	11,160	1,460	4,988	1,914	2,362	176	260
	요양자	14,030	3,428	1,065	1,986	7	7	81	282	10,602	957	4,988	1,914	2,362	176	205
	사망자	1,165	607	402	0	2	12	47	144	558	503	0	0	0	0	55
증감	계	801	749	-179	725	7	-4	-24	224	52	-293	264	-202	103	-4	184
	요양자	786	707	-189	725	5	-1	-16	183	79	-253	264	-202	103	-4	171
	사망자	15	42	10	0	2	-3	-8	41	-27	-40	0	0	0	0	13
증감율	계	5.3	18.6	-12.2	36.5	77.8	-21.1	-18.8	52.6	0.5	-20.1	5.3	-10.6	4.4	-2.3	70.8
	요양자	5.6	20.6	-17.7	36.5	71.4	-14.3	-19.8	64.9	0.7	-26.4	5.3	-10.6	4.4	-2.3	83.4
	사망자	1.3	6.9	2.5	0.0	100.0	-25.0	-17.0	28.5	-4.8	-8.0	0.0	0.0	0.0	0.0	23.6

※ 직업병 기타는 물리적 인자, 이상기압, 진동장해, 직업성 암, 직업성 피부질환 등임

※ 작업관련성 질병 기타는 간질환, 정신질환 등임

2. 산재 가구의 생활 상태 분석(장해등급 1-3급 대상)

앞 절에서는 산업재해의 전체현황과 사고재해 및 질병재해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하는 산재보험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장해등급 1-3급 산재가구의 생활 상태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본다.

1) 산재보험 패널의 개요

○ 산재보험 패널조사는 요양종결 산재노동자를 대상으로 주로 요양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 및 이동 경로,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과 생활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산재노동자에 적합한 중장기의 요양 및 재활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정석훈·신슬비, 2020:4).

○ 산재보험 패널조사는 산재 노동자의 요양 종결 후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표본을 교

체하고 있다.

- 1차 코호트 조사는 2012년 한 해 동안의 요양종결 산재노동자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의 추적조사로 마무리되었고, 2018년 부터는 2017년 한 해 동안의 요양종결 산재노동자를 새로운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2차 코호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요양이 종결된 산재노동자로,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한 행정자료의 81,252명이다(정석훈·신슬비, 2020:5-6).
- 산재보험 패널조사의 개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0〉 2차 코호트 산재보험 패널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2017년 산재요양종결자 75,392명
표본설계	장해등급별: 1~3급 88명, 무장해자 650명 할당 후 나머지 등급에서 제 급근비례배분 성별, 연령대별: 각 1명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
표본	3,294명
조사기간	매년 8~10월
패널교체주기	5년
조사방법	Tablet PC를 활용한 방문면접조사(TAPI)
조사내용	개인 특성, 산업재해와 산재보험, 재해사업장, 경제활동상태, 일자리 이력, 건강과 생활, 가구 특성 등
법적근거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승인통계(제439001호)

** 출처: 정석훈·신슬비(2020).

- 본 연구는 2019년의 2차코호트 2차년도 산재보험패널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 본 연구는 산재사망 및 중증재해 가족을 분석하고 있기때문에, 산재보험 패널 자료에서 노동력 상실의 100%로 인정되는 제1급에서 제3급의 중증 장해 판정을 받은 재해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2) 산재보험 패널 분석 결과

- 산재보험 패널의 장해등급별 현황을 보면, 무장해가 62%로 가장 많았고,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장해등급 1-3급은 전체 표본의 0.4%를 차지하고 있었다.

구분	장해등급(6범주)						Total
	1~3급	4~7급	8~9급	10~12급	13~14급	무장해	
가중치 적용 빈도	311	980	1,869	10,926	14,254	47,052	75,392
비율	0.41	1.30	2.48	14.49	18.91	62.41	100.00

- 장해등급별 경제활동 상태를 보면, 1-3급은 94%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는 1.2%였다.

장해등급 (6범주)	경제활동유형(6범주)					
	원직장복귀자	재취업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1~3급	0.00	4.85	0.00	0.00	1.24	93.91
4~7급	20.54	19.24	1.67	0.78	4.27	53.50
8~9급	24.39	33.67	5.78	0.79	6.23	29.13
10~12급	26.59	38.28	5.28	0.26	5.03	24.56
13~14급	26.66	43.48	6.15	0.49	7.14	16.09
무장해	33.95	38.25	5.38	0.17	5.87	16.37

- 직업 재활서비스 이용 여부를 보면, 장해등급 1-3급은 94%가 이용하지 않고 있었고, 사회재활서비스는 63%가 이용을 하고 있지 않았다.

장해등급(6범주)	직업재활서비스 미이용(%)	사회재활서비스 미이용(%)
1~3급	93.76	62.98
4~7급	76.76	67.03
8~9급	81.03	78.22
10~12급	78.61	79.08
13~14급	87.75	87.29
무장해	96.34	96.60

- 근로복지공단 지원서비스 중 확대를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 장해등급 1-3급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66%, 심리관련 프로그램 13% 순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는 모든 산재 노동자에게서 높았고, 중증장해 산재노동자들은 심리관련 프

그림과 취미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해등급 (6범주)	심리 관련 프로그램 (상담서비스 등)	취업 관련 프로그램 (취업준비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 (금연,건강검진 등)	취미 관련 프로그램 (음악, 미술 등)	기타
1~3급	12.90	7.37	66.18	11.22	2.33
4~7급	8.12	28.38	53.91	6.12	3.46
8~9급	3.81	36.66	43.70	8.93	6.90
10~12급	3.37	33.48	55.22	4.68	3.24
13~14급	4.77	38.64	46.81	6.64	3.14
무장해	4.74	35.87	44.78	9.20	5.41

○ 재활서비스의 필요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우선 심리 및 가족상담지원 서비스의 필요 정도에 대해서 장해등급 1-3급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52%가 넘었다. 다른 장해등급에서 심리 및 가족상담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정도가 10-30%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증장애 산재 노동자 및 가족의 심리 및 가족상담지원 욕구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장해등급 (6범주)	매우 필요	조금 필요	별로필요 없음	전혀필요 없음
1~3급	24.18	27.69	21.61	26.52
4~7급	7.55	26.58	35.98	29.89
8~9급	4.32	19.75	38.17	37.76
10~12급	3.42	16.50	39.16	40.92
13~14급	3.70	14.53	41.66	40.12
무장해	3.79	14.75	40.60	40.85

- 다음으로 경제적 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지원에 대해서 1-3급 산재노동자들은 7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중증장애가족의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4-7급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6%였다.

장해등급 (6범주)	매우 필요	조금 필요	별로필요 없음	전혀필요 없음
1~3급	41.04	31.53	8.41	19.02
4~7급	29.15	37.07	17.90	15.88
8~9급	23.97	33.14	21.27	21.62
10~12급	22.01	33.57	20.78	23.64
13~14급	19.94	28.32	29.52	22.23
무장해	19.06	27.56	26.73	26.65

○ 비경활 인구 중 미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해결의 1순위로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3급의 중증장애 노동자는 산재, 장애연금 등의 사회보험 급여가 경제적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0%에 달했다. 다음으로 부모 또는 형제 등으로 부터의 사적 이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1% 수준이었다.

장애등급 (6범주)	부모 또는 형제, (손)자녀의 도움을 받음	다른 친척의 도움을 받음	예전에 모아둔 저축	산재 장애연금 등의 사회보험급여	국민기초생 활보장급여 등의 공적이전 소득으로	배우자의 수입	기타
1~3급	20.73	1.30	5.55	59.96	6.24	6.21	0.00
4~7급	21.76	1.17	12.14	43.58	5.63	14.88	0.84
8~9급	29.53	2.12	20.49	9.81	18.05	18.16	1.86
10~12급	26.43	1.45	25.79	7.46	13.97	23.95	0.94
13~14급	26.90	2.05	32.94	4.50	14.26	16.98	2.37
무장애	35.87	1.04	28.71	6.83	9.75	15.74	2.06

○ 최근 1년간 필요한 진료나 검사를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1-3급은 48%가 ‘거동이 불편해서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워서’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의료기관이 너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27%), ‘치료비용이 너무 부담되어서’(25%) 순이었다.

장애등급 (6범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기타
1~3급	25.47	26.60	47.94	0.00	0.00	0.00	0.00	0.00	0.00
4~7급	34.19	4.90	28.33	3.93	0.00	17.15	0.00	5.65	5.86
8~9급	78.53	3.56	0.00	3.75	3.56	7.30	0.00	3.30	0.00
10~12급	62.69	0.00	0.00	6.77	0.00	27.67	0.00	1.20	1.68
13~14급	47.79	0.00	1.54	12.44	1.92	31.26	3.42	0.00	1.62
무장애	45.26	3.97	4.49	4.75	4.00	27.45	0.00	10.09	0.00

- ① 경제적 이유(치료 비용이 너무 부담되어서)
- ② 의료기관이 너무 멀어서, 교통이 불편해서
- ③ 거동이 불편해서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워서
- ④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아서
- ⑤ 어디로 가야할지 잘 몰라서(정보 부족)
- ⑥ 방문 시간이 없어서(육아, 직장 등)
- ⑦ 빠른 시일 내에 예약이 되지 않아서
- ⑧ 나(또는 가족)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가 없어서

- 산재가 오늘날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1-3급의 경우 92%가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었고,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까지 고려하면, 98%가 산재가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장해등급 (6범주)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침	많은 영향을 미침	보통	약간 영향을 미침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1~3급	91.68	6.93	1.39	0.00	0.00
4~7급	54.19	30.88	8.38	6.17	0.39
8~9급	37.12	37.35	11.32	12.49	1.72
10~12급	20.46	33.14	24.08	20.17	2.14
13~14급	12.89	30.78	29.28	21.90	5.15
무장해	9.15	23.79	34.58	22.43	10.05

- 현재 자신의 생활에 대해 느끼는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장해등급 1-3급은 48%가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다른 등급에서 이 비율은 30%에 못미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율로 중증장해 산재 노동자들은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장해등급 (6범주)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3급	21.54	29.95	33.54	14.97
4~7급	34.56	36.40	22.07	6.96
8~9급	39.21	36.78	19.85	4.17
10~12급	46.59	35.99	15.18	2.24
13~14급	48.56	33.11	16.02	2.31
무장해	50.73	34.75	12.13	2.39

- 이러한 경향은 ‘자신에 대해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는 응답이 47%인 것에서도 이 어지고 있었다. 다른 집단들은 이러한 부정적 인식 비율이 30%보다 약간 높거나 낮은 수준이었다.

장해등급 (6범주)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3급	9.14	44.20	40.57	6.08
4~7급	19.77	46.61	29.81	3.82
8~9급	13.59	58.39	24.67	3.35
10~12급	17.60	54.15	25.61	2.64
13~14급	19.26	53.30	24.38	3.06
무장해	21.96	53.37	21.40	3.27

-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장애등급 1-3급은 40%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다른 집단들은 20% 수준 또는 그 이하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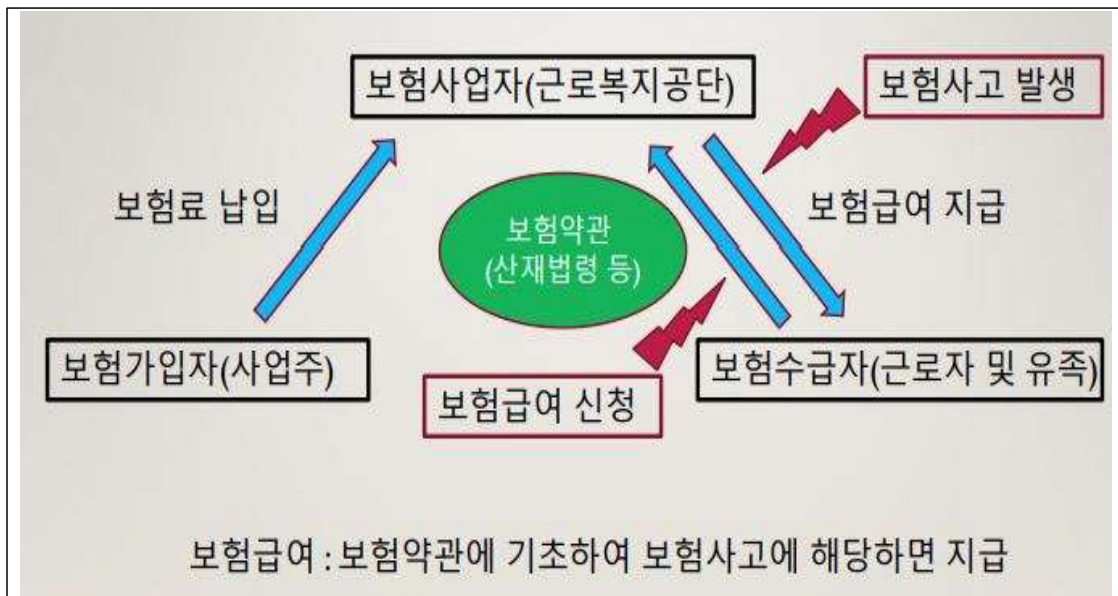
장애등급 (6범주)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3급	24.51	34.95	31.82	8.71
4~7급	45.24	31.24	17.90	5.63
8~9급	47.66	32.22	17.92	2.21
10~12급	55.25	31.38	12.25	1.12
13~14급	54.59	29.05	14.41	1.96
무장애	58.01	27.91	12.56	1.52

- 중증장애 1-3급 산재노동자들은 가구소비에서 보건의료비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등급 1-3급의 경우 월 평균 30만원을 보건의료비 지출로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4-7급은 14만원 정도를 보건의료비 지출에 사용하고 있었다. 전체 평균 보건의료비 지출액은 약 11만원 이었다. 중증장애 가족의 경제적 욕구는 높은 보건의료 지출에서 비롯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생활비 부족을 경험한 가구는 27%였는데, 중증장애 1-3급의 산재노동자들의 경우 30%가 생활비 부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생활비는 1-3급의 경우 주로 저축, 예금, 적금의 해약(36%)을 통해서 마련한다고 1순위로 언급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친척이나 친지에게 빌린다는 응답이 25% 였다.
-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중증장애 1-3급의 산재노동자들은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못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직업재활서비스나 사회재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가족 상담지원 서비스, 경제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경제적 문제는 사회보험 급여나 부모 형제 등 가족의 도움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산재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 자존감 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 절의 분석내용은 주로 산재 당사자의 응답에 기초하고 있지만, 경제활동을 하던 가족 구성원이 산재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짐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 산재 당사자 및 가족이 산재로 인해 경험하는 심리적 충격 등은 산재가족이 공유하고 있는 어려움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산재 당사자에 대한 정책적 개입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가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산재법상 산재가족 지원 관련 법체계

1) 산재보험법의 개요 및 지원체계

- 산재보험 제도는 다른 보험제도와 유사하게 보험사업자(근로복지공단)에게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사고 발생시 보험수급자(재해근로자 또는 유족)가 보험급여를 신청하면, 보험사업자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보험수급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때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 보험에서는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이를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그림2〉 산재보험 체계

- 일반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수급자가 보험재정에 기여할 보험가입자로서의 부담(보험료 납입)도 하지만, 산재보험은 보험수급자에게 보험가입자로서의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적보험으로서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

2) 산재보험급여의 유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함)에서는 산재를 ‘업무상의 재해’로 표현하

고(제5조제1호), 업무상의 재해의 종류로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하여(제37조제1항),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6조제1항).

- 산재가 승인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재해근로자의 치료비용 보상을 위한 요양급여(제40조), 간병에 따르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간병급여(제61조), 중증 요양상태에 따른 치료기간 장기화(2년 초과)시 지급하기 위한 상병보상연금(제66조), 치료기간 중 임금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휴업급여(제52조), 신체기능 상실을 보상하기 위한 장애급여(제57조), 장애 발생시 직장복귀 또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재활급여(제72조), 사망시 유족을 보상하기 위한 유족급여(제62조), 장례비를 보상하기 위한 장례비(제71조)가 있다.

3) 산재보험급여 수급 절차

- 산재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어(제36조제2항, 시행령 제21조제1항),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보험수급권자(재해근로자 또는 유족)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 신청 원인이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인 경우(사고나 출퇴근재해로 인한 사망 포함)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심사하고, 업무상 질병인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포함)에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독립위원회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신청한 재해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이 있는 뒤 14일 이내에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 대표적인 보험급여라 할 수 있는 요양급여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나, 7일의 기간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기간(현장 조사),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기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특별진찰 기간, 신청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 보험가입자(사업주)에 대한 통지 의견 제출에 걸리는 기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되어 실제로는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 한편, 산재보험과 관련한 신청서식의 종류는 수십 가지에 이르러서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때 어떤 서식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특

정 서식에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도 ‘신청주의’에 따라 신청하는 쪽에서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요하게 주장할지, 주장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 제출이 필요한지 제대로 알기 어렵고, 중증 산재나 사망 산재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생업이 있는 산재 가족들이 신청-주장-입증에 관한 모든 활동을 해야 하는 시간상의 부담 또한 무시할 수 없다.

4) 산재법상 가족 지원 체계

- 산재법에서는 제92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산재 가족에 대한 지원 규정으로서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내규인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1995.10.10. 제정)을 두어 생활안정자금 용자사업,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을 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용자사업은 산재 근로자와 산재사망 유족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유족이 아닌 경우에는 산재 가족에게 적용되지 않고, 장학사업은 유족인 경우를 포함하여 중증 재해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다.
- 한편, 산재법 제61조에서는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해근로자가 간병이 필요한 상태인 경우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 가족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4. 산재근로자 가족 관련 공적 지원체계

1) 근로복지공단

(1) 근로복지공단의 개요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 서비스, 산재의료 서비스, 근로복지 서비스 등 노동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 관련 서비스(안내 및 미가입 사업장 신고 서비스)제공, 산재 신청부터 보상, 재활, 직업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재근로자복지기금, 산재근로자 및 자녀장학사업, 용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 산재예방 지원을 위해 기업에 대한 복지관련상담서비스 제공 및 사내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 산재근로자 가족에 대한 간접 지원

○ 재활프로그램은 재활이 필요한 산재근로자에게 시기마다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재활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산재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것이므로 이를 가족 관련 공적 지원체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하지만 재활이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 활동에 필요한 신체 기능이 저하된 상태여서 필요한 서비스 신청과 돌봄은 실질적으로 가족이 담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재활프로그램 자체가 산재 가족이 겪는 사회적·정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도 하고 그 정보제공은 산재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재활프로그램은 산재의료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산재근로자의 상태를 크게 요양 단계 - 회복 단계 - 직업복귀 3단계로 구분하여 서비스가 구성되어 있다.

○ 첫째, 요양단계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A. 심리상담서비스(산재근로자 / 가족 지원)

- 산업 재해로 인한 불안, 가족 및 대인관계, 직업 및 사회적응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개별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 수급대상은 다차원심리검사결과 임상척도 총점 또는 임상척도별 점수가 60점 이상인 산재근로자 및 가족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심리상담 담당자가 제공하는 기초심리상담, 심리학회 또는 상담학회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심리상담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3년 이상 실무자에 종사한 사람이 제공하는 집중심리상담 등이 제공된다. 심리상담의 경우 기본 8회(최대 10회)를 제공하며 공단은 심리검사비용과 교통비를 지원한다. 여기서 다차원심리검사란 산재근로자들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심리적·정신적 증상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산재사고 이후 체계적으로 공단 및 외부 전문상담기관의 사회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심리검사 도구를 의미한다.

B. 희망찾기프로그램(산재근로자 지원)

-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가족 및 간병인 참여 가능)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요양 중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심리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심리상담사의 진행으로 동료 산재근로자와 함께 하는 집단활동프로그램이다. 스트레스관리, 분노 조절 프로그램, 강점 찾아보기, 구직계획세우기 등이 진행된다. 산재보험의료기관 또는 전문기관(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위탁하여 운영되며 1회 2시간, 주 1~3회 운영된다(비용무료, 교통비 실비지급).

C. 멘토링프로그램(산재근로자 지원)

- 직업 및 사회복귀에 성공한 산재 경험자를 멘토로 위촉하여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의 심리적 불안해소와 자신감 회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필요시, 요양종결 3개월 이내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개별상담, 집단프로그램 강의, 작업능력평가 동행 등이 제공되며 요양중인 산재근로자 1인당 최대 6회 제공가능하다.

D. 취미활동반 지원(산재근로자 지원)

-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 이환자가 요양기간 중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취미활동을 지원하며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의 입원환자수가 월평균 10인 이상인 의료기관 중 취미활동반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그 대상이 된다. 취미활동반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 강사료 등을 1인당 월 5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작품전시 활동 시 특별지원금이 지급된다.

E. 가족화합지원프로그램

- 요양중인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2박 3일 힐링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가족 간 화합을 통해 요양 중 스트레스와 심리불안을 치유하고 재해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위한 재활의욕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재근로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마음치유 프로그램, 만들기 체험 등이 포함되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을 하거나 산재의료기관 등에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둘째, 회복단계 제공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A. 직장복귀지원 프로그램(산재근로자 지원)

- 요양 중이며 직업복귀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재근로자 소속병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직장복귀 계획수립에서 지원까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직장복귀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전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산재근로자의 ‘현재 상병상태, 직무수행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는 작업능력평가와 직무수행이 어렵고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을 통한 직무수행능력 향상이 예상되는 경우 요양단계부터 재활계획에 따라 신체기능향상 훈련, 모의 작업훈련, 사업장 훈련지도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단, 이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인 안산·인천·창원·대구·순천·대전·동해병원에서 실시된다.

B. 재활서비스 지원(산재근로자 지원)

- 상병 및 장애부위에 대한 운동능력 회복을 돕기 위해 재활스포츠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치료 종결과 장애가 예상되는 통원요양 중인 자 혹은 요양종결일부터 6개월 이내인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일반 재활스포츠와 특수재활서비스로 구분되는데, 일반재활스포츠는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요가, 필라테스, 댄스스포츠,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배드민턴, 스크린골프·야구, 실내양궁 및 Package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월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간 지원된다. 특수 재활스포츠의 경우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이 진행되며 월60만원 한도 내에서 1개월간 지원된다.

C. 사회적응프로그램(산재근로자 지원)

-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및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자기관리능력, 지역사회적응능력 및 직업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활동프로그램으로 장애등급 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통원요양 중인 자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위탁운영기관을 통하여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1개월~3개월 기간 동안 16회기 또는 24회기 진행되며, 운영프로그램(1개운영반 당)별 6명에서 12명 참가한다.

D. 재활보조기구 지급

- 장애 종류, 정도에 따라 31종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230개 품목의 재활보조기를 사거나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재활보조기 115개 품목의 수리 비용을 지원한다(예. 자동차 이동식 리프트 설치).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되어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이면서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 셋째, 직업복귀단계 제공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A. 원직장복귀 지원(산재근로자 / 산재사업장 지원)

- 사업장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 및 해당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원직장복귀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 및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원직장복귀 전과 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원직장 복귀 이전에는 공단 직원이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원직장복귀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재활상담을 진행한다. 세부적으로 1. 원직장복귀에 필요한 ‘자신감 향상 등’ 산재근로자 심리상담 지원, 2.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원직장복귀를 위하여 [작업능력평가와 강화프로그램] 무료 제공, 3. 요양 중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직장적응훈련비 지급(요양종결 이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4.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업무 공백 때문에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소규모사업장 50인 미만 의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지원금 일부 지원, 5. 산재근로자와 직장동료가 함께하는 간담회, 야유회 등 직장동료화합프로그램 지원으로 구성된다. 원직장복귀 이후에는 산재근로자 1~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직장복귀지원금 월 45만원~80만원이내, 최대 12개월, 직장적응훈련비 월 45만원 이내, 최대 3개월, 재활운동비 월 15만원 이내, 최대 3개월)하거나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산재근로자에게 직무지원 보조기구 지원하고 재활공학연구소 매년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우수기업 선정·포상한다.

B. 재취업 지원(산재근로자 지원)

- 재취업 지원 서비스로는 직업훈련지원과, 재취업 연계 서비스가 있다. 우선 직업훈련지원은 요양(통원 중) 또는 요양 종결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에게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등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업훈련지원 신청일 현재 산재장해 제1급~제12급 판정자,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제1~12급)가 예상된다는 의학적 소견 있는 자, 취업 자영업 포함 하고 있지 않은 자(취업 일용직으로 1개월 동안 취업일수 10일 이상, 1주 동안 15시간 이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자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훈련가능 직종으로는 HRD Net(www.hrd.go.kr)에 등록된 인증과정(재직자 교육과정은 제외됨.),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훈련과정, 대형면허 및 특수면허 등이 있으며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횟수는 2회 이내로 제한된다. 총 12개월 이

내의 기간동안 서비스가 지원되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훈련은 정부지원훈련비 전액을 지원하고 위 훈련기관 이외의 경우 1인당 600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 재취업연계서비스는 산재근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산재근로자에게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연계 등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등급 9급이상의 경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를, 1-12급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을, 13-14급의 경우엔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지는 대체인력뱅크를 연결해준다. 가까운 소속기관 또는 재활지원팀 방문·상담 후 ‘구직신청서’ 작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1단계(참여수당)엔 최대 15~25만원, 2단계(훈련지원수당)엔 최대 월284천원을 지원하고 (단, 2단계 직업훈련은 산재 직업훈련 8개월 이내 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훈련수당은 훈련과정에 따라 최대 100~200만원 지원) 고용서비스민간위탁 사업같은 경우엔 취업활동비 명목으로 1회당 2만원(최대 1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C.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지원프로그램(산재근로자 지원)

- 요양종결된 산재근로자 중에서 합병증 등으로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요건으로는 요양이 종결된 산재근로자 중 장애급여를 지급결정 받은 자 또는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에 대해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에서 정하고 있는 인정범위에 해당된다고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눈의 장애에 따른 예방관리 등 총 11종 44개 상병을 대상으로 해당 예방관리 증상별로 정하고 있는 진료인정기준 진찰, 검사, 약제, 처치, 물리치료 등 범위 내에서 진료 또는 약제비용을 지원한다. 단,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개인질환 약제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로 지원하지 않으며 증상별로 정한 진료인정기준에서 명시되지 않은 검사, 처치 등에도 지원이 불가하다. 뿐만아니라 합병증 등 예방관리로 승인된 유효기간 내에서만 예방관리를 받을 수 있다. 예방관리 의료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단에 의료기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응급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예방관리 증상과 동일한 사유로 재요양을 한 경우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을 수 없다.

D. 산재장애인 국가장애인 등록 지원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장해 정도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 보호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판정 기준과 산재보험 장해등급 비교를 통해 장애인 등록에 대한 의사를 확인한 다음 읍·면·동에 장애인 등록을 의뢰한다. 이는 공단이 산재장해인에게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등록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자치단체 기관 연계로 하는 원스톱서비스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3) 산재근로자 가족에 대한 직접 지원 프로그램 현황 및 구체적 내용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 유족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자금 용자사업, 산재 사망·중증 요양상태·1~7등급 장해 근로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사업, 요양 중 간병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간병급여 지급, 장해 1~3급 및 중증 폐질환 근로자에 대한 전문간병서비스 제공사업, 산재의료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가족화합 지원프로그램 등 사업을 하고 있다. 각 사업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A.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사업

- 산재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 저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그 종류로는 의료비, 혼례비, 장제비,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사업자금이 있으며 취업안정자금 용자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서 ①산재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②상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③사업자금의 경우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9조에 의한 창업지원 결정자 ④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⑤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혼례비·장제비에 한함)에 해당되는 자이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의미하며 2020년 중위소득 3인가구 기준 3,870,577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용자한도액은 1세대 당 2000만원 이내에서 각 용자종류별 한도에 부합해야하며 의료지, 혼례비, 장제비, 취업안정자금의 경우 1000만원,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사업자금의 경우 15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생활안정자금 용자 사업 규모는 2015년에 이용 인원 1,969명, 총 금액 191억여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부터는 점차 이용 인원 및 이용 금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1〉 근로복지연구원, '20년 4/4분기 재할 통계 현황 中〉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합 계		담 보		신 용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12	1,776	16,249	-	-	1,776	16,249
'13	1,589	15,012	-	-	1,589	15,012
'14	1,889	17,932	-	-	1,889	17,932
'15	1,969	19,148	-	-	1,969	19,148
'16	1,765	16,388			1,765	16,388
'17	1,742	16,498			1,742	16,498
'18	1,433	13,271			1,433	13,271
'19	1,462	13,251			1,462	13,251
'20.12	1,459	13,635			1,459	13,635

B. 산재근로자 및 배우자·자녀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 산재 유족, 산재근로자 및 배우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매년 초 장학생을 선발하여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20년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자(단, 자사고 등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2,3학년은 신청 가능)로 ①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②산재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③산재보험법에 의한 제1급~제7급 장애판정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④산재보험법에 의한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환화탄소 CS2 질병판정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가 이에 해당된다. 단, 여기서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로 학력을 인정하는 정규 고등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에 한한다. 본 사업은 이들을 대상으로 2020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단, 연도 중 장애등급 결정 등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부터 지급)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연간 500만원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한편, 타 법령 등으로 장학금을 수혜하거나 학교에서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 혹은 자퇴한 경우, 3개월 이상 휴학한 때에는 그 기간 중엔 지원이 불가하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사장이 지급중지를 결정한 때에도 지원제외 대상이 된다.

-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장학사업 중 대학 학자금 지원은 2015년부터 중단되었고, 생활안정자금 용자사업과 마찬가지로 2015년에 이용 인원 3,142명, 총 금액 47억여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부터는 점차 이용 인원 및 이용 금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0년에 이르러서는 그 이용규모가 대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12〉 근로복지연구원, '20년 4/4분기 재활 통계 현황 中

연도	합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2	4,854	8,836	-	-	3,678	5,489	1,176	3,347
'13	3,767	6,601	-	-	3,056	4,531	711	2,010
'14	3,496	6,138	-	-	2,868	4,260	628	1,878
'15	3,142	4,743	-	-	3,142	4,743	-	-
'16	2,728	4,149	-	-	2,728	4,149	-	-
'17	2,522	3,848	-	-	2,522	3,848	-	-
'18	2,529	3,792	-	-	2,529	3,792	-	-
'19	2,200	2,630	-	-	2,200	2,630	-	-
'20.12	438	649	-	-	438	649	-	-

- 생활안정자금 용자사업과 장학사업을 간단하게 비교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고, 구체적인 내용은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또는 근로복지넷(<https://www.workdream.net>)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표 13〉 산재법상 가족 지원

구분	대상	종류	내용
생활자금 용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장해등급 1급~9급 5년 이상 장기요양 이환화탄소 질병 3개월 이상 요양 평균임금≤최저임금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취업안정자금,	한도액 범위 내 연리 1.25% 저리 용자
장학사업	사망근로자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배우자, 자녀 장해등급 1급~7급 배우자, 자녀 5년 이상 장기요양 이환화탄소 질병 배우자, 자녀	장학금 지원	재학중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C. 중증 산재장해인 전문간병서비스

- 가족의 간병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산재장해인 1~3급 및 고령·중증 진폐장해인에게 주거 및 생활공간 제공을 위한 전문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에 따라 상이한 입소기준을 가진다. 경기요양병원부설케어센터에선 산재 장애등급 1~3급 종결자로 별도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하며 태백병원부설케어센터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폐장해인 및 비진폐 장해인(COPD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을 대상으로 한다. 각 센터에서는 숙박서비스, 생활여가서비스, 의료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D. 간병급여

- 산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배우자,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간병을 하는 경우 간병 등급에 따라 1일 41,170원~61,750원의 간병료(2021년 기준)가 지급된다.²⁾ 전문간병인인지 여부, 간병등급에 따른 간병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전문간병인	67,140원	55,950원	44,760원
가족·기타간병인	61,750원	51,460원	41,170원

(4) 근로복지공단 공적 지원체계의 한계

① 산재근로자에 대한 서비스의 문제점

- 산재근로자에 대한 요양 및 재활의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상당수의 경우 산재근로자가 몰라서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복지공단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장애인 등록제도에 대한 안내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공단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수요를 조사하고, 적시에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근로복지공단은 현재에도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9조에서 산재근로자에게 요양이나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의 안내, 상병의 특성이나 상태에 적합한 의료재활

2)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1호, 2020.12.29. 일부 개정된 것)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해 소속 직원을 의료기관에 방문하게 하는 “현장 요양서비스”를 두고 있긴 하나, 그 취지에 맞게 산재근로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과잉서비스 제공을 감시하는 역할에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다.

② 산재근로자 가족에 대한 서비스의 문제점

- 생활안정자금 용자의 경우 사망 유족으로, 장학사업의 경우 사망 유족이나 중증 요양 또는 장애인 가족으로 그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데, 주소득자의 경제생활 단절 또는 중단이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 범위가 다소 협소하고, 특히 장학사업의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가장 부담이 큰 대학학자금은 2015년부터 제외되어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 중증 장애인 전문 간병서비스는 전문 간병기관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 1~3급 및 고령·중증 폐질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입소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간병급여의 경우 가족이 간병하는 경우 간병등급에 따라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있기는 하나, 전문간병인이 간병하는 경우에 비해 간병료가 부당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 가족화합지원프로그램은 가족간 정서적 지지의 회복과 산재근로자의 재활 의지를 북돋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긴 하나³⁾, 서비스가 이루어진 해와 그렇지 않은 해가 있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근로복지공단 지원 체계의 한계

- 산재법을 바탕으로 한 근로복지공단의 지원 제도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 지원, 간병 지원, 심리형성 지원, 용자 및 장학사업 등으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산재근로자 가족은 그것보다 훨씬 다양한 어려움⁴⁾들을 겪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그 대상과 지원 내용이 한정적·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원 제도만을 보더라도 산재 가족의 정보접근 능력 여부에 따라 가족 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을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문제점도 있다.

3) 2013.5.27.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산재 근로자 재활서비스의 진화는 어디까지?’.

4) 아이 돌봄, 가사 돌봄, 가족상담 및 심리치료, 자조모임 지원, 법률구조, 가족 부양 지원 등 복지서비스 등

2) 산업안전보건공단

(1)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개요

-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2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데, 근로자건강센터와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두고 있다. 기관 특성상 산재 가족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으나 산재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도 일부 수행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와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재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다.

(2) 산재근로자 가족 지원 제도 현황 및 구체적 내용

-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그 산하에 근로자건강센터와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두고 있는데, 근로자건강센터에서는 직업병의 업무관련성과 관련한 상담서비스, 산재보상과 관련한 정보, 산재신청 관련 법률적 절차 진행을 위한 전문 상담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직업트라우마센터에서는 충격적인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근로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 건강센터는 2011년 반월시화지역에 설립을 시작으로 하여 2021년 현재 전국에 23개소의 센터와 21개소의 분소를 두고 무료 운영중이고,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전국 13개소의 센터 내 부속하여 설치되어 무료 운영중에 있다.

- 각 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A. 근로자건강센터

- 근로자 건강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9호, 제11조제3호,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9호)에 따라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건강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을 통한 전문 건강상담 등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 건강센터는 법률지원, 가족상담, 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구체적 서비스 내

용으로는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을 통한 직업병 예방 관련 상담,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건강상담, 뇌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상담,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상담(스트레칭 교육 등), 작업환경(작업관리)와 관련된 상담, 안전보건교육 등, 이동 건강상담, 산재 보상 상담진행(산재 보상 처리방법 등의 정보제공) 혹은 노무사 연결, 시뮬레이션, 현장 방문 조사에 기반한 근로자 개인에게 맞는 트레이닝과 재활을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연계된다. 사업은 모든 근로자(기간제,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를 대상으로 하나,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B. 직업트라우마센터

-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중대산업사고,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등 충격적인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근로자가 트라우마 증상을 극복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주요 서비스로는 직·간접사고 피해자의 심리안정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 일상 직장생활 복귀 도모, 사고 충격에 따른 심리안정 지속관리, 필요시 전문 치료 연계 등이 제공된다.
- 직업트라우마센터에서 제공되는 가족지원프로그램은 가족상담 프로그램으로 심리적 도지 검사 및 개인심리상담 진행 혹은 개인 증상 정도에 따른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보통 1~4차시까지 진행되며 직업적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지속적 전문가 상담을 지원한다. 본 사업의 대상은 1. 1차 피해자(신체적 부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 있는 생존자) 2. 2차 피해자(사망이나 부상, 사고를 목격하거나 수습한 사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등 사고처리 담당자/ 사망·부상자의 팀원, 조원, 기숙사 룸메이트, 노조원/ 1차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3. 3차 피해자(응급서비스직(경찰, 소방관, 응급의료팀, 진료보조사, 구급차 운전자)/ 일차병원 스태프와 상담심리사/ 사건취재 관련 언론인)이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전 예산을 지원한다.

(3) 한계

-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제공하는 산재가족에 대한 지원은 직업병의 업무관련성과 관련한 상담서비스가 주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산재보상 상담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 건강센터에 산재보상 신청과 관련한 전문 인력이 없어 서울의 경우 서울시 노동권익센터나 직장

맘센터 등을 통해 법률 관련 전문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른 지역의 경우 법률상담 서비스 연결이 정식화되어 있지 않고, 그마저도 인력부족의 문제로 즉각적인 상담 연결이 충분히 소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산재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큰 충격을 받은 재해 근로자의 심리적 어려움은 가족에게 쉽게 전이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서비스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 21개소의 근로자 건강센터 중 13개소의 센터에서만 부설되어 있고, 그 홍보도 부족하여 정보접근 능력 여부에 따라 그 이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 근로자 건강센터와 직업트라우마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재 가족 지원제도는 업무관련성 상담 등 산재신청 절차와 관련된 서비스, 심리 상담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산재 가족이 겪는 여러 어려움에 비해 한정적인 서비스라는 한계가 있다. 한편, 근로자건강센터와 직업트라우마센터는 법률상 직접 근거없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재정지원사업>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계속 운영에 관한 보장이 어렵고 그 지원범위 역시 임의적이라는 한계 또한 있다.

3)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개요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치되어,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제21조 ;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 안정, 안정된 주거생활,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 위기가족 긴급지원사업(제21조의2 ; 아이돌봄지원, 가사돌봄지원, 가족(집단)상담,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법률구조,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등 연계 등), 가족 부양 지원사업(제25조 ; 영·유아, 노인 등 부양 등), 가정봉사원 지원사업(제30조 ;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 등을 하고 있다.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광역센터와 시·군·구센터로 구별되어 광역센터는 역량강화·정책지원·홍보 지원 등 업무를 하고 시·군·구센터는 실제 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데, 2004년에 용산, 여수, 김해 3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던 것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 전국에 207개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다.

(2) 산재근로자 가족 지원 제도 현황 및 구체적 내용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업을 1)시·군·구 건강가정지원사업, 2)시·도 건강가정지원사업, 3)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⁵⁾, 1), 2)의 경우는 가족 문화와 관련하여 교육과 상담 캠페인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서 산재 가족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을 생각할 수 있다.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이면서 취약·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이들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상담, 정보제공 등)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적·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은 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와 긴급위기가족 지원서비스로 구분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취약·위기가족지원서비스

－ 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중에서 가족 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사례관리, 교육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지원, 지역사회의 자립서비스·활용할 수 있는 기관 연계·생계비,창업자금,장학금,의료비 등 지원 연계·초,중등 (손)자녀에게 배움지도사 파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만 18세 미만 (손)자녀 대상 키움보듬이 파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 긴급위기가족지원서비스

－ 긴급위기가족 지원서비스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같은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사 파견을 통한 심리상담·키움보듬이 파견을 통한 양육돌봄,노인돌봄,가사돌봄,동행,병원돌봄·교육 및 집단 프로그램 운영·자조모임 운영 지원·법률,의료,복지서비스 등 연계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020년 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는 3,496가정을 대상으로 183,322건이 제공되었고, 긴급위기가족 지원서비스는 870가정을 대상으로 9,062건이 제공되었다.

5)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0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표 14〉 2020년 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현황6)

구분	이용인원(실인원)		서비스제공 횟수	
	전체	1개소 평균	전체	1개소 평균
취약·위기가족지원서비스	3,496 가정	44.3 가정	183,322건	2,320건
긴급위기가족지원서비스	870 가정	11.0 가정	9,062건	114.7건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서 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 긴급위기가족 지원서비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5〉 한부모·조손가족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구분	사업분류	세분류
취약· 위기 가족	사례관리	심리적, 경제적 자립과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실시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 및 자조모임 지원>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 등에 관한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지원
		<자립서비스 연계> - 자립·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컨설팅 및 돌봄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자원 연계	<기관 연계> - 고용지원센터, 후원단체,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상담소, 학교 등의 기관과 연계
		<물적자원 연계> - 생계비, 창업자금, 장학금, 의료비 등의 물적자원과 연계
		<인적자원 연계> - 후원자, 자원봉사자, 법률전문가, 학습교사 등의 인적자원과 연계
	자녀 학습·정서 지원	<정보제공> - 건강, 법률,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아이돌보미, 사회적일자리 등 정보 제공
<배움지도사 파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취약·위기가족 초등·중학생 자녀(상응 연령 포함)에 대한 학습 지도 및 정서적 지지		
생활도움지원	<키움보듬이 파견> - 기준소득 100%이하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대상으로 긴급 일시돌봄, 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생활도움서비스 제공	
긴급 위기 가족	긴급심리·정서 지원	<지리지더 파견> - 지리지더 또는 상담기관의 전문상담사가 가족 및 심리상담 진행
	긴급 가족돌봄 지원	<키움보듬이 파견> - 양육돌봄, 노인돌봄, 가사돌봄, 동행, 병원돌봄 등 서비스 제공
	가족역량증진 지원	<가족역량증진 지원> - 교육 및 집단프로그램, 가족치유캠프, 자조모임 운영 지원 - 법률, 의료, 복지서비스 등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의 연계를 지원

* 출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누리집(www.kihf.or.kr)

6)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0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3) 한계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위기가족 지원사업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위기가족 지원서비스를 통한 가족기능 향상률을 보면 2019년부터 상당히 높은 수준의 향상률을 기록하고 있어 산재 가족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지원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6〉..자기효능감 및 가족기능 향상률⁷⁾

(단위 : 가정, %)						
구분	구분	전체가정수	종결가정수	향상 가정수	향상률	
2020년	자기효능감	3,496	1,293	1,087	84.1	
	가족기능			1,130	87.4	
2019년	자기효능감	3,157	1,228	1,138	92.7 ⁸⁾	
	가족기능			1,070	87.1 ⁹⁾	
2018년	자기효능감	2,886	1,135	948	39.4	
	가족기능			980	40.6	
2017년	자기효능감	2,331	1,094	916	38.9	
	가족기능			940	39.6	
2016년	전체 기관 (47개소)	자기효능감	2,683	1,217	1,005	37.5
		가족기능			1,035	38.6
	상·하위제외 (41개소)	자기효능감	2,431	1,077	874	36.0
		가족기능			906	37.3

- 그러나 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는 중위소득 72% 이하일 것, 한부모 가족일 것이라는 이중 허들이 존재하여 이에 해당하는 산재가족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특히 소득 기준은 주소득자의 경제생활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긴급하게 처분이 어려운 부분도 소득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산재근로자 가족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소득기준은 산재근로자 가족에게 지원 여부 그 자체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지원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그렇지 않은 실정이다.

7)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0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 한편, 긴급위기가족에 대한 서비스 역시 산재근로자 가족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긴급위기가족’을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과 관련된 재난가족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다수의 산재 가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 이렇듯 산재근로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서비스가 현실에서 유효한 서비스가 될 수 있겠지만, 소득 기준의 장벽, ‘긴급위기가족’의 범위 장벽 등으로 인해 실제로 산재근로자 가족이 가정지원센터의 서비스를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4)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보건센터)

(1)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개요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지역 주민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16개소의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244개소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2) 산재근로자 가족 지원 제도 현황 및 구체적 내용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 고위험자 등을 포함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사례관리, 주간재활(데이케어), 교육·훈련, 타 기관 연계 등 정신질환자 관리, 재활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자살예방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를 운영하여 상담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7〉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 서비스⁸⁾

영역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기획	지역사회 진단 및 연구조사 서비스 평가체계 구축	지역사회 진단 기획 및 자원 조정
중증정신 질환관리	편견 해소 사업 24시간 위기관리 지원 초발정신질환관리체계구축 탈원화 전달체계 구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노숙정신질환관리	신규 발견체계 구축 사례관리서비스 위기관리서비스 주간재활프로그램 직업재활 프로그램 주거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정신건강 증진사업	인식개선 사업 24시간 상담 및 지원 자살위기개입 체계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고위험군 조기검진 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지원	홍보 및 교육사업 1577-0199 상담전화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치료연계사업 어린이 청소년 성인 우울증, 스트레스 노인 우울증 및 치매 알코올 중독
정신보건 환경조성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언론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보건복지 네트워크 구축 자원봉사운영체계 구축 지역 언론 협력체계 구축 경찰 및 구조구급 네트워크

(3) 한계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산재 가족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서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에 요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산재가족의 심리적 어려움에 국한된다는 한계가 있고, 현재 그 규모에도 불구하고 정보접근 능력이 떨어지는 산재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용이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5)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⁹⁾

(1)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의 개요

-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이하 ‘원스톱서비스’)는 자살사건이 발생한 경우 자살 사건임을

8)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에서 발췌.

9) 이하 보건복지부·중앙심리부검센터 보도자료(2019.9.11. “자살 유족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의 손길 건넨다”) 참조

인지한 담당 경찰관이 초기에 지자체의 자살예방센터로 출동 요청을 하고 자살 유족들에 대해서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원스톱서비스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가 2019.9.16.부터 시범 실시하여 운영 중에 있다.

(2) 산재근로자 가족 지원 제도 현황 및 구체적 내용

- 원스톱서비스는 인천, 광주, 강원도 3곳의 광역자치단체와 그에 속한 13곳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중앙심리부검센터 유족지원팀,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 광주광역시 자살예방센터, 원주시 자살예방센터에서 필요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 원스톱서비스는 자살 유족에 대한 욕구 분석을 통해 <심리 정서 지원>으로서 애도상담(생활 스트레스, 가족관계 문제, 정신건강 문제 등 전문가와 1:1 상담), 자조모임 지원, 정신건강교육·사회성 향상·체육 문화활동 프로그램 제공, 심리부검 면담,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입원치료비, 심리검사비, 심리상담비, 치료프로그램비, 1인당 140만원)을, <환경·경제 지원>으로서 일시 주거비용(임시 주거형태의 숙박업소 이용비용, 1가구 75만원), 법률 및 행정처리 비용(사망신고, 상속 및 상속포기, 부채, 금융 등 법률처리 비용, 1가구 70만원), 학자금 지원(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고인의 자녀의 등록금 지원, 1인당 140만원), 사회 참여 및 동료지원 활동을, <복지서비스 연계>로서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제공 서비스 이외의 복지 수요에 관해 지자체 복지부서로 연계 등을 제공한다.

(3) 한계

- 원스톱서비스는 자살 산재 가족의 입장에서 기관에서 먼저 접촉하여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보접근 능력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방식 면에서 훌륭한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를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아직 시범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확대 운영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 가족 지원의 대상이 자살에 국한된다는 점, 산재 가족이 자주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인 산재 신청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는 제외되어 있다는 점 등이 한계로 보인다.

6)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긴급복지 서비스

(1) 긴급복지서비스의 개요

-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사망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7조). 긴급지원은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 지원으로 구분된다(제9조).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제3조).

(2) 산재근로자 가족 지원 제도 현황 및 구체적 내용

- 지자체의 긴급복지서비스는 일정한 소득 기준(지자체별로 소득 기준이 다름) 이하이면서,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 발생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연료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원칙적으로 1회 지원하나, 생계비, 의료비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긴급복지서비스의 신청은 거주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등에 신청한다.
- 긴급복지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지자체마다 조금 상이하나 공통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8〉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내용

구분	긴급지원 내용
금전 또는 현물 등 직접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그 밖의 지원> -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 지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상담·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3) 한계

- 지자체의 긴급복지서비스는 가족 위기의 사유가 아닌 위기상황 그 자체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보다는 산재 가족의 접근이 더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긴급복지서비스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족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이 일시적이라는 점,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중복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 보상과는 별도 산재 가족에 대한 독립된 지원체계라고 보기엔 미흡한 점, 산재 가족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아이돌봄, 가사돌봄, 가족(집단)상담, 산재 신청 관련 법률구조 등)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 각 지자체별로 위기가족 발굴, 지원 대상 선정, 지원 절차, 지원 내용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어 균일한 지원서비스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¹⁰⁾, 정보 접근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산재 가족이 이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10) 일례로 경기도에서는 긴급지원과 관련하여 무한돌봄센터를 별도로 두어 적극적인 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주민센터 등에 일임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필요한 지원이 미흡한 지자체도 여럿이 있다.

7)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1)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개요

- 대한적십자사는 ‘재난’을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특히 화재나 교통사고 등)으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위탁사업으로 전국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단체, 학회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난 경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2) 사업의 구체적 내용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재난피해자, 그 가족 및 지역 주민 등 재난경험자를 대상으로 방문상담과 전화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전문치료병원 연계사업을 수행한다. 재난심리회복지원은 <재난경험자의 욕구 파악> - <재난구호서비스 제공과 연계한 심리회복지원 상담(필요시 상담 지속)>의 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담 지원은 무료로 운영한다.

(3) 한계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재난경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재난구호서비스와 심리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산재근로자 가족의 경우에도 그 지원 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 그러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법령에 구체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계속 운영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 ‘재난’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산재근로자 가족의 경우에도 ‘재난 경험자’에 해당할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지원되는 서비스가 주로 심리 상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등이 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8) 산재근로자 가족 관련 공적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

- 산재근로자 가족 관련 공적 지원체계를 보면, 크게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지원체

계(건강가정지원센터,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노동부 지원체계(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행정안전부 지원체계(지방자치단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정부부처가 독자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9〉 정부 부처별 지원체계 요약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p>주요 기관</p> <p>건강가정지원센터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정신건강복지센터</p>	<p>주요 기관</p> <p>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p>	<p>주요 기관</p> <p>지방자치단체 (긴급복지서비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p>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소득보장 ·주거안정 지원 ·가족돌봄/가사돌봄지원 ·집단프로그램 운영 ·법률구조/의료지원/복지연계 ·심리상담 및 치료 ·학자금 지원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사례관리 ·주간재활/교육·훈련 등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자에 대한 재활서비스 ·생활안정자금융자 ·장학사업 ·간병서비스/급여 ·가족화합지원프로그램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비/주거비/의료비 지원 ·교육비/연료비/장제비 지원 ·전기요금 등 지원 ·전화상담 ·심리 관련 정신건강복지센터/전문치료병원 연계 등

- 정부 부처별 지원체계의 특징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우선 폭넓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소득 기준 등 허들이 존재하여 산재근로자 가족이 보편적으로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고용노동부는 보건복지부와는 반대로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 산재근로자 또는 산재근로자 가족이기에만 별도의 소득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하는 반면 제공되는 서비스가 상당히 한정적인 특징이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와 마찬가지로

지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긴급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일회성 서비스로 제공되고 다른 지원체계에 대하여 보충적으로만 제공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렇듯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지원서비스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산재근로자 가족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 신청하려면 직접 정보를 알아보고 선택해서 신청해야 하고 하나의 체계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부족함이 없이 연계되어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재근로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어느 시기에 어느 서비스를 신청할지는 사실상 각자의 시간적 여유와 정보접근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인 실정이다.

5. 산재근로자 가족 관련 민간 지원체계 현황

1) 노동조합 및 시민대책위

- 노동조합이나 시민대책위 등은 산재 발생시 산재 대응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를 산재근로자 가족에게 제공하고, 산재근로자 가족에게 산재와 관련한 조사, 사업장 측과 면담, 산재보상 신청 등과 관련한 지원과 전문가 네트워크의 연결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산재근로자 가족이 가장 먼저 겪게 되는 어려움은 이후 법률적 절차의 내용과 그 진행에 관련하여 정보와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측면에서 노동조합과 시민대책위와 같은 단체의 지원은 실물적 지원을 기반으로 한 정서적 안정 지원 역할을 하기도 한다.
- 한편, 노동조합은 산재(장해 또는 사망)로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와 산재 유가족 우선·특별채용의 기회를 부여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단체협약을 통해 우선·특별채용 된 가족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확인된 바는 없으나 퇴직근로자의 가족이 소득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측면, 가족의 정서적 기능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산재가족에 대한 의미있는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6.3.28.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재가족의 우선·특별채용에 관한 단체협약은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단체협약 2,769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5개로 조사되었다.¹¹⁾ 산재가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의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은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본 바 있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1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6.3.28.

2) 김용균재단

- 김용균재단은 2018.12.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이 위험 작업을 혼자 진행하던 중에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건이 있고 나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면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대재해처벌 제·개정 활동 등 산재 발생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 들을 하고 있다.
- 산재근로자 가족과 관련하여서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산재 유가족들에게 노동조합의 지원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고 역할을 하거나, 「산재사망사고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산재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3) 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 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이하 ‘과로자살유가족모임’)은 과로자살 유가족들의 자조모임 차원에서 만들어져서 현재는 과로자살 유가족들이 산재 승인 및 과로사 관련 사회적 문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유가족모임은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법률 상담, 심리상담 등을 나누고 있는데 현재 전국에 약 28가족 정도가 결합해 있다.
- 과로자살유가족모임은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구축과정에도 참여하고, 유가족들에 대한 동료 상담가 양성이나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와 같은 자살 유족의 경험을 담은 책을 제작하여 발간하기도 하였다. 과로자살유가족모임과 유사하게 민간에서 스스로 만든 자조모임으로는 ‘다시는’, ‘산재재난참사 피해자 모임’, ‘반올림’ 등이 있다.

4) 근로복지공단 재활병원 산재장해가족 자조모임

- 근로복지공단 내 재활병원은 주로 산재장해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 특성상 재활기간이 장기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해가족들이 가족모임을 형성하고 만남을 이어가면서 만들어진 것이 산재장해가족 자조모임이다.
- 산재장해가족 자조모임은 주로 장해형태와 지역에 따라 모임을 가지고 있고 병원 내의 가족참여 치유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알게 된 가족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다. 장해 유

형에 따른 보조금, 보조기구에 대한 정보나 산재 관련 정보에 관한 나눔뿐만 아니라 동질감을 기반으로 장애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들에 공감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체계로 작동하고 있다.

- 모임의 가족들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 자주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하면서 안정적인 공간과 비용 지원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5) 종교단체 중심 이주근로자 지원단체(엑소더스, 이주민쉼터, 교회 등)

- 한국인 근로자와는 달리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발생시 언어, 정보 습득의 문제부터 시작하여 공간적 차이, 경제적 문제 등 복합적 어려움이 발생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산재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종교단체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근로자가 산재 발생 이후 기숙사에서 쫓겨나 숙소 문제가 생길 경우 쉼터 등을 알선해주거나 산재 처리 등을 위한 법률지원 과정에서 언어 통역 활동을 무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국내 커뮤니티를 통해 이미 산재 처리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연계하여 정보 등에 관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6) 민간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

- 민간 지원체계의 가장 큰 장점은 산재근로자 가족과 지원단체간의 심리적 거리이다. 공적 지원체계의 경우 정책 목적에 따른 구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일정한 형식이 필요하나, 민간 지원체계는 산재근로자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 훨씬 자유롭고 지원 가능한 범위에 대한 수용도도 훨씬 높은 편이다. 무엇보다 민간 지원체계는 공적 지원체계에 비해 정서적 지지 또는 연대에 훨씬 능숙하다.
- 그러나 민간 지원체계는 공적 지원체계에 비하여 재정적·인적 한계로 인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제 3 장. 산재노동자 가족생활 실태 및 경험

1. 질적 인터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및 연구 방법

- 본 조사는 가족 구성원이 산업재해로 중증장애를 입은 가족이나, 사망한 유가족들이 직면하는 심리적,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 제2장에서는 산재패널자료를 활용하여 1-3급의 중증장애로 요양을 경험한 산재 당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중증장애 가족의 욕구를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산재로 인한 중증장애 및 사망을 경험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산재 가족들의 경험과 욕구를 조사하였다.
- 그리고 본 프로젝트에서 연구와 동시에 진행된 동행지원 사례 중 일부 사례의 인터뷰 자료가 추가로 분석에 활용되었다. 동행지원팀은 본 사업의 여론 형성 활동으로서 여러 산재가족에 대한 취재를 진행했다. 취재를 목적으로 진행된 인터뷰 중 일부를 심층면접을 진행한 산재 가족의 경험 분석 내용에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했다. 심층 면접 이전에 진행된 전문가 인터뷰 자료와 산재 가족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발행한 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및 문헌 자료도 함께 활용되었다.
- 전문가 인터뷰는 초기 산재가족에 대한 연구 전반의 진행을 위하여 산재 유가족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단체와 근로복지공단 소속 재활병원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해당 인터뷰 대상들은 산재 가족은 아니지만 산재와 관련된 주요한 실무를 진행해온 전문가들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자료는 산재 가족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산재 가족들이 실제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어떠한 지원 체계가 필요한지, 심층 인터뷰의 틀과 방향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 심층인터뷰 대상에 대한 표집은 ‘준거적 선택’을 기반으로 한다(김인숙, 2016:197). 준거적 선택은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현상의 핵심적 특성을 보여줄 수 있으며, 깊이 있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표집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현상은 ‘산재 이후 가족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으로 노동자가 산재를 경험한 뒤 사망했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산재 가족의 어려움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대상으로 준거적 표집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준거적 표집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것은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었을 때 산재 가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따라서 산재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했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가족을 찾는 방식으로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진행하였다. 산재 사망의 경우 사고 사망과 질병 사망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질병사 대신 과로자살을 포함하는 ‘과로사’와 일반적인 사고 사망을 뜻하는 ‘사고사’로 구분하여 준거적 표집을 진행했다.

- 본 연구에서 활용한 눈덩이 표집은 같은 유형의 가족들 간 이질성(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중증장애 가족의 경우 주거 지역은 다르지만, 같은 근로복지공단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들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공단 재활병원 경험이 없거나, 다른 재활병원에서 재활을 경험한 가족의 경험에 모두 일반화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고사의 경우 노조와 시민대책위를 통하여 산재 인정을 받은 사례로의 편중이 있었다. 그 외의 사례는 불승인 사례로 사고사 유가족 내의 일반성을 가지는 분석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과로사의 경우 특정 유가족 모임에서 활동한 가족에 한정되었는데, 이 또한 모임으로부터의 다양한 도움을 받아왔던 가족이기 때문에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산재 가족들의 경험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 그러나 이러한 표집의 편중은 이는 산재 가족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나 가족들의 고립으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표집된 산재 가족은 일반적으로 공적 체계나 민간체계로부터 일부 도움을 받았으며, 불승인 사례의 경우에서만 가족끼리 산재 신청 과정을 진행했다. 따라서 민간 체계를 통해서라도 도움을 받지 못한 가족들은 불승인될 여지가 크고, 가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본 연구 결과보다 더 극단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의 경우 연구 목적으로 하는 접촉이 쉽지 않았다.
- 본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 산재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이주 노동자라는 특성 때문에 다른 사례와 제도적 경험에서의 이질성이 매우 컸다. 이로 인해 산재 경험과 산재 가족이 직면하는 어려움의 특수성이 많아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산재 경험은 별도의 독립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동행지원 사례들은 사례 분석의 중심이 되지는 않았지만 분석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심층면접 자료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사실들을 드러내거나, 그에 대한 비교 서술을 위하여 활용되었다. 동행지원팀에서 진행한 취재용 인터뷰 녹취자료가 분석 과정에서 연구 분석 결과와 비교와 검토를 위하여 활용되었다. 추가로 중간발표회를

통하여 연구 내용에 관한 산재 유가족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였다.

〈표 20〉 산재 사망(장해)가족 연구참여자

	산재유형	산재발생/승인시점		산재승인 & 법률분쟁	산재노동자와 의 관계
연구참여자 A	중증장해	2014	2016	승인. 손해배상 승소	배우자(아내)
연구참여자 B	과로사	2016	2019	승인	처제
연구참여자 C	중증장해	2016	2016	승인. 사고가해자와 합의	배우자(아내)
연구참여자 D	과로사	2019	2021	승인. 연금액 책정 중	배우자(아내)
연구참여자 E	사고사	2018	2018 (불복심 2021)	불승인	배우자(아내)
연구참여자 F	과로사	2020. 10	2021	승인(일시급). 합의 진행 중	부모(어머니)
연구참여자 G	사고사	2021. 5	-	합의우선 진행. 심사 중	배우자(아내)
연구참여자 H	사고사	2020. 11	2021	합의우선 진행. 승인	자녀(아들)

2) 자료 분석 방법

- 자료의 분석은 일반적 질적연구의 분석 방법을 따랐다. 다만 본 보고서의 목적이 산재 경험의 조직화와 주제를 도출해내는 것보다는 실천적·실용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욕구를 범주별로 구분하고, 각 부분별 경험의 구체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했다.
- 심층면접 후 면접의 내용을 녹취록으로 전사하고, 각 사례별로 스케치를 진행하며 개별 사례와 산재 사례별로 사례 간 분석을 진행했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연구팀회의, 산재가족지원사업단 전체회의 등을 통하여 동료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수정 및 보완의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을 통해 부족한 추가 인터뷰를 섭외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 사례의 분석은 코딩을 통하여 연구 자료에 밀착하고, 패턴 분석을 통하여 인터뷰를 재구성하면서 사건의 순서와 범주를 구분했다. 여기에서 범주는 일반적인 귀납적 주제 분석의 범주분석이 아닌,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산재 가족의) 욕구 범주’다. 범주는 ‘가족들이 경험한 어려움은 무엇인가’ 혹은 ‘가족들의 욕구는 무엇인가’, ‘가족에게 필요한(혹은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등을 자료에 질문하며 구분했다.

- 각 인터뷰 사례의 분석이 진행된 후, 과로사 유가족, 사고사 유가족, 장해 가족 총 세 가지 사례로 유형화 하여 유형 별 사례 내 분석을 진행했다. 이는 각각 유형별 사례 안에서 각 인터뷰 사례의 사례 간 분석을 진행하는 것으로, 각 범주를 시기별, 욕구범주별로 구분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통하여 유형 별 시기별 경험을 분석해 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유형 별 사례를 넘어 욕구 범주를 최종적으로 도출했다.

2. 산재 유형별 사례 내 분석 결과

1) 사고사 유가족

(1) 산재 승인 과정의 어려움

○ 유가족의 산재 여부 인지의 어려움

- 노동자의 사망 이후 유가족들이 상황을 ‘산재사고’로 인식하기까지는 여러 난항이 있다. 가족은 대체로 병원에 노동자가 이송된 후 연락을 받았는데, 이때에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보를 회사나 동료가 제공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했음을 알 수 없다. 만약 이에 관한 증언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직후 충격으로 인해 가족들이 이를 산재로 인식하고, 산재승인 등의 절차를 신청하기 어렵다.

당시에는 병원에 갔을 때에... 허허. 그냥 뭐라고 해야 하지, 손을 못 쓰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머리에 출혈이 많아서 출혈이 잡히질 않아서 얼굴이 이미 너무 많이 부어있었고, 거의 그랬어요. (중략) 처음에 병원 갔을 때 직원분 두 분이 계셨어요. 그 분들이, 그 분들도 각자 일하고 계시니까 정확한 건 모르는데 이제 가시다가 사고가 났다. 이제 돌아오시다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났다는 라이더끼리 연락을 하니 까 형님이 다치셔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 때까지만 해도 저는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따 애들 왔을 때 아빠를 애들이 봐야하는데, 저렇게 어떻게 보여주지 애들 어떻게 보여주지? 그 생각하느라(사례 E)

- 유가족들은 주변의 산재와 관련한 경험이 있는 조력자의 도움으로 산재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노동조합을 통한 도움을 받은 유가족은 언론 접촉 및 기자회견, 국회의원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회사와 합의 후 산재보험을 신청한 사례(사례 G, 사례 H)는 산재보험 수급에 있어서도 노무사 선임 이상의 전반적인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개인 보험 손해사정사와 같이 단순히 산재 가능성을 고지하는 형태의 조력을 받은 경우 산재 승인 과정을 가족들이 홀로 진행해야 했다.

보험에 이제 서로 양쪽이 오고가면서 손해사정사를 알려주면서 그 분이 산재를 받을 수 있다고 노무사를 연결해드릴까요 해서 그 때 알았고, 그 절차가 그 분이 설명하시기에 산업재해 찾아보게 되잖아요. 이래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됐었고(사례 E)

사고 이제 나고 병원 중환자실에 제가 도착하고 (화물)연대에서도 여기서 올라오시고 그 때부터 계속 연대에서 도움을 주셨죠. (중략) (화물 연대에서 도와주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도움이 되었다고 봐야죠. 저희도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정신이 없을 때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옆에서 도와주셨죠. 회사랑 하는 것도 그렇고 옆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도 해 주시고.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런 것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죠. (사례 G)

원래 삼일장 잡고 하려고 했는데 그 때에 박국장님이랑 다 오셔가지고 하나둘씩 여쭙보시다 알아보셨는데 그 때에 이제 알게 되어서... (중략) 코로나가 되게 심할 때여서 시위도 못하고 집회도 못하니까... 국회의원사당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것도 몇명 모이지 말라고 경찰들 압박 들어오니까 화나셔서 뭐라고 하셨는데, 그런 거 계속 해오시고... 저한테 말씀해주신 게 이게 저희 일이라고. 이런 거 헤드리려고 우리가 이런 거 하는 거라고. 감사했죠 그 때. 그분들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삼일장 하고 끝났을 테니까.(사례 H)

○ 산재 승인 과정에서 가족들이 받는 심리적 고통

- 미리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채 가족이 직접 산재승인심사를 넣는 경우, 가족들에게 가장 큰 심리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증인 혹은 증거의 확보다. 산재승인심사 이전에 기초적인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증거를 주지 않으려고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회사를 상대하는 것이 주는 심리적 어려움이 크다.

- 유가족이 회사 내 사정과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료들은 산재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는 상황을 증언해주지만 산재 심사에 들어선 이상 회사의 압력으로 인하여 유가족에게 증언하는 것에 소홀해질 수 있다. 가족들은 이 과정에서 물리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배신감, 분노, 억울함 등을 경험한다.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 산재 됐을 때에도 저 아예 안 만나주셔서 노무사님이랑 저 안 만나주시고 정보도 안 주셔서 생각대로 회사가 처음의 한 달은 그랬어요. 한 달 내내 쫓아다니고 쫓아가니 쫓아왔다고 뭐라 하시고 왜 직원들 쫓아 다니냐고 뭐라 하시고. 그러니까 직원들 만나니까 사장님이 만나지 말라고 그랬다고(사례 E)

- 산재 승인 및 사후 정리 과정을 진행하면서 만나는 공무원의 관료적 태도도 가족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한다.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여 언제 처리될지 모르는 서류를 기다리는 시간은 스스로가 업무에 폐를 끼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도 직원들이 불친절한 태도로 주는 비난은 가족들에게 위축감을 안겨준다.

공단에 전화했을 때 한번도 호의적이지 않으셨거든요. 무슨 자료 필요 한데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하면 이걸요? 왜요. 되게 범죄자, 나쁜 사람, 돈에 환장한 사람처럼 몰아가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그랬어요. (중략) 비수 꼽는 말을 많이 하세요. 공단에서도. 이쪽 분들도 내가 처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리실 텐데 이해하지만 산재 공단에 전화하시는 분들은 아픈 분들이나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제가 산재위원회 갔을 때 팔 없는 분, 다리 없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헤. 저런 분들한테 화를 내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할까.(사례 E)

- 특히 가족이 산재심사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증언하며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낙인적 발언이나 위원들의 태도로 인한 위축을 경험하는데 이 과정에서 위원들에 대한 불신과 모욕감을 느끼기도 한다. 가족들은 위원의 권위적인 태도와 사고가 난 직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문제로 삼는데, 이는 심사위원회 자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노동자의 과실인지, 회사의 과실인지 밝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임과 동시에 가족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정보와 정서적 도움이 제공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제가 위원회 세 번 갔을 때에도 앉아있을 때 죄인 같은 거예요. 남편 죽여 놓고 뭘 바라서 여기 와서 돈 바라는 사람이라는 뉘앙스로. 제가

산재위원회 세 번째 갔을 때 뒤에 계시는 분들이 ‘잘못했네’ 신호위반 했네. 신호위반 해놓고 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일하다 다쳤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신호위반 했어. 유턴했고, 잘못 했어. 근데 이게 죽을 만큼의 잘못은 아니고 만약 살아 있었다면 겨우 2,3만원의 과태료를 물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뒤에서 나쁜 *처럼 비수 쏘는 말을 들어야하나. 이렇게 되더라고요(사례 E)

- 가족들의 소진은 산재심사 절차 안에서 가족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그 의미를 알 수 없다는 데에서 증폭된다. 가족은 심사과정이 주는 물리적인 어려움 외에도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욕감과 소외로 인한 답답함을 느낀다.
- 산재 신청 및 승인 과정은 법률적이고 전문적 과정이므로 가족들이 모든 상황을 고지 받고, 선택하기보다 노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신청 전반을 수행하고 심사에 있어서도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을 조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족들은 이 과정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의 죽음에 관한 자료나 증빙 서류들을 모으러 다니며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산재승인 절차 안에서의 가족의 소외를 가져온다.

그 분이 노무사 소개시켜주셔서 산재 이렇게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확률이 높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면 서류 이런 거 준비하는 게 업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서류 이렇게 준비해서 했죠.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됐죠. (중략) 저도 통장으로 떼어봤을 때에는 최근 것만 떼어달라고 해서 봤고 정확한 날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내역서를 한 번도 꼼꼼하게 읽어본 적이 없고 다 노무사님이나 변호사님한테 다 자료가 넘어가는 거라 (사례 E)

이걸 1,2,3차까지 하고 법정싸움도 했었고 하니까 저는 더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휴. 이걸 할 게 못되는구나. 정말 멘탈이 강하거나 내가 여유가 있거나 너희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있거나. 그런데 나는 이것에 더 투자할 시간보다 차라리 받지 말자. 내가 더 열심히 뛰지, 더 아끼지. 내 애들한테 더 투자하고 말지. 여기다가 지금도 천 만원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5백을 투자하라고 하면 안 해요. 못하겠어요. (사례 E)

○ 가족들의 역할과중

- 가족들은 산재보험 승인을 위하여 생계 등의 일과 시간을 쪼개어 산재 신청 및 승인을 위한 증빙서류 구비, 증언 확보, 위원회 심사 참여 등을 수행한다. 가족들은 이 과정에서 생계를 위한 노동과 돌봄, 산재 승인을 위한 과정에 대한 일들이 많아져 일의 중첩으로 인한 곤란을 경험하고, 쉴 틈 없이 이어지는 부수적 업무를 생계와 병행하며 지쳐간다.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만나질 넘게 걸리더라고요. 바쁘시니까. 내가 앓아있는 것도 미안할 정도로 바쁘시더라고요. 경찰서 같은 경우도 너무 바쁘니까 한 두 세 시간이 걸리고 소방서는 좀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노무사님이 안하시고 본인이 제가 해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법정서류 같은 경우도 제가 가서 떼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쉬는 날.. 제가 직접 가서 떼는 거 같아요. (일은 일대로 하시다가) 쉬는 날 되면 아침부터 공공장소 돌아다니면서 떼고 인감 떼어달라고 하면, 인감 떼고 그랬던 거 같아요(사례 E)

네 알아보고 읍사무소 도움도 받고 그래서 하고 있고 혼자 이리저리 뛰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해야하고.. (하나하나 어머니께서 연락해서 처리하셔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보니 정신이 없죠 (그러게요. 그것도 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신 분이 없고 어머니가 하시는 거죠?)네 (중략) 힘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그냥 저 혼자 발로 뛰고 이리 저리 뛰고 서류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때문에 힘들긴 하죠. 도움이 없다보니까(사례 G)

계속 막 돌아다니고 해가지고.. 시간도 없고 그냥 좀 되게 힘들었거든요. 살도 엄청 빠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쉬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서류 떼러 **시(현재 주거지)에서 **시(산재 사망 이전 주거지) 갔다 오고 그런 걸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사례 H)

- 산재보험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나 보험의 승인을 위해서는 유가족들이 증거 수집을 통하여 회사 책임임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증언과 증거 확보의 책임이 가족에게 있고, 이를 통해 회사를 이겨야 한다. 노조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유가족 개인 단위가 이를 진행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발생한다.

노무사님 나중에 찾아가서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산재는 직원이 한 분만 들어가 있어도 다 든 게 되니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일

주일 넘게 설득한 거 같아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간신히 정보를 주신 거 같아요. 이 사람이 어디서 어디로 가다 사고가 났고 이런 정보를 주셨더라고요. 나중에 저도 알았어요(사례 E)

- 한편, 가족들은 노동자의 산재 사고에 관한 정보를 회사에 요청한다고 해도 이를 회사가 증명할 의무가 없다. 특히 노동자의 사후에는 회사와의 관계도 끊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처한다. 가족은 산재의 입증의 책임을 오롯이 떠안는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그에 비하여 산재 사고나 정황을 잘 알고 있는 회사와 동료들은 증언 및 증거를 제공할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 과정이 가족에게 큰 고통이 된다.

하나부터 열까지 도움이 되었다고 봐야죠. 저희도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정신이 없을 때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옆에서 도와 주셨죠. 회사랑 하는 것도 그렇고 옆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도 해 주시고.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런 것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죠.(사례 G)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아야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막 제 지인들도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친구들도 다 오고 하니까 사람들 없을 때에 노조에서 다시 왔는데 그 때에 거기 뭐지 ****발전소 일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한 분 계셨는데 그 분이 이야기 하시는 거로는 그냥 돌아가실 일이 아니라고 거기서 대처를 안 해서 그렇게 일이 난 거라고.. 그렇게 하다가 알고 (사례 H)

○ 노조의 조력: 총체적 돌봄과 조력

- 노조나 대책위에 도움을 받은 경우, 산재 신청 중 노무사 등 법률전문가와의 폭 넓은 소통이 가능했다. 이는 산재와 관련된 절차에서 가족들의 권익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산재 승인 이후 사후 신변 정리나 가족들의 일상생활 회복에 대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노조 간부들이) 연락은 해주세요. 저도 이제 다른 쪽에서 이런 저기가 오면 물어보기도 하고 하기는 해요. (일단 그런 연락을 주고받으시길만 산재인정 과정은 승인절차에서는 노무사님이 요청하는 걸 어머니가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연대에서 지부장님이 필요한 서류 요청해주시고 그런 걸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보내주시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사례 G)

그 때에도 노조에서 법률 담당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적어주고 가셨어요 미리 연락을 다 해주셔가지고. 그 때 저희가 따로 찾아보고 할 거 없이, 연락하셨을 거라고 이 분 연락 받고 왔다고 하니까 다 알아서 해줘가지고. 산재랑 국민연금? 그것도 다 박국장님이 써주시고 서류 만들어주셔서 뭐뭐 필요하다고 해주셔서 그거 가지고 가니까 다 됐던 거 같아요. 친권자 그런 거 빼고는. (노조에서) 다 잘 해주셔가지고 막히는 거 없이 됐어요(사례 H)

- 그러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산재 인정 및 승인 절차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고, 낮은 법적 영역에서 고지된 것 외의 질문을 하기 어려워 이 자체를 막막해하기 쉽다. 대신 가족들은 이전 시기부터 형성된 노조와의 신뢰 안에서 이를 넘기게 된다.

먼저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먼저 연락해서 이러이러하다고 이야기해야 거기서 그 때서야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주니까. 뭐가 필요하고 이후에는 뭐 어떤 어떤 걸 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면 그것도 노조에서 다 알려주셔가지고 그 때 알았거든요. 거기서도 서류가 엄청 필요하니까 그것도 좀 누가 알려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일어났다고 하면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고 이후 일에 대한 처리는 이렇게 해야한다는 걸 누가 알려주면 그나마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사례 H)

그렇죠 저희 상황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산재는 저도 안 당해보고 안 해봐서 어쨌든 변호사 그 쪽이다 보니 그 사람들만 믿고 하는 건데 옆에서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지식을 아는 사람한테 더 물어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그 분들만 믿고 하다보니까 그런 게 저런 게 그렇더라고요(사례 G)

○ 노조의 조력: 산재 승인을 염두한 선 합의

- 산재가족의 다수가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산재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본 인터뷰 사례에서는 산재 승인 과정에 노동조합이 개입하여 산재 승인과정의 가족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한편으로는 승인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매니지먼트 역할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 노동조합은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대신하여 사고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산업

재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유가족에게 알렸다. 그리고 회사와의 합의를 중재하여 산재 사고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보상을 가족들에게 전달한다. 설령 합의 내용이 완전히 유가족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런 대응은 유족에게 '할 만큼 했다'는 마음을 주어 죄책감을 덜 수 있도록 한다.

- 합의는 회사의 금전적 보상, 산재 승인을 염두한 사고에 대한 회사의 책임 인정 문구 확보, 사과나 노동자 처우 개선, 추모 공간 확보 등 비금전적 보상 등으로 구성된다.

회사 쪽에서 원하는 게 몇 개 있었는데 모든 책임이라는 단어를 빼달라. 우리는 일부 책임 있는 건 맞다 근데 모든 책임은 빼달라. 그거 빼달라고 그랬고, 여러 개 있었는데... 합의 조항 중에 아버지, 아빠가 여기서 일하다 돌아가셨고 거기에 합의 문 중 나와 있는 게 일하시는 기사 분들 휴식공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합의문에 제가 가족끼리 이야기해서 기사분들 쉴 수 있고.. 제가 기자회견 중에 말한 게 있는데 아버지 마지막 식사가 빵이었어요. 삼 천원짜리 빵이었는데 거기 라면이라든지 커피라든지 드실 수 있게끔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기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합의문에도 있었고. 근데 회사에서 말하는 건 나무를 심어서 거기 앞에 아버지 이름이랑 해서 이런 분이 있었다는 걸 하고 싶었는데, 회사에서는 나무 심을 공간이 없다고 돈으로 주면 안되냐.(사례 H)

- 특히 특수고용 혹은 파견 업체 소속의 노동자가 원청에서 사고를 당한 것과 같이 정형적인 노동 형태를 벗어나 산재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사고의 경우, 노동조합의 개입을 통한 산재보험 신청 이전의 합의가 이후 산재 승인 과정에 도움이 되었다. 이를 토대로 현장조사와 같이 산재보험 신청 이후 심사 절차에서도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유가족이 무리 없이 현장방문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특수 저기들은 산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애기 아빠도 그런 저기를 하니까 안되는데 산재를 적용이 되는 게 이제 1년 가까이밖에 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저희는 특수 저기니까 4대보험도 안되고 뭣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다 보니까 다 없는 줄 알았는데 적용이 된다고 그래서 알았죠. (중략) 애기 아빠가 화물 운전하는 분들이 차는 자기 건데 진입하는 운송사가 있어요. 내 차가 진입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또 일은 따른 알선소에서 일을 받아서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좀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애기아빠가 이번에 일한 데에는 거의

7-8년을 일해서 거긴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원청)인 거예요?) 아뇨 **통운이라고 또 알선소가 있어요. 거기를 화주가 연결되어 있어서 화물이 그게 복잡해요. 딱 ****(원청)하고 나하고 하는 건 아니고 ****원청이 이걸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복잡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데에도 일주일 만에 된 거면) 엄청 빠르게 된 거죠. 그래도 그게 바로 밝혀진 거라 자기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씨씨티비 그런 것도 있고 연대에서 힘을 써서 그랬던 거 같아요 (사례 G)

안전 쪽에서는 노조분들께서 안전 같은 거는 다 해가지고 저는 현장 갔어요 가족이 다. (****(원청)예요?) 네 아버지 사고 나신 그곳에 갔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피를 되게 많이 흘리셨거든요? 그 4미터 거기서 머리부터 떨어지셨으니까.. 피가 되게 많이 났는데 거기 갔을 때에 핏자국 하나 없었어요. 다 치워버려서. (중략) (그 때에는 방문 하고 싶다고 노조 통해서 이야기하고 가신 건가요?) 어쨌든 간에 아버지 사고 일어난 곳을 가보기도 해야했고, 거기 CCTV가 있어요. 제가 맨날 말했던 게 CCTV공개하라고, 근데도 안 해요.(사례 H)

(2) 애도할 새 없는 가족들

○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

- 산재 사망은 가족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다. 가족들은 갑작스럽고, 큰 변화를 가져온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무력감을 크게 느낀다. 특히나 일부 가족은 응급실, 중환자실에서나 가족이 사고를 당한 모습을 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다. 생계부양자를 잃은 가족들은 생계나 가족들의 미래에 있어 더 큰 막막함을 느낀다. 가족에 대한 상실감과 그리움 또한 지속되었다.

오빠가 경찰서 가서 CCTV확인하고 오빠가 다 했거든요. 오빠가 갔다 와서 경찰서 분이 보시겠습니까 했을 때에도 오빠가 보지 말라고 한 거예요. 네가 봐서 좋을 게 없다.(중략) 응급실에서의 처음 만남도 기억력이 안 좋아서 잘 안 떠오르는데 이걸 떠오르고 제가 올 1월 달에 머리를 좀 다쳐가지고 기억이 좀 잠깐 잠깐해요. 기억력이 감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억은 뇌리에 남은 기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본다는 건 솔직히 엄두는 안 나요. (사례 E)

- 유가족들이 산재 합의와 산재보험 승인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애도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장례식과 사망 직후의 시간 동안 가족의 죽음은 분노와 억울함의 감정에 휩싸여 제대로 자신의 슬픔을 마주할 수 없다. 또한 사망 직후에 회사와의 합의를 진행할 경우, 회사와의 대립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가족이 내리게 되면서 가족이 이로 인한 부담을 떠안는다.

어떻게든 장례를 치르고 하려고 하는 거니까 대책을 가져 오라고 말했어요. 말했는데 정작 와서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때 조문객이 올 시간이 아니었고 사람들이 우르르 오더라고요. *****(원칭) 직원들이... 제가 화가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나가라고. 구경났냐고. 아빠 형제들, 제 사촌형들이죠. 형들이 그 때 막 제가 또 싸울까봐 그 사람들 밀어내고 저는 사장이랑 이야기하는데 그 때에도 아무런 타협이 안됐어요.(사례 H)

그 때 아버지 때 이십 며칠 지났을 때니까 아버지가 단순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사고사이셔서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가 놔두면 놔둘수록 부패가 되어서 그거 담당하시는 분인 이거 그냥 놔두면 시신 부패가 일어나서 나중에 알아보지도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때부터 이제 제가 급해진 거죠. 마음이 급해지고 엄마도 그 때부터 좀 걱정이 많으셔가지고...(중략) 제가 무너지면 엄마랑 동생밖에 없는데 가뜰이나 거기 사람들이 계속 있으니까 엄마가 8남매인데 이모랑 삼촌들이 본업이 있으니까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빠지면, 힘이 계속 빠지거든요. 있으면 의지할 데가 있고 힘이 되는데... 거기서 무너지면 제가 큰일 날 거 같아서 그냥 어떻게든 끝까지 버티려고 하고 있는데(사례 H)

○ 죽음이 가져오는 가족 내외의 관계 변화

- 사망 이후 가족 구성원 모두가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은 가족들 내에서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된다. 가족들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아서 서로를 돌보기 어렵고, 같은 상황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이겨내는 가족들의 모습은 서로에게 견디기 어려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이나 여력도 없는 가족들은 서로의 상처를 알아도 외면하거나, 서로를 비난하기 쉽다.

애가 아빠 돌아가시고 한 달 뒤에 아빠 납골당을 49제 때문에 갔는데 몸의 자해흔적을 발견했거든요. 버스정류장에서. 그 때 좀 많이 무너지

긴 했어요. 화를 분출하는 방법으로 팔에 자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고 있었는데, 버스 가다가 우연히 손을 잡았는데 까칠까칠한 게 있어서 ‘뭐야 팔이 왜 그래’ 하고 긴 팔을 자주 입었거든요. 애가 나한테 샤워하고도 잘 안보여주니까 커서 그런가보다 그랬는데 자해 흔적이 있어서 그때 한 번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우선 화는 정말 많이 냈어요. 너 몸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 표출해야지 이 방법은 아닌 거 같다고(사례 E)

솔직히 아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스무살, 스물 두 살이지만, 지금 역시 좀 다가서기가 어떻게 다가서야하지. 저희 셋 다 아픔을 말하지 않고, 밝게 있고 아빠가 그걸 원했었으니까 최대한 밝게 지내려고 하다보니까 아픈 마음을 이야기 안하게 되었거든요.(사례 E)

동생이 많이 힘들어했는데 원래 잘 지냈거든요? 근데 아빠 사고 있고 나서 동생이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저한테는 말 안하는 그런 게 느껴져서 엄마한테도 말해봤는데 엄마한테도 말 안한다고 그래서 그 때에 좀 많이 느꼈죠(사례 H)

- 가족들은 이사 등으로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가족 내의 역할 재분배를 통하여 공백이 생긴 가족의 몫까지 수행하며 바쁜 일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외면 혹은 해소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산재 인정 과정에서 새롭게 신뢰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인정과 수용은 가족들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동생도 아빠랑 많이 지내다보니까 이제 아빠 생각이 많이 났었고. 음... 저희가 빨리 이사를 빨리 했어요. 왜냐하면 집도 알아보고, 했어야 했는데 빨리 한 이유가 거기 계속 있으면 아빠랑 저랑 동생이 살던 집이니까 계속 생각이 날 거고 그러면 일상생활을 아무 것도 못할 거 같아서 엄마랑 저랑 이야기한 게 빨리 이사를 하고 우리 가족 얼른 힘내 보자고 해서 이사를 했는데 계속 생각나죠, 아빠 생각나고.(사례 H)

- 그러나 대부분의 가족들은 고립감 속에서 심리적 어려움이 심화된다. 산재 후 경험하는 가족의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은 주변에 털어놓기 어렵고 기존의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이해받기 어렵다. 산재 이전에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위로 차 건네는 말조차 차별적이거나 위선적이라 느껴지고, 주변 사람들의 위로는 다른 의도가 있거

나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로 들려 불편한 마음이 들어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럴 때에 산재 이후의 상황을 잘 아는 가족모임(자조모임)이나 노조, 대책위 등의 존재는 큰 위로가 되었다.

처음에 방송 나가고 청와대 글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 연락들이 오더라고요. 그 때 당시에 연락이 와서 그 때 어디 연락할 상황이 아니라서. 연락해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기도 하고 지금도 소식 들은 사람들은 안 보다 뻔하게 되면 저기를 하시더라고요.(어떠세요 주변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좀 그렇죠. 눈물이 내려 해도 참고 있고...그런데 연락이 안 오다가 오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그렇고.. 왜 그런 것도 있고. 갑자기 안 하던 사람들이 연락오고 친한 척 하면 그렇기도 하고(사례 G)

여기가 시골이라 말이 많아요. 제가 이려고 다니는 것도, 직장을 다니는 것도 웃고 다니는 것도 말이 많아요. (여기서 사람들 마주치시는 게 불편하신 거예요?) 조금 그렇죠. 말 나오는 게 불편하고 괜히 이런 말 저런 말 나오는 거 같으니까 (그런 얘기는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그런...) 할 때도 있어요. 할 때도 있고 남이 한 이야기를 전해줄 때도 있고(사례 G)

○ 가족 문제의 만성화

- 산재 승인이 된다고 해도 가족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문제가 다 해결되기 보다는, 일부가 해소되는데 산재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가능성 없이 점점 경제적 문제가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산재보험 심사를 청구하는 가족들은 여러 조건으로 인하여 생계적 곤란을 경험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역할 과중과 법률전문가 섭외의 부담을 느끼더라도 산재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불승인으로 끝날 경우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계속 정신적 부담으로 놓이고, 가족들을 더욱 취약하게 한다.

여기다가 지금도 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5백을 투자하라고 하면 안 해요. 못하겠어요. 진짜로. 저한테 천오백이란 돈은 정말 큰 돈이에요. 애들 대학교 등록금이니까. 제가 뻘 뻘지게 하는 건 대학교 가서 좋은 대학교. 저는 애들이 좋은 대학보다 원하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중략) 지금은 빨리 나아가 한다는 생각에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빨리 나아가 한다는 생각? 지금은 또 일 자리 알아보느라 정신 팔려서 솔직히 내 몸을 돌아보거나 감싸는 시간은 없는 거 같아요.(사례 E)

- 특히 불승인 유가족의 경우 더 이상 가족의 억울함을 풀 수 없는 조건에 놓이게 되면서 사회심리적 어려움이 점차 강화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가족의 억울한 죽음은 가족들에게 억울함과 회사에 대한 배신감, 분노, 그리고 공공기관의 무능함에 대한 분노로 나타나며 큰 고립감을 느낀다.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대화를 해서 이길까? 말로? 이해를 못 시킬 거 같아. 왜냐하면 내가 그 입장이 아니니까 이해가 아예 안 될 거 같은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변명 밖에 안 된다고 할 거 같으니까. 네다섯 번 이 상황을 지나가니까 솔직히 너는 범죄자야 하는 인식이 박히게 되고 니가 잘못해서 죽어놓고 뭘 말이 많아 이렇게 되니까 안하고 싶은 거야.(사례 E)

- 가족들은 장기화될수록 가족 관계 안에서 심리적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태에 놓이는데,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족구성원이 있어도 가족에게 치료를 권하기 어렵고, 치료를 권한다고 해도 가족들이 응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과 역할과중으로 인하여 서로의 심리적 어려움에 귀 기울일 수 없던 시간은 점차 굳어져 가족들이 서로 간의 돌봄이나 위로를 하기 어렵게 한다. 이를 수행할 마음이 있더라도 자주 갈등으로 번져 전문적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어렵게 한다.

저희는 셋이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일을 하면 솔직히 지쳐요. 하루에 12시간, 14시간 밖에서 일하다 들어오면 솔직히 집에 오면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지쳐있거든요. 그 와중에 얘기를 듣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거나 그럼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애가 어제 분명히 나한테 뭔가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을 못하는구나 그럼 아침에 특을 보내서 미안해 엄마가 어제 자가지고.. 그럼 괜찮아! 별 얘기 아니었어 이렇게 하고.(사례 E)

스물 두 살, 스무 살이긴 하지만 한 번쯤 심리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해요. 근데 애들이 그걸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환자란 것이,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볼지. 혹시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아무리 세상에서 불이익이 없다고 하지만 저희가 겪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안타깝기도 하고. 필요로 하는데.(사례 E)

어머니는 상담사 오셔서 이야기 나누셨는데 얘기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동생은 그 분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치료를

받는 거라는 생각에 거부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줌.. 안 받으려는 것도 있기도 하고..(사례 H)

○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정신적 부담이 계속됨

- 불승인 시 경제적 문제는 산재 심사 결과의 불복 과정을 포기하게 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였다. 불승인 유가족(사례 E)은 산재 불승인 이후 경험하는 억울함이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했으나, 이에 한 차례 더 실패를 경험했다. 이를 경험하면서 생명보험금을 소진하고, 더 이상 이를 소진할 수 없어 포기했다.

- 생계부양자의 사망은 산재보험만으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렵도록 한다. 아직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산재보험 수급 외에도 경제활동을 하지만 주 생계부양자의 사망은 이전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

병원 다니는 곳 하시는 말이 신랑 이렇게 보내고 나니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 같아서 제가 허리디스크가 두 개가 없대요. 무릎 연골도 없고 너무 일을 일만하고 솔직히 생각 안하고 싶어서 일에 매진하고 이런 게 있다보니까 몸을 너무 함부로 써서 그런 거 같아요. (선생님께서선 선생님 몸이 쉬시거나 마음을 다스리시거나 이런 시간을 가지셨었어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지금도 제가 일 쉬기 전에 하던 데가 워낙 장사가 잘 됐고 쉬는 날 산재나 이런 거 준비하느라 바빴고 한 달 동안 쉬는 동안엔 거의 지금은 아무 생각 없어요. 내 몸이 회복되면 당장 복귀해야 하니까 허리 아픈 거, 다리 아픈 거 빨리 나아야지 이 생각. (그럼 다시 일하실 때도 전에 일하셨던 곳으로) 아니요, 다른 데 조금 더 월급이 쎈 데. 줌 일은 힘들더라도 월급이 쎈 데? 이 월급으로 살아보니까 조금 더 내가 힘들더라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조금 더 쎈 곳으로(사례 E)

(3) 사후신변정리의 막막함

○ 쉼 새 없이 몰려오는 유가족의 일에 대한 막막함

- 유가족들에게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사망한 가족의 신변을 정리하는 일로 다가온다. 가족들은 사망신고, 금융자산을 비롯한 재산 및 빚 정리,

보험 수급 등을 위한 절차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사후 정리 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가족들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 노조의 도움을 받은 가족들의 경우 산재보험 신청 외에도 사망 신고와 이후 절차에 대한 일부 조력을 받을 수 있었다. 친척들의 도움으로 이를 해소한 경우도 있었지만 유가족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 결국 대부분의 과정을 가족들 혼자 감내한다. 가족들은 가족의 사망 이후 생계 활동을 시작하고, 일상에 적응하는 동안 사후 정리의 행정적 과정을 처리하는 데에 물리적 어려움을 경험한다.
- 일부 가족의 경우 사망신고가 한 달 이내라는 단순한 사실을 알지 못해 벌금이 부과될 뻔 했던 적이 있었고, 사망신고만 먼저 한 채 금융 자산 정리를 하면서 매 번 같은 서류를 증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경험했다. 이러한 어려움은 행정 절차를 알았다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간단한 문제들이지만, 가족들이 직접 알아보며 진행하기에는 정보접근의 어려움이 많았다. 유가족은 절차에 대한 사전 정보나 원스톱 서비스와 같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욕구가 있다.

카드사 빚도 그렇고 다른 곳 대출 할 때도 사망신고 해서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만약 자동이체 이것도 신고하기 전에 나한테 하고 했으면 될 것을 안 그러면 다 서류가 들어가야 해요. 기본적인 서류가 다 들어가야 하더라고요. 이걸 저기 할 때 미리 할 걸. 그럼 복잡하게 안 할텐데 그것도 저기 가서 똑 같은 서류를 몇 번씩 떼야 하고 그게 어렵더라고요(사례 G)

사망신고도 한 달 이내에 안하면 벌금 내야한대서 그런 것도 저. 몰랐거든요. 그런 것도 자세히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그러게요 그 때에 합의하시고 장례식 치르고 그랬을 때가 이미 거의 한 달 되셨을 때 아니에요?)네(사례 H)

- 노조, 대책위에 도움을 받은 사례(G, H)는 공식적인 산재승인 절차에서도 지속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노조를 통하여 선임된 노무사는 가족들은 산재보험 신청과 수급에 필요한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할 수 있고, 노조 간부들과의 지속적 연락을 이어가며 산재 인정 과정에서의 물리적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때에 도움을 받았으며 유족으로서 참여가 보장된다. 이 경우 미리 인지하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는 현장 검증참여 등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었다.
- 노조나 대책위의 도움으로 산재 승인 절차에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과

정을 직접 신경 써야 하는 어려움은 덜했지만 유족들은 전반적인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워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다. 노조와 선임된 노무사가 질문해도 괜찮다고 이야기 했지만, ‘해도 되는 질문인지 모르고’, ‘어떤 질문을 해야할지조차 몰라서’ 질문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 산재신청과 불복절차를 위한 법률전문가(노무사/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심사승인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는 담당이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어려웠다.

(위낙 법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다 맡겨져 있고 어머니는 오히려 요청받은 것만 하게 되고.. 전체적인 부분을 모르고 이런 부분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그 때 그 때 상황이 되면 이야기해주시니까 대충은 아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걸 아는데 그래도 옆에 저기하면 제가 놓친 걸 물어보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질 못하잖아요. 아무리 저기해도 제가 저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다 이야기해주고 상황 진행상황 이야기해준다고 하더라도 궁금한 거 물어보라고 해도 그 때는 멍하고 모르니까 몰라서도 못 물어보고*(이게 낫 설기도 하고 법률적인 부분은 한 번 들으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게 조금 그렇죠. 기본적인 것만 물어보고 다른 건 뭐...(사례 G)

남편이 6월 달에 그렇게 되고, 이제 이런 저런 거 정리하고 그 사람 꺼 서류 하고 그러니까 6개월이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월에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했어요. 그리고 깁스 풀고 4월에 취직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너무 바쁘니까 그쪽 분들이 떼어달라고 하는 게 있으면 떼어드리고.. (아이고. 정리한다는 건...) 유품 정리도 하고, 동사무소 가서 이제 신고하면 이제 해주시잖아요. 그거 보고 은행 정리 이런 건 다 해야 하더라고요.(사례 E)

○ 갑작스러운 경제적 곤란 야기

- 사후 신변정리 과정에서 유가족은 갑작스레 빚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기도 하고 이사 등으로 인한 큰 비용이 드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한다. 또한 노무사 등 산재보험 신청을 위한 전문가 섭외를 위한 경제적 부담도 발생된다. 당장 정적이었던 소득이 사라진 가족에게 급히 빚을 갚아야 하고, 산재 승인을 위한 지출도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크게 다가올 수 있다.

그 사람 빚이나 이런 걸 정리해야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빚이 조금

많아서 엄마랑 같이 살다보니까 엄마가 모를 수 없어요. 전화를 듣고 있으니까. 이걸 안 갚으면 내가 달달이 얼마씩 갚아야하는데, 애들도 있고 힘들고 그리고 네가 안 갚으면 애들도 저기하니까 그냥 엄마가 도와 준다고 생각하고 그냥 해준다고 하셔서 처음에는 애들이 싫다고 했거든요 할머니한테 도움 받는 거. 근데 엄마가 남편도 없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 수 있다. 이정도는 엄마가 해줄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받아라 그래서 엄마가 해결해주셨어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힘들었죠. 그 사람 그렇게 된 것도 힘들었고 그 후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도 힘들었고. 신청하고 나서 처음에 제가 집도 없었고 빚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사례 E)

- 산재승인 시에도 승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산재 불승인 사례의 경우 가족에게 큰 경제적 문제로 발생된다. 이로 인해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자녀를 비롯한 가족의 삶의 선택지가 변화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 가족들이 이를 대비하여 생계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경제적 위기는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높은 법률적 처리 비용과 갑작스러운 소비들, 낮고 불안정한 수입은 산재 인정의 실패 후 가족들을 더욱 곤란하게 한다.

솔직히 천만이면 저희 애들 대학교 등록금이잖아요. 여기서 더 많은 돈이 들어야 하고 (중략)내가 더 열심히 뛰지, 더 아끼지. 내 애들한테 더 투자하고 말지. 여기다가 지금도 천 만원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5백을 투자하라고 하면 안 해요. 못하겠어요. 진짜로. 저한테 천오백이란 돈은 정말 큰돈이에요. 애들 대학교 등록금이니까. (사례 E)

(4) 사회적 고립

○ 일의 중첩으로 인한 고립

- 유일한 생계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특히 도드라지는 문제는 생계활동과 자녀 돌봄의 중첩으로 인한 고단함이다. 자녀들을 위한 생계 노동을 하게 된 가족들은, 이로 인해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돌봄의 공백에 대한 미안함과 이를 메우기 위한 노력을 쏟는 과정에서 오는 고단함을 계속 경험하며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게 된다.

저도 몰랐었는데 막상 하고보니 내 몸이 힘들고 지치니까 애들 맘을

힘 내서 들어줄 여력이 없는 거 같아요. 지쳐서 잠들기도 바쁘고 오면 집안일도 해야하고 저야 지금은 엄마가 해주시지만 다른 엄마들은 자기들이 해야 하잖아요. 여력이 없는 거예요. 빨리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니까.(사례 E)

-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이 생계-돌봄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가족구성원의 소진을 피하기 어렵게 한다. 필수적인 일 사이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이나 자신에 대한 돌봄을 할 여유가 없는 가족은 소진을 경험한다. 그리고 생계-자녀돌봄의 중첩된 책임을 가지는 가족들의 소진은 다시 자녀들에 대한 발달 지연이나 심리적 문제를 초래한다.

(선생님께서서는 선생님 몸이 쉬시거나 마음을 다스리시거나 이런 시간을 가지셨었어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지금도 제가 일 쉬기 전에 하던 데가 워낙 장사가 잘 됐고 쉬는 날 산재나 이런 거 준비하느라 바쁘고 한 달 동안 쉬는 동안엔 거의 지금은 아무 생각 없어요. 내 몸이 회복되면 당장 복귀해야 하니까 허리 아픈 거, 다리 아픈 거 빨리 나아야지 이 생각. (중략) 지금도 원래 음악 듣는 거 좋아해서 지하철에서 일 끝나고 그냥 2-30분 동안 음악 들으면서 걸어오는 게 유일한 시간? 지금은 빨리 나아야 한다는 생각에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사례 E)

○ 사회적 시선으로 인한 소외

- 유가족들은 회사와의 다툼이나 산재 승인 과정에서 자신 혹은 다른 산재 유가족의 인터넷 기사를 접하고, 그 기사 댓글에서 부정적인 여론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는 특히 20대나 비성인 가족들의 경험에서 크게 나타났다. 부정적인 여론에 노출된 가족들은 다른 가족들에게 이에 대한 억울함이나 분노, 사람들에게 대한 경계심을 토로하기도 했다.

댓글을 쭉 읽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던 거 같아요. 이 직업에 대한 인식과 사람들의 보는 인식? 아 이렇게 보는구나 왜 산재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구나 많이 생각하게 되고 (중략) 댓글을 보면서 라이더분들에 대한 좋은 인식보다 나쁜 인식이 많은 걸... 저희도 지나가다 그러잖아요. 어 저 오토바이 왜 저래 왜 이렇게 험하게 몰아 그러는데 그 분들이 댓글을 다는 데에 거기에 일일이 댓글을 다는 것도 웃기고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이 사

람들을 대화를 해서 이길까? 말로? 이해를 못 시킬 거 같아. 왜냐하면 내가 그 입장이 아니니까 이해가 아예 안 될 거 같은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변명 밖에 안된다고 할 거 같으니까. 네다섯 번 이 상황을 지나가니까 솔직히 너는 범죄자야 하는 인식이 박히게 되고 니가 잘못해서 죽어놓고 뭘 말이 많아 이렇게 되니까 안하고 싶은 거야.(사례 E)

딸래미가 했던 말이 변호사놈 다 나쁘다고 그랬어요. 정말 일 처리를 이렇게 500이나 줬는데 기자보다도 더 못하게 한다고. 속상한 마음에 하는 말인데 그런 거. 믿었던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거나 말의.. 큰 일을 겪으면 주변에 걸려야 할 사람들이 보인다고 이 애들이 그런 걸 보기 시작하니까 좋은 것만 봤으면 좋겠는데 벌써부터 사회 부정한 걸 보고...(사례 E)

- 멀리 존재하는 이들의 시선을 댓글로 보기도 하지만, 가까운 곳의 지인으로부터도 유가족들은 사회적 시선을 경험하는데 이들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은 노동자, 산재, 노조, 유족 등 산재 사고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탓하고, 회사의 피해를 걱정하는 시선이나 이를 증명하려는 가족에 대하여 이기적이라 탓하는 시선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가까운 이들로부터는 ‘한부모가정’과 같이 비정상 가족이라는 낙인이나 사별자로서 경험하는 시선의 무게를 경험하여 새롭게 알게 된 이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꺼려하게 되기도 한다.

어떤 자리를 사적인 자리를 갔을 때에도 저를 막.. 재 남편은 뭐해 하고 주변에 질문하면 어, 사별하셨어 그러면 그 때부터 시선이 달라져요. 안타까운 사람 불쌍한 사람?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씩씩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 눈으로 말 한마디로 또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응. 그래요. 저는 그런 시선도 그렇고 제일 걱정되는 건 모든 엄마들이 다 똑같은 거 같아요. 내 아픔도 크지만 아이들의 아픔인데 이걸 엄마도 못 다가서고 아이들도 다가설 수 없고,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녹록치 않다는 거. 그런 게 좀 있어요.(사례 E)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최대한 평상시처럼 하려고 하는데 평상시처럼 하려고 하는 것도 젊고 애기 아빠가 아파서 간 게 아니니까 똑같은 행동을 해도 좀.. 부담이 가고 이렇다 저렇다 말 나오는 게 부담스럽고 그게 제일 걱정이고 제일 저기죠(사례 G)

- 장기적으로 가족들은 산재로 가족을 잃은 이후 주변의 관계가 변화되는데 본래 가

카이 지냈던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불편함이 이에 크게 작용한다. 그리고 사고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이 변화하는 것 또한 기존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새로운 관계를 갈망하게 한다. 이 때에 자조모임과 같이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찾은 가족들은 이 안에서 공감과 위로를 받기도 하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고립감을 해소하는 도움을 받는다.

김용균 어머니 맨날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많이 이야기해주셔서 도움도 많이 됐고 힘이 많이 됐고. 제가 가는 데마다 앞장서서 해주시니까 도움이 많이 됐죠 (중략) 저는 생각했던 게 아버지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다른 분들한테. 근데 제가 직접적으로 헤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제가 필요하시거나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드릴 게 있으면 불러주시면 가겠다고. 그리고 어쨌거나 이슈화가 지나고 나면 어쨌거나 기억하고 있는 건 가족들 밖에 없잖아요. 누군가 그래도 우리 아빠에 대해서 생각해주고 있구나. 아빠 그래도 이름 세 글자 쓰고 가셨구나. 그래도 연락 주시니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구나.. 생각해서 되게 감사하죠 그래도.(사례 H)

2) 과로사 유가족

(1) 유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산재 승인 과정

○ 과로사: 산재 인지가 어려운 죽음

- 유가족들이 사망 직후 과로사가 산재임을 바로 깨닫기 쉽지 않다. 과로 사망은 대체로 일터가 아닌 곳에서 발생하고 일터 내에서 사망하더라도 업무적 활동 외의 이유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산업재해’에 대해 알더라도, 과로사에 대한 정보가 없는 가족들이 많다.

산재 그런 관련된 부분을 조금 알고 있었죠 (아. 그러시면 고용하게 되면 그 분들 산재보험 비용 내고 하시니까 알고 계셨던 거군요. 그럼 아드님이 돌아가셨을 때 산재다라는 걸 바로 아셨어요?) 아뇨. 그 때는 애가 사망하기는 일을 마치고 새벽 6시쯤 집에 들어오는데 샤워를 하다가 숨이 멎었기 때문에 그 때는 당연히 외상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리고 작업 현장에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집에서 심장마비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죠. 샤워하는 중간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때만 해도

이게 조금 운이 나쁘다고 하나요. 갑자기 숨이 멎었으니까 우리가 빨리 발견하지 못해서 죽었다고 생각했죠. (사례 F)

- 가족들은 장례식 등에서 노동자의 동료로부터 과로 혹은 직장괴롭힘 정황 등 과로 사로 추정될만한 일이 있었음을 듣고 산재일 수 있다고 인지하게 되었다.

그 때에 새벽에 일 할 때 애가 체한 것 같다고 하고, 뭐 머리도 아프다 그러고 속이 매스껍다고 그러고. 평소에 일을 하다가도 가슴을 움켜지고 주저앉았던 적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고 특히 그 날 같은 경우에는 애가 너무 그러니까 그 날이 월요일이었는데, 수요일은 할아버지 기일이어서 그날 일을 안 하러 가기로 되어있었는데 그 때 병원에 한 번 가보라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동료들끼리?) 네 그래서 그 말을 마지막으로 했었다.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사례 F)

- 그러나 가족의 죽음이 산업재해라고 인식 하더라도, 산재 신청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산재 신청을 위하여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을 유가족이 모두 진행하기는 어렵다. 특히 산재 신청 과정에 들어서기로 한 이후에는 동료들에게 증언을 받거나, 회사로부터 증거를 얻기 위한 다툼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산재 승인 절차를 밟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남편이 못 버텼구나 생각했었는데 아버지가 아버지도 대기업에 계셨고 이걸 산재 같으니 산재 해보자고 하셨지만 저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딱 하루 생각해봤는데 남편 유품 정리하면서 보는데 힘들어 죽고 싶어, 여보 어떻게 지금 회식인데 너무 괴로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 2년동안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했지, 이걸 산재야 라고 생각했고. 진행하는 중에 불승인 승인 상관없이 저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제가 남편이 고충 토로한 것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매일 들었거든요. 저는 산재라고 확신을 했어요.(사례 D)

거기서 일할 때 자살하는 노동자도 봤었고, 그 일 때문에 하루아침에 관리자부터 일하던 임원들이 싹 교체되는 것도 봤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준비해야.. 저는 생각 안 하고 바로 얘기 딱 듣고, 버스가 다섯시 20분인가 새벽에 그 차였거든요. 6시에 친구들한테 막 카톡 해서 그 때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친구가 언론 쪽에서 일하는 애가 있었

어요. 개가 이런 이런 일을 해야 하고 법원, 공판 이런 자료도 열람되는 지 알아보겠다 그 때 많이 도와줬던 거 같아요. 친구들이. 저는 진짜 하나도 몰라서, 그런 걸 알만한... 애길 하면 도와줄만한 사람들을 찾았던 거 같아요.(사례 B)

○ 산재 신청: 잘못 아님을 밝히기 위한 필연적 과정

- 산재의 신청은 가족의 죽음을 마주한 충격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그 이유를 밝히고, 죽음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수적 과정이다. 가족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죽음이었음을 인식하고, 가족의 잘못이 아님을 느끼게 된다. 산재 승인 절차는 가족이 죽음 자체에서 벗어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인 것이다.

샤워하는 중간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때만 해도 이게 조금 운이 나쁘다고 하나요. 갑자기 숨이 멎었으니까 우리가 빨리 발견하지 못해서 죽었다고 생각했죠. (중략) 그리고 제일 안타까웠던 게 우리가 다 깨어있었던 말이에요 그 시간 대에. 그러니까 더 저희가 마음이 아프죠. 조금만 더 빨리, 30분만, 10분만, 5분만 일찍 봤으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이 전부다가 있어서 그게 더 힘들고 괴로운 상황인 거죠. (사례 F)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더 처지고 죄책감 더 심해지고. 그러면 모든 기운이 다 빠지면서 꿈쩍도 못해요. 정말 휘몰아칠 때 정신없을 때 하는게 . 왜냐면 계속 사망이라는 단어를 봐야돼요.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한 번에 해결하는게 낫겠더라고요(어머니가 잘못된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계속 드시나요?)엄청나죠. 저도 잘 한게 없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근데 엄청나죠.(사례 D)

(처음에 전화 받으시고 내려가실 때부터 아 이걸 과로자살이다 하는... 판단이 있으셨던 거예요?) 오 네네. 저는 100%라고 생각을 했고, (중략) 이걸 100% 과로자살이다 이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때는 과로사, 과로자살보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회사의 문제기 때문에 100% 책임을 물을 거고 바로 준비가 되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면 될까 해서 그 때 바로 차 안에 가면서 새벽에 친구들한테 막 카톡을 해서 도움을 청했던 거 같아요. (사례 B)

- 그러나 실제 산재 신청은 지난한 산재 신청의 과정이나 산재 승인을 위하여 회사

와 대립하면서 심리적인 소모가 클 수밖에 없다. 그 갈등이 강하고, 길게 이어지는 경우 가족들은 오히려 산재승인 절차를 통해서 더 부정적인 감정들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심리적 내상을 입게 된다.

○ 산재 승인: 회사와의 힘겨루기

- 산재인정 과정 전반은 책임 입증을 두고 회사와 개인(유가족)이 대립한다. 회사는 증언하는 동료들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증언 확보를 방해하고, 증언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적극적인 방해를 하기도 한다. 소극적인 방해로는 요청하는 자료가 없다고 하거나 자료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데 이 또한 가족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된다.

그거(방송) 나가자마자 회사 쪽에서는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증언한 사람을. (중략) 명예훼손 당하셔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곳, 저곳 전화를 많이 했던 거 같아요. 동료들이 저희 막 저희 위해서 도와주신 건데 그 분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거니까 거기에 되게 죄책감이 들면서 이게 어떻게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 거냐, 당연히 안 될 거지만 회사에서 압박용으로 그러는 거 같다... 법원에서 전화했다가 검사한테 전화 했다가 담당 검사한테 전화했다 이것 때문에 한 3-4일을 병원에서 일하는데 너무나 긴장되고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게 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거기서 그 때 거기서 힘들었던 거 같아요. 우리 일 뿐만 아니라 남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남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산재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 같아요.(사례 B)

처음에 산재 신청할 때 회사를 절대 자극하면 안돼요. 자료를 안주려고 해요. 근데 공격적으로 나가면 줄 것도 안주거든요. 당신들이 자료만 준다면 그걸로 감사하겠다 식으로 굉장히 저자세로 나가야 되요. 저도 미팅할 때 한 대 치고 싶은데도 그렇게 했거든요 모든지 다 감사하다고 하고. 그렇게 해야 하고. 민사소송은 오히려 회사에서 맞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이 못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사례 D)

어머니 이거 제가 만약 **에 다시 안 들어갈 거면 모르지만 저는 하고나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 자기는 못 들어간다. 이게 우리 밥줄입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건 힘들 거 같아요. 그러니까 몇 친구가 세 명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내 아들 일

이지만 강제적으로 하긴 어렵겠구나 해서 다른 친구들은 못했어요. 이 친구는 다신 안 들어갈 거다 그 때만 해도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려 하니까 회사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역시 회사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진짜 그렇게 있구나(사례 F)

- 산재 신청을 위한 자료 준비 과정에서 가족들은 답답함, 무기력함, 불신과 불안 등의 감정을 경험한다. 산재 승인을 위해 거쳐야 하는 법률/행정 과정에서 가족들이 이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낯설고 복잡하다. 그에 반해 가족들이 증거 수집 등을 비롯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들이 많아 답답함과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한다.

그 분이 그 쪽 관련이 아니니까 관련된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전화를 막 하는데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들겠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세 번 듣고 나니까 그제서야 좀 알겠더라고요. 노무사 한.. 그 분도 너무 감사한 게 노무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저한테 세 번 한 거잖아요. 저한테. 그런데 그 분 말고도 제가 다른 노무사한테도 물어봤으니까 그 썸 들으니까 알겠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당사자가 아니고 저는 처제잖아요. 언니가 그 때 들었으면 과연 그 정신에 그걸 할 수 있을까? 본인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막 적어놓고 다이어리를 공부를 하면서부터 쓰기 시작했거든요(사례 B)

산재라고 인지를 했을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가족이 다 뛰어서 해야 하거든요. 그게 너무 벽이 너무 많고 정신도 없는 사람이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힘들어요 보통의 정신력이 아니면 힘들거든요. 회사에서 no 하면 자료 받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사례 D)

- 또한 이 과정에서 증언과 증거 수집을 방해하는 회사에 대한 분노를 경험하게 된다. 회사와의 책임 입증 사이에서 둔 대립 상황에서 개인(유족)은 주변의 지인이나 산재 신청을 위하여 조력을 요청한 사람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가족들은 이 과정에서 증언이나 증거 등의 도움을 거절당하기 반복하면서 불신과 불안으로 인한 소진을 경험한다.

거의 남편이 죽고 부인이 직접 자료를 모으거나 사실 직접 관계된 사람이 간접체험... 뭐라고 해야하지. 저는 간접적인 경험인 거고, 직접적

인 경험을 한 사람도 사실 이 과정에서 저는 조금 배제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직접 하려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나시고, 대부분 우울을 깔고 있는 거 같고, 굉장히 불안하다, 잠을 못 자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걸 왜 본인들이 해야하나. 그런 얘기를 항상 하세요.(사례 B)

- 노동자의 사망 이전에 알고 지냈거나, 장례식 때 까지도 증언을 해주던 동료의 외면은 가족들에게 서운함과 답답함으로 다가온다. 회사의 압박을 짐작하기 때문에 이를 탓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가족에게는 한 사람의 증언과 증거가 중요한 상황으로 이들에 대한 감정이 매우 복잡하게 펼쳐진다.

그 때(장례식)에 한 조의금 들어온 게 35명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저희도 좀 놀랐죠. (중략) 근데 35명 정도가 온 걸 보니까 야 그래도 좀 대단하다. 애가 인심은 안 잃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사건을 접수하고 난 다음에 그 때부터 산재 관련된 증언을 들어야하고 자료를 챙겨야 하는데 연락을 하니 전화 안 받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 친구들이 혹시 일을 관렸나 하고 셔틀버스 내리는 시간에 차를 가지고 가서 기다려봤어요. 근데 그 날 아침에 우리 애가 셔틀버스 내리고 나면 집까지 오는데 첫 차 타기까지 3,40분씩 공백이 생겨요. 그 때 새벽에도 같이 뭘 나눠먹고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던 친구인데 가서 기다리니까 그 친구가 그 날 내리는 거예요. 저희 가는 날. 그럼 그 친구가 일은 하고 있다는 건데 전화를 하니 전화 안 받아요. 그래서 문자를 남겼죠? 대답도 없는 거예요. 문자를 본 그건 있는데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애 휴대폰에 있는 동료들한테 연락을 남겼죠. 안 되는 거예요.(사례 F)

산재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연락 했죠. 그때 남편이 대인관계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대리급 사원이 장례식장 직원분이 회사 내 장례식장 많이 가봤지만 대리급 사원에 조문객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본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었죠 직원 분들을. 결국 아무도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욕도 먹었어요(사례 D)

- 노조나 대책위가 개입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산재 승인절차와 합의에 필요한 전 과정에 개입하면서 가족에게 절차상 적절한 도움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가족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압박 또한 일정정도 대처될 수 있었다.

(대책위에서는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알리는 역할을 돌려주시고 회사랑 하는 협의 같은 걸 해주신 건가요?) 그렇죠 중재를 해주시는 거죠. 저희는 사실은 이게 산재라는 것도 모르고 노동법도 모르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대책위에서 짚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개인이 싸워서 안되는 게 언론을 하는 것도 안 되고요. 저희가 운 좋다고 한 게 그 때 국회청문회 기간이 있었잖아요. 10월 말 경에 그 때 저희가 우리 아들이 사망한 시점에 청문회기간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자료를 많이 요청했고 그 때 연결점이 된 게 과로사 대책위원회거든요. 그 다음에 산재청문회가 있었을 때 **대책위원회나 국회의원이나 환노위윈도 연결시켜 주었고 그런 지원을 많이 받았죠. 이 분들이 도와주신 게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는 데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었죠.(사례 F)

○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산재 승인 절차

- 유족이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족이 직접 나서서 자료를 수집하고, 일련의 과정을 직접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요구한다고 해도, 회사가 꼭 이를 들어주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증거가 어렵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무력감을 경험한다.
- 특히 산재승인 절차에서 각 과정의 많은 역할을 책임지는 가족들에게 적절한 권리를 고지하거나 결과에 대한 판단근거나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이 있지는 않았다. 가족들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결과만 인지하며 경험들이 이어진다. 가족들은 정보력이나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수동적인 상황에 놓이기 쉽고, 산재 승인 과정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서 소환된다.

중간에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저랑 한번 미팅을 하자고 하셔서, 공단 직원분들이 회사를 찾아가서 조사를 하시긴 하셨는데 그분들은 일개 노무사보다는 강제력은 있겠지만 그렇게 막 무조건 주세요, 이렇게는 못한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서 거부하면 끝인.(근로복지공단 인천 어떻게 알고) 저만 이해적으로 그 병원에서 불러서 조사를 추가적으로 받았거든요.(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노무사님도 그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셨고... (사례 D)

- 산재 신청 과정에서 만나는 공무원들의 관료적 절차나 태도는 가족들이 공적 체계를 불신하고, 의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가족들은 담당 경찰이나 공무

원의 관료적 행정 처리 방식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답답함과 의심을 가지게 된다. 또한 공무원과의 만남에서 산재로 인한 가족의 죽음에 대하여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고, 이로 인하여 소외감을 경험한다.

사이렌은 울려야하지만, 사인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얘기하셨어요. 저희가 아파트기 때문에 옆집 밑의 집 사이렌 울리면 사람들이 나와 볼 텐데 하여간 그 사인 단어를 너무 자기네들끼리 소통하고 너무 크게 얘기해서 문을 닫으라고 제가 소리 질렀던 기억이 나요.(사례 D)

하물며 저희가 뭐죠, 부검하기 위해 사망진단서 바꾸어야 해서 사건 신고를 하러 갔는데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 그거 지금 원인불명이라 나와 있는 사망진단서가 이게 심장마비로 죽은 게 맞잖아요. 원인불명 외 인사가 우리한테 경찰이 심장마비라 그런다. 그게 맞다고 부검 감정서는 누가 와도, 대통령이 와도 안 바꿔준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거 똑같아요. 이런 투 있잖아요. 하도 의심스러워서 의사한테 물어봤죠. 이게 심장마비로 죽은 게 맞냐고.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고 말 그대로 원인불명이라고. 원인이 없다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야기해서 다시 바꿔가지고 경찰서에 직접 갔죠. 가니까 그 ***(기업 이름)****(기업 이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나오는 것보다 원인불명으로 나오는 게 산재인정에 훨씬 유리합니다.” 저한테 그랬어요. *(경찰들이요? 아...)* 네 되게 귀찮아하는 거예요.(사례 F)

처음에 말한 걸 토대로 거의 사건의 내용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유가족 중에서 진술했는데 잘못 말한 거 같아.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중에 정보공개 청구했을 때에도 그렇게 어렵게 정보공개 청구해서 내가 변호사도 아닌데 법적 용어나 이런 것도 다 맞춰서 보내면, 그런 걸 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노무사님이 보더니 아이, 복잡하네, 하고. 저희가 하니까 안됐어요.(사례 B)

○ 유가족이 경험하는 일과 권한의 불균형

- 산재신청은 ‘신청’의 의미 이상의 과정을 수반한다. 공식적인 산재 심사 절차에 들어 위해서는 산재일 수 있음을 보이는 증거들을 어느 정도 확보한 채 신청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유가족들은 증거를 수집하고, 믿을만한 노무사를 선임

해야 한다.

결국 산재준비하기 위해서 노무사가 필요하단 건 알았는데 어떤 노무사를 선택을 해야지 내 비밀보장이 되면서 산재승인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크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결국 노무사도 *** (지명)에 있는 노무사들을 다 좀 유명하단 노무사들을 다 만나봤는데 자료를 회사에 빼돌렸다 우리는 산재 승인이 쉽지 않을 거 같고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보면 지역에서 최대한 멀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례 B)

- 가족의 사망 이후 가족들의 일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사망에 관한 일과 갑작스러운 역할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가족의 삶을 버겁게 한다. 특히나 산재 인정과 관련한 일들은 가족들에게 단순한 ‘일’의 중첩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다른 가족에 대한 돌봄과의 중첩은 남은 가족에게는 죄책감과 미안함을 가지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생활에 끌려가도록 하는 소진을 가져온다.

둘째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학교를 다녀야하고. 막내는. 둘째는 마침 올해 졸업을 했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애도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챙겨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막내 같은 경우에는 챙겨줘야 하는데 학교 아직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챙기니까 개네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많이 생기죠. 형도 그런데 그 일 때문에라도 나가버리니까 이 생활 자체가 깨져버리고 더 무서운 건 저희가 형 일 때문에 나간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애네한테 이해시켜야 할지 그걸 저희도 아직 서지를 않아서.... 그래서 약간 비밀 아닌 비밀이 되어버렸죠, 알긴 알 거지만 저희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못하니까 괜히 중간에 그런 게 딱 생겨버리고 한 번씩 다녀오면 우리는 이제 뺏는 그런 상황이고 (사례 F)

- 가족들의 많은 일들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가 절실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고 대체로 스스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가족들이 무리한 생활을 계속하거나, 심리적인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

(**구 아이돌보미 서비스 알아보셨나요?) 못 알아보았어요. 해도 그 도
우미분하고 아마 못 있을 거예요. (중략) 문제가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되게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둘째를 위해서 말을 해야 되요. 언어 치료 때문에. 아이들하고 놀아주기 위해서 계속 말을 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둘째 로봇 조립해주고 이런 건 얼마든지 하겠어요. 인형놀이 역할놀이는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죠. (*아이돌보미를 약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구체적으로 알아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알아볼 기운도 없고(사례 D)

- 기업이 큰 경우 살고 있던 지역에서 노무사를 선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유가족이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요청하거나 증언을 부탁해야 하는데 이 자체가 큰 시간과 노력이 든다. 이러한 상황은 가족들이 적절한 조력자를 찾거나 이들을 신뢰하기 어렵게 한다. 결국 가족의 몫으로 주어지는 일과 책임을 늘리게 되는 것이다.

회사 앞에 은행을 가는데 그 은행에서 카드 내역을 뽑으려 하는데 갑자기 어디에 전화를 하더니 안해주겠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회사랑 *****였나 제 3금융권이었는데 거기가 회사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피디님이 이거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회사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불법 아니에요? 막 피디님이 더 화가 나가지고 이거 당연히 충분히 제공해야 하는 건데 왜 제공하지 않냐고 해서 결국 받기는 받았는데 사실 회사 안예를 찍는 게 아니고 밖을 찍는 건데 아 여기는 회사가 큰 회사구나 여기는 조금만 입 조심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날 수 있겠다(사례 B)

○ 사망 직후 증거 확보의 어려움

- 과로사의 경우 대체로 사망 지점이 집이나 개인적 공간이기 때문에 초기 경찰 조사가 회사 내 업무환경을 조사하지 않고, 유족에 대한 조사와 집 내부 등을 조사하는 데에 그친다. 이후 산재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현장조사가 시작되면 빨라야 한 달 정도가 흐른 뒤이기 때문에 현장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

상해는 경찰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사고가 나면 경찰이 그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들어가서 조사할 때 보호자도 같이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걸 해야 할 거고. 경찰만 가서 이야기 보면 자기가 못 보잖아요. 경찰이 보러 갈 때 오늘 사고가 나면 내일 사건이니까 경찰이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때 유족이 들어갈 수 있는 걸 만들어

야 할 거고 다른 산재일 때는 보통 보면 신고할 때 조사가 접수하고 이
 러다보면 꼭 3,4개월 있다 조사가 되니까 그 때는 우리가 봤을 땐 다
 바뀌어 있죠. 우리 애가 바보였어요,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다가
 죽는다는 게 바보였어요. 우리도 봤습니다. 4개월 뒤에 봤는데 그 정도
 로 싹 다 바꿔놓은 뒤에 하루 만에 철수 싹 해놓고 바꾼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조금 미지한 건 볼 수 있을 텐데 다른 쪽은 3, 4개월 되었을
 때는 다 바뀌었는데(이게 과로사라 더 그런 거죠? 시간이 늦어지니까)
 네(사례 F)

- 과로사는 직관적으로 업무상 연관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업무환경과 근무시간, 스
 트레스 등 현장의 무형적인 것들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사후에 훼손되거나
 조정되기 더욱 쉬워 가족들이 이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다.
- 유가족들은 사망 이후 경찰조사 과정이나 부검 등의 과정이 이후 과로사 정황을
 드러내는 데에 중요한 증거로서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에
 서 과로사일 경우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과로사나 자살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경찰
 관의 매뉴얼화 된 질의를 받는 것은 오히려 가족들에게 죄책감과 위축감을 안겨준
 다. 가족들은 이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피해나 권익침해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지
 못하며 중요한 사망 직후 정보들을 놓치게 된다.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경찰서인데, 경찰서 조사서식서 같은 경우에도
 단편적으로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물어봐야 하는 게 많이 있는데 경찰
 관들도 많이 힘들겠죠. 이런 사건을 접하게 되면. 그런데 과로사나 과로
 죽음에 대한 감수성 없이 조사에 임하게 되면 결국에는 유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거고 그 과정에서도 크게 도움이 안 될 거 같은데 그런 교
 육이 부족하지 않나. 물어봤을 때 단편적으로 이 사람이 부부싸움을 했
 나.. 중요해요, 중요한데 회사랑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 동료와의 관계나 학
 교 친구와의 관계나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단편적으로 끝난다는 게 저
 는 조금 더 아쉬운 거 같아요. 그 상황에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몇이나 될까 싶기도 하고.(사례 B)

- 사망 가족이 산재 승인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산재임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수
 집해야 하지만 가족들은 사고 이전까지는 회사와는 관계가 없던 개인들이기 때문에

회사 내 상황에 대해 알아내고, 정보에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산재 신청 자체가 다른 산재유형에 비하여 늦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리 애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우리 애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봐다오 이런 걸 근로복지공단에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았지. 그것에 대해 알아야 우리도 만약에 예를 들어 내 아들이 가서 뭘 한다 이런 걸 알았을 때 거기에 대한 각자 증명을 해야하는데 뭘 했는지 알아야 증명을 하는데 도와주고, 안 도와준다 이런 게 아니라 증명하기 위해 그 분들이 다 도와주셔서 증명을 한 거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증명하지 그걸 모르면 증명이 뭐를 증명 해야할지. 무슨 어떤 일을 하는지 택배 회사는 아니라는데, 박스를 날랐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례 F)

보안이 철저해서 출입이 다 금지가 돼요. 그럼 당연히 노트북이나 이런 데 있는 자료는 다 삭제가 되었을 거고. 그 큰 회사에서 시간관리를 안했을 리 없는데 출퇴근 기록지 관련 내용이 없다하고, 법으로도 보장할 수 있는 법체계가 아니기때문에 회사 벌금이나 어떤 형량을 제하는 걸 할 수 없고 결국에는 법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을 딱 받았을 때에는 굉장히 허탈하고, 내가 들인에너지며 시간이 굉장히 헛수고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 시점에는 (사례 B)

- 늦어진 산재 신청은 공식적인 산재심사를 늦추고, 현장조사 시기를 늦춰 사망 직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못 하게 한다. 결국 기존의 산재심사에서 중요한 증거확보의 절차가 되는 현장조사가 무용하게 만드는데 가족들이 개인으로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현장에서 유일한 증거 확보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 가족력의 굴레: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는 책임 입증의 공포

- 과로사 가족들은 자신들의 신체 건강 문제가 산재 인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동한다. 가족들은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문제가 가족력으로 작동하여 산재가 불승인될까 두려워 산재 승인될 때까지 가족들도 치료를 미루기도 한다.

저희는 산재 판결이 나고 나서.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받고 싶어도 받

을 수 없었던 게 지병, 가족력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략) 그래도 최근의 건강기록에 대한 거. 그래서 저희가 낼 수 있는 건 군대는 다녀왔으니까 입영당시의 신체검사 받았던 거 그런 거 이야기해주고 하니까 저희가 병원을 못 가겠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을 가서 애한테 해가 될 수 있겠다는 게 되니까 평소에 없더라도 나는 진짜 병원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끝날 때까지.(사례 F)

- 정신적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이 상담을 하며 작성하는 문건이 혹시 회사에게 유리하거나 산재 불승인의 단초가 될까 두려움을 경험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부담을 경험하기도 한다. 산재로 인해 경험하는 것들이 간단하거나 가볍지 않기 때문에 외면하고 싶은 감정을 넘어 산재의 승인 과정이 가족들에게 공포로 남는다.
- 그러나 극단의 긴장과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가족들이 경험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어려움이 작지 않다. 따라서 이 시기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공포는 유가족 건강의 장기적인 훼손을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한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2월 9일 끝나고 10일부터 애들 아빠는 병원을 가서 정신건강 의학과요, 가서 우울증하고 불안장애 처방약 받아서 상담을 받고. 저는 하는 중간에 몸에 두드러기가 막 나서 피부과하고 치과, 안과 이게 눈도 초점이 너무 신경 쓰니까 막 두 개씩 보이는 증상이 생겨서 저는 먼저 그걸 하고, 내과하고 이런 쪽을 먼저 다니다가 저는 3월 중순쯤부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서 같이 치료를 이제 받고 상담을 받고 그러고 있었죠 (사례 F)

그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동자 아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여기서 잘못되면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을 얻게 될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정신병을 얻게 되면 그게 더 힘들 거 같았어요. 언니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고, 가족들이 옆에서 1년 동안은 절대 떨어지지 말고 돌봐줘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그러셨거든요(사례 B)

○ 유가족의 증거 확보 전략

- 노조나 대책위가 함께 대응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산재 신청 과정에서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에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 이 경우 그

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조의 설명을 듣고 가족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많았다. 또한 유가족모임에 있는 가족들의 경우 노무사를 통한 산재 승인 절차 외에도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모임의 노무사나 가족들을 통해 도움을 받으며 이를 헤쳐 나갈 수 있었다.

그 모임(유가족모임)에도 노무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견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최민 선생님이 계셔서 남편과 같은 케이스에 대한 소견도 많이 해주셨고요 유가족 분들이 그런 절차를 겪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정말 많이 해주셨죠 (중략) 산재 신청이 굉장히 불안해요. 저희 같은 경우 승인도 거의 안된다고 할 정도로. 근데 대처하는 방법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뭐 포렌식이라던가. 자료 포렌식.. 그런 것도 그분들 통해서 알게 된 거고요. 그런 것도 포렌식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서 인증을 받은 업체 소개.. 하물며 그런 자료까지 도움이 많이 되었죠. (사례 D)

택배과로사위원회가 창립되어 있어서 그 분들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저희가 몰랐던 민주노총이라는 그 분들이 있잖아요. 노조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는 이분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계속 저희가 매스컴에서 들어왔던 어쨌든 자기네들의 또 다른 기득권을 만든다는 인식이었는데, 우리가 막상 이렇게 당해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 노동자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 법률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처리하라는 게 나왔죠 그게 컸었고 이분들이 움직여서 언론의 도움도 진짜 많이 도움 받은 게 언론이었어요. 많이 광고해줬기 때문에 경찰서도 함부로 못했고 조금 더 알려진 거였어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쉽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검도 못하는 거고, 경찰도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쿠팡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어쨌거나 우리가 제일 필요한 자료들을 국회의원들이 압력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니까... (중략) 저희는 도움을 받았죠. 만약에 택배과로사대책위가 없었으면 우리가 산재 인정을 받았을까? 그건 아닌 거 같아요(사례 F)

- 가족들은 과로사 증거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언론을 활용한 경우 도움이 되었다. 회사가 가족에게 증거를 제공하지 않고 증언을 막을 시, 언론의 취재로 밝혀진 사실이 자료로 채택되어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개인 차원의

언론 대응은 오히려 회사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자료를 더욱 주지 않는 경우도 생길 여지가 있다.

애는 출구 지원 업무기 때문에 항상 먼저 일한다고 들었다, 근데 증거 자료를 저희가 제시할 수가 없잖아요. 들었다. 동료증언도 있다 이렇게 해도, 실제 그게 없으니까. (중략)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제 3자인데,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동료 인터뷰를 넣으면 그건 사실이 되어버리잖아요. 실제로 일을 한 사람들의. 우리가 동료 이야기를 모아서 준 건 신빙성이 없는 데 진실성이 없는데 기사를 내면 뭐라고 말을 못하잖아요. 진짜 일한 애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국회의원실에서 자료 요청하면 그걸 속일 수 없으니까 그건 뭐 빼도박도 못하는 게 되었죠. 점점 더 이쪽에서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힘을 받았던 거죠.(사례 F)

지금생각해보면 사실 자료를 좀 더 수집을 하고 방송을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그거 나가자마자 회사 쪽에서는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증언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자료를 얻으려 했던 부분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도 만약 방송을 내보낸다 하면 매체 신문 쪽은 모르겠는데 미디어에서 얼굴 드러나는 그런 쪽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우선 모아놓은 다음에 나가는 게 좋을 거 같다. 회사에서 이게 압박이 가는 회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래도 회사 이미지 타격이 크니까 이런 걸 조금 고려해서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건 그냥 무시하는 쪽으로 갔어요. 대답을 안하고,(사례 B)

(2) 유가족의 사회적 고립

○ 유가족을 공격하는 사회적 낙인들

- 유족들은 자살, 산재, 사별자 등의 사회적 낙인과 주변인과 자신의 처지가 달라졌음을 느끼며,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 속에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때에 가장 고립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가까운 사람들의 위로가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시댁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등 기존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경험한다.

(남편분 가족들하고 연락 하세요?) 전혀 안 해요. 진짜 속상한 게 이렇게 하면 며느리로서 부모님이 께씸해도 연락을 해라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분들이 먼저 끊은 거고, 그분들은 저만큼 슬퍼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고. 그분들은 워낙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주변에 얘기 안하면 몰라요 이분들은. 원래 생활하시던 대로 생활하시면 돼요.(사례 D)

근데 사실 어쩔 때에는 내가 저걸 받아도 되는 사람은 괜찮은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애길 꺼낼 때에는 저 사람이 안 꺼냈으면 그 애길 안 해줬으면. 그냥 모르는 척 해줬으면. 저 사람 나랑 친한 것도 아닌데 이 애길 왜 하지. 이런 얘기는 나랑 친한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을 때에는 고마울 때도 있고, 어떨 때에는 너무 힘들거나 그럴 때는 적당히 모르는 척 좀 해주기 그럴 때도 있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이 그럴 때에는 반감이 되게 크게 들더라고요. 이걸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어떨 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던 거 같고... 확실히 드러낸다는 게 쉽지 않은 거 같아요.(사례 B)

- 비성인 자녀를 홀로 돌보는 여성 유족의 경우 경험하는 사회적인 고립이나 막막함을 이용해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접근하는 취약성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 시기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 등을 활용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위안이 되거나 가족모임을 연계해주는 등 좋은 점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사별자인 자신에 대해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었다.

인터넷 조심하라고 했던 게 글을 올리면 어떻게 알고 접근을 해요. 쪽지가 오고 그래요. 저도 그때 지금 같았으면 말도 안되는 소리다 하겠지만 그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힘든 시기고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런 거 조심해야하고.(사례 D)

○ 일에 매몰되는 가족들

- 자녀 돌봄의 어려움은 특히 배우자의 죽음 이후 홀로 보육의 책임을 져야하는 한 부모 가정에서 주로 나타난다. 특히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하루 종일 돌봐야 하고, 이 상황이 앞으로도 몇 년은 더 지속되어야 하지만 적당한 조력자를 찾을 수 없고 자신을 돌볼 틈 없이 반복되면서 무기력함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게 된다.

아산병원에서 약물치료만 지금 받고 있어요 상담도 못나가고 약만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전화상담으로 되기 때문에. 심리적

인 치료는 못 받고 있죠. (중략) 문제가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되게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둘째를 위해서 말을 해야 되요. 언어 치료 때문에. 아이들하고 놀아주기 위해서 계속 말을 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사례 D)

- 자녀 돌봄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유가족들은 단시간의 돌봄 서비스나 자녀들의 심리치료, 발달지연 치료 등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으나 심리적인 무기력함이나 물리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를 알아보고 신청할 여력이 없어 더욱 고립될 수 있다. 단 시간이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상황은 유가족의 소진 상황을 지속시키고 심리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가족 모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상담 받는 장소는 어디가 편하신지?) 오시는 것보단 제가 가는 게 좋겠어요. 그런 핑계도 아니면 나갈 일이 없거든요.(중략) (돌봄 서비스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담해서 봐주시는 것까진 아니고, 2~3시간 만나 절만이라도, 3시간 정도만이라도 봐주시면 제가 이제 리프레쉬라도 좀 할 수 있게. 아이들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게 마트 이런 건 같이 가도 되니까 그런데 마트 아니면 키즈 카페 이정도 거든요. 그럼 제가 좀 더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쉽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그런 건 불가능하구요.(사례 D)

- 자녀가 산재로 사망한 경우, 남은 자녀들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지만 부모가 죽은 자녀에 대한 죄책감과 억울함을 풀기 위한 동기로 산재 승인에 매진하면서 돌봄 공백이 크게 발생하기도 한다. 부모가 자녀의 죽음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남은 자녀들과 산재승인 등에 대한 입장 차가 커지면서 가족 관계의 단절이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저희 둘은 붙어가지고 다니니까 이야기는 좀 해요. 그런데 애들하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애들은 아버지 어머니 하고싶은대로 하세요. 특히 바로 밑에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내는 나이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13살 14살 차이가 나니까 큰오빠하고. 그냥 애는 그냥 울었죠 뭐. 한 시간 영영 울고. (중략)다 헤어질 거 같아요. 내 소원이 둘째놈 웃는 거 하나 보는 게 소원인데 작은 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웃으면 밉다니까요. 오빠가 죽었는데 웃는다고. 웃어도 밉고, 안 웃어도

밧고. 이예는 집사람하고도 계속 싸우고 뽄뽄이 다 헤어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걸 엻어버리고 어디 공사 불 지르고 끝내는 게 나을 거 같아요.(사례 F)

- 아직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홀로 자녀를 돌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데, 돌봄과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가족들은 이로 인한 곤란함이나 돌봄의 공백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수 있다. 특히나 돌봄은 일이 과중할 때에 공백이 생기기 쉬운데 물리적으로 자녀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함께 있는 시간 자녀에게 집중하기 어렵거나 돌봄을 위한 일을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가족의 죽음 자체가 큰 충격으로 다가와 유가족(배우자, 부모)이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기도 하는데, 홀로 산재 승인을 위한 일을 도맡아야 하는 상태에 있거나, 유가족을 돌볼 수 있는 조력자가 없으면 정신적 외상이 만성화 되거나 가족관계의 문제로 전이되기도 한다.

언니랑 같이 만나보기도 했고 왜냐하면 언니도 상태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고, 그 기분변화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밥을 먹는다 이런... 눈에 초점이 없이 죽기 위해 무언가를 실행하는 건 아닌데 그냥 사라질 거 같다, 죽을 거 같다 이런 말을 계속 하는 (중략) (심리학 박사님이 언니 옆에)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한다. 나가라, 싫다 해도 거기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당장에 내가 이 자식을 키워줄 수 없다. 본인의 자식을 버리면서까지 이 상황을 도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언니는 그래서 산재관련된 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사례 B)

- 과로사의 경우, 산재 입증이 사고사망에 비하여 어려워 가족들이 사회적 운동이나 언론 인터뷰, 국회 압박 등의 활동을 통해서 산재 인정 가능성을 높이고, 회사와의 합의점을 도출하기도 한다. 이 경우 가족들이 직접 사회 운동에 참여하면서 일상적인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다(사례 F).

내가 아니면 싸워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가야하는데 딱 돌아서면 ‘그럼 난 내일 뭐 먹지’ 이걸 고민하는 순간 갈 수 없다는 거죠. 이걸 하는 동안에는 생계를 책임질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걸 위해 단체를 만들기는 하지만 개인이 나가기에는 이런 지원들은 유

죽급여가 나와도 해결이 안 되죠. 우리가 서울 갈 때마다 들어가면 3,40만원씩 깨지는데 한 달 두세번만 되어도 생활비만큼 들어가니까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법적으로 딱 되어 있다면 유족이 나설 필요는 없는 건데 국가가 안 나서니까 개인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유족보상에 관련된 게 너무 빈약하고 그런 게. 이게 많이 큰 거 같아요.(사례 F)

○ 관계의 변화, 안전한 공간의 상실

- 유가족은 일상이 무너지기 쉽다. 배우자의 죽음을 목격한 가족의 충격은 자신이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처지에 있지만, 동시에 가족들의 돌봄과 간병을 필요로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특히 배우자의 정신적 건강은 자녀들의 돌봄이나 발달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족 전체의 취약성을 높인다.

둘째가 금방 좋아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가 다 소진되면. 그리고 산재가 됐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버텨야 할 것 같아요(중략) 둘째 문제를 2~3년 보고 있거든요. 그때까진 일 할 생각 전혀 없고요. 아이들 또 불안하게 할 순 없어서.(사례 D)

- 유가족의 생존을 위해서는 조력자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대체로 이는 원가족의 도움으로 일부 해소된다.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일부 받거나, 자녀들에 대한 돌봄 지원, 자신에 대한 돌봄, 나아가 산재 신청에 대한 조력을 받는 것은 유가족이 큰 고통에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

저희는 가족들이 여력이 됐으니까 가족들이 같이 나섰어요. 짐을 조금씩 나냈어요. (중략) 애를 도저히 못 키우겠는지 언니는 나는 재 얼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언니가. 애기 우유도 먹여야하는데 우유도 안 먹이고 분유도 안 먹이고 기저귀도.. 저희 아빠가 그 때 언니가 정신이 온전치 못해가지고 까딱하면 입원치료가 필요할 거 같더라고요. 언니 심리치료 해주시는 분이. 하. 정신질환자가 되면 가족들도 더 힘들다고 하는데 아빠가 내가 볼 테니까 가서 산재준비하고 조금 애 안보고 그럼 좀 나아지겠지 그리고 아빠가 한 달 동안 아기를 봤어요. 그 집이 너무 컸거든요. 큰 집에 사람이 없을 때 되게 힘들었을 거 같은데 저희 아빠가 혼자 봤어요.(사례 B)

이걸 왜 본인들이 해야 하나. 그런 얘기를 항상 하세요. 저도 그런 애

기를 항상 해요. 좀 도와주실 분 없어요? 가족들 중에 도와주실 분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가족도 힘들죠. 힘든데 대부분 가족들이 일을 하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직접 하니까 거기서 신체적인 에너지도 소진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소진되는 거 같아요. 사람들이. (사례 B)

-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전방위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신뢰관계가 좁아지면 서, 가족들의 고립과 유가족의 소진이 빠르게 진행된다.

(사고 이후에 주로 유가족분들하고 가족 제외하고도 좀 같이 편하게 얘기하시거나 이러한 분들이 계신가요?) 제 친한친구. 친구들이라고 말도 못해요 정말 이해해주는 친구 한 명 하고 얘기하고.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저랑 같은 경험을 한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가족들보다도. 가족하고도 벽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벽이 느껴질까요?) 우선은 배우자의 마음을 알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부모님 세대도. 그러니까 불쌍하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께심하다는 생각도 있고. 그런 생각 들 수 밖에 없으니까. 독하게 살아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힘들다는 얘기를 해 봤자 도움이 안돼요.(사례 D)

- 일부 유가족(사례 B)은 주변 시선의 무게를 경험하면서도 산재 승인 등을 위한 조력을 받기 위하여 이를 드러내는 전략을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주변 친구들의 지지체계 안에서 도움을 받았고, 대책위를 통하여 노조나 연대자로부터 이러한 지지와 지원을 경험하며 사회 심리적 문제가 해소하는 등 현재의 상황을 이해해줄 수 있는 이들 속에서 사회적 안정감을 형성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나 너 티비에서 봤어. 이거 너 맞아? 맞아요 저 맞아요. 저 그랬고요, 저 이거 빨리 공론화 시켜서 승인되어야 하니까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 같아요. 대놓고. 나는 잘못된 게 없으니까. 노조위원장한테도 그런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냥 인정하고 드러내는 게 더 편하다, 그게 맞는 거다 생각해요. 이게 숨기면 숨길 수록 더 잡음이 생길 거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도 못 도와줄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산재 신청 준비하는 것도 일이 맨날 끝나면 끝나서 나머지 자료를 보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드러내고 하고, 주변 사람들이 뭐 그런 걸 먼저 이야기 꺼내면 맞아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사례 B)

○ 자조모임: 인정의 공간

- 노조나 대책위의 도움을 받은 가족은 산재와 사망처리 전반의 도움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직접 모든 과정을 수행하거나 조력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은 자조모임인 동시에 과로사 유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로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하우를 공유하여 가족들이 증거를 확보하고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간접적 도움을 준다.
- 자조모임의 존재는 큰 증명의 어려움이나 낙인 없이 수용될 수 있는 공동체로서 가족들을 보호하고, 경험에 기반한 노하우를 나누며 과로사 유가족들의 실질적인 지지체계로서 작동했다. 특히 <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의 경우, 적지만 전문가가 함께하며 심리적 문제나 법률적 문제 등 이 시기 경험할 수 있는 까다로운 문제들에 도움을 주어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상담 선생님이 저랑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험을 했다. 그럼 공감이 될텐데. 너무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해주시는 게 아닐까. 그런 의구심이 항상 밑바닥에 있죠. 유가족들하고 얘기하면 많이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도움은 훨씬 된다 혼자 하는 것 보다는. 그런 면에서 가족모임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죠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니까.(사례 D)

(3) 심리적 고통의 만성화

○ 과로사 가족의 짐: 죽음의 목격과 죄책감

- 과로사 유가족의 경우 자살이나 과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기 때문에 일터가 아닌 집 등 개인적 공간에서 사망한 가족을 마주할 수 있다. 특히 가족이 집 안에서 사망했을 때, 익숙한 공간 안에서 가족의 죽음을 떠올리게 되어 일상 속에 심리적 고통이 스미게 된다.

눈앞에서 애가 죽어가는 걸 봤으니까. 그리고 피를 이제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수건을 열장 정도 이상을 애 피를 닦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애 구급차에 실어 갈 때 부모는 구급차를 따라갔지만 뒤에 동생들이 남아있었고 바로 뒤에 남동생은 형이 간 자리 치우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너무 피를 많이 흘리니까 피 냄새가.. 저희가 이제 올라갈 때에도 오후에 애를 장례식장 영안실에 데려다 놓고 장례 절차 치르려고 휴대폰하

고 챙겨오는데 그 때가 4시인가 5시 쯤 된 시간이거든요? 그 때에도 엘레베이터에 피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빠져서. 그러니까 개네는 그걸 다 본 상황이었으니까.(사례 F)

- 과로사 유가족은 스스로가 어떠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죽은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에 시달린다. 사망 이전에 노동자의 과로사 전조증상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힘들다는 말을 허투루 넘겨 그 때 당시에 관두라고 조언하지 못했음에 힘들어 한다. 특히 과로사살의 경우, 부부싸움 등과 같은 관계적 문제가 죽음에 일조했을 거 같다는 마음이 죄책감으로 이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더 쳐지고 죄책감 더 심해지고. 그러면 모든 기운이 다 빠지면서 꿈쩍도 못해요. 정말 휘몰아칠 때 정신없을 때 하는게 . 왜냐면 계속 사망이라는 단어를 봐야돼요.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한 번에 해결하는게 낫겠더라고요(어머니가 잘못된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계속 드시나요)엄청나죠. 저도 잘 한게 없으니까 이렇게 됐겠죠.(사례 D)

(대책위 활동도 하시고 전국순회 활동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시는 이유 혹은 그게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어떤 의미일지.) 일단 가장 큰 건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죠.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가장 크고. (중략) 저는 우리 애한테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해서 그 말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례 F)

○ 산재승인 절차에서 극단적 심리상태에 계속 노출됨

- 산재와 신변정리 과정은 가족의 죽음을 곱씹고 생각하게 하여서 가족들이 죽음에 대한 심리적 충격에서 거리를 둘 수 없게 한다. 특히 산재 신청의 과정은 가족의 죽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 심리적 부담이 크고, 이를 홀로 처리하는 가족들의 경우 심리적 고통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 가족의 죽음에 대한 상처는 산재를 인정받기 위하여 자살 이유를 찾거나 과로사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더욱 심화된다. 가족들의 죄책감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회사에 대한 분노도 커진다.
- 직장 생활을 위하여 노동자의 회사가 있는 무연고지로 이주한 가족의 경우 지역 내에서 사회적 관계가 좁고, 대체로 회사와 관련된 이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게

된다. 가족의 사망 후 지역의 모든 공간이 가족과 회사를 떠올리게 하여 이로 인한 압박을 받지만 사후 신변정리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공간 내에 발이 묶여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된다.

- 산재 승인 이전까지 가족의 주된 감정 상태는 불안과 분노다. 애도의 시간을 가지기 어려운 채 회사와의 다툼에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덧씌워져 시간이 갈수록 심리적 고통이 점차 가중될 수 있다.

○ 심리적 만성화: 벗어날 수 없는 불안의 덩

- 산재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가족들은 산재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기 어렵다. 특히 법률적으로 회사의 산재 불복에 대한 우려를 하게 되거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배상 v 청구 등을 고려하며 긴장 상태가 유지된다.
- 특히 산재의 처리 과정의 소진은 긴장이 풀린 이후 뒤늦게 찾아와 일상이 무너지거나, 산재 기간 동안 미루어둔 치료로 인한 생활이 어려워진다. 산재 기간 미루어둔 치료를 받는 데에 있어서 심리치료는 더욱 후순위가 되는데,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이를 미루거나 아예 거부하도록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 가족들은 심리치료를 받기보다는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누르거나, 의미를 찾기도 한다. 산재가족모임들을 통하여 다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제도 개선 운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 사회적 운동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이후,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실제로는 유가족을 만나지 않는다. 회사의 회피적 태도로 인한 고통이 계속된다. 회사와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심리적 긴장상태가 계속 이어지게 되기도 한다(사례 F).

○ 신체적 만성화: 기능할 수 없는 몸

- 가족들은 극도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신건강 상의 문제가 신체 건강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경험을 한다. 갑작스레 살이 빠지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 트러블, 두통 등 신체적 건강 문제가 초래되지만, 생계와 산재 승인을 위한 일로 정신없이 바쁜 가족들은 자신의 몸을 챙길 여유를 가지기 어렵고,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기보다 회사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 등의 감정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만성화 된다.

- 자녀가 어릴 때, 노동자의 과로사로 한 부모가 된 가정의 경우(사례C), 잦은 자살 충동이나 정신과적 문제를 보이며 스스로를 보살피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다. 이 사례의 경우 홀로 남은 배우자가 자녀 양육의 책임을 질 수 없어 입양에 대한 고려까지도 했으나 배우자의 원가족의 돌봄으로 자녀와 배우자 모두 회복 과정에 들어서게 되었다.
- 자녀가 과로사로 사망한 경우(사례 F) 부모가 자녀 사망 이전에 자녀보다 안정적인 경제적 활동을 해왔지만 자녀의 사망에 대한 충격이나 산재 승인을 위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이후 이전만큼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없어 여러 차례 사고를 낼 뻔 하고, 생계 활동을 그만 두었다. 사망한 노동자의 형제들 또한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취업 등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4) 산재보험으로 해소되지 않는 경제적 문제들

○ 산재 승인 이전까지 별다른 생계유지 방법이 없음

- 산재 신청 및 심사 기간 동안 법률 전문가(주로 노무사)를 섭외하는 데 드는 비용 또한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산재 유가족은 가족들 끼리 이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정보요청 등에서도 유가족들이 직접 하기엔 어려움이 많아 노무사 선임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법률비용은 가족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한다.
- 산재 승인 이전까지 유가족들은 별다른 생계유지 방법이 없다. 특히 자녀가 어린 경우, 돌봄과 산재 신청 절차로 인해 취업을 바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과로사의 경우 다른 산재보다 사망 이후 산재보험 승인까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산재 승인이 되기 전까지 경제적 공백도 길고,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경제적으로 조금 산재 인정 외에, 아무래도 주 소득원이 남편분이셨던거죠?) 네 외벌이셨어요(중략) (지금 소득원은 없죠. 어떻게 생활이 2년동안 가능하신건가요?) 말씀드린대로 보험금. 다 쓸때까지는 그냥. 둘째가 금방 좋아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가 다 소진되면. 그리고 산재가 됐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버텨야 할 것 같아요(사례 D)

- 산재 승인까지의 과정에서 유가족이 직접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많아 생계 활동을 할 수 없거나, 홀로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 때문에 생계 활동을 나갈 수 없는

가족들이 있어 이 시기 경제적 어려움을 가족이 스스로 해소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랐다.

- 한편, 물리적 조건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가족의 죽음과 그 이후 과정에서 외상을 입어 생계 활동을 할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가족의 소득이 절감되거나 아예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가족 구성원 중 다수가 이러한 문제를 겪는 경우 가족 관계의 문제로도 연결된다.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정신이 집중을 못하잖아요. 저희가 하는 일들이 연장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만 정신을 놓치면 사고가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해보려 들어갔다가 애들 아빠가 손가락 날릴 뻔도 하고 무릎 갈아버리고 사고가 나 버리니까 이렇게 될 거 같지 않다 해서 일을 다 놓아버렸죠.(사례 F)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26년을 같이 싸우고 뭐하고 살았으니까 애는 정말 진짜 막 정신이 나가있는 상태.. (중략) 막내는 울기라도 하는데 개는 울지도 않죠. 장례식 장에서도 녀놓고 많이 있었고, 그 죽음이 자기때문이라고. 우리도 똑같이 느꼈지만 개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라고 정말 동공이 풀려있는 상태로 개는 그렇게 보내고 있죠(사례 F)

-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는 부분적으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사망보험금이 가능했고, 대부분 원가족의 경제적 도움을 받거나 모아둔 돈을 사용하며 이 시간을 버텼다. 이 중 유일한 사회보험 내 보장체계인 국민연금의 유족 연금은 가입 기간 10년 미만일 때 기본 연금액의 1/4이고, 20년 이상일 때에도 1/6을 지급하여(국민연금법 제 74조), 소득대체율이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사망 이전 안정적 직장을 가지고 있던 일부 유가족만 수혜받을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가족들은 산재 이후 국민연금을 받지 못했다.

산재 위로금이라는 게 1300일 분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집안 인생이 깨지거든요. 우리집안이 다섯 명인데 다섯 명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아까도 그랬죠. 생활이 안 되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1300일분이면 1억 원을 받고 뭐 사람의 값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국가에서 정신적, 심리적 치료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물어보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딱 장제비하고 위로금 그게 다예요. 국가의무는 다 한 겁니다. 기껏 어렵게 정말 산재 인정 받았는데 그게 다 예요. 1년 연봉

도 안되는 걸 주면서 그걸 다 했다고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사례 F)

- 산재 가족의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은 회사와의 합의에 있어서도 가족들에게 약점으로 작용될 수 있어, 가족들이 원하는 비금전적 요구를 무시하고, 경제적 배상만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회사의 제안을 무시하기 어렵게 한다.

(회사가) 연락이 직접 온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갔죠. 어떤 말을 할지 일단은 만나자고 하는데 가니까 대책위라 하는 건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미루고 먼저 우리하고 피해보상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게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 보상이 끝나고 나면 조항이 분명히 어디에 못 나가는 조항을 넣겠죠? 그럼 대책에 관한 건 물 건너 가는 거죠. 지금도 그 때가 우리 아들 사망한 지 8개월 됐거든요? 처음 만난 게 12월이니까 그 시간도 5,6개월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도 안 나온 답이 이거 하고 다면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책먼저 이야기하라고. 대책을 우리가 수궁할 만한 걸 이야기 하라고 했는데 또 이제 보상 건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대책은 언제 가져올 거냐.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사례 F)

(5) 비성인 가족의 발달지연 및 심리적 문제

- 어린 자녀들의 경우 죽음을 직면하거나 가족의 빈자리를 느끼고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죽음 직후 발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어린 자녀들은 죽음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뒤늦게 찾아오지만 주 양육자가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여 막막함을 느낀다.

제가 이제 1차적으로 아이에게 설명을 했는데 이걸 깨고 너무 노골적으로 아이를 파헤치려고 할 까봐 심리상담을 안 받았어요. 무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부분을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다들 그러세요. *(자녀들에게)* 네네. 정신파트 지원을 받으려면 성인도 심리부검을 해야 한데요. 그걸 하다가 뛰쳐나온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은 정확하게 시체 해부하듯이 파헤쳐서 상처를 드러내서 치료를 한다 이런 건데, 그게 막 말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숨기고 싶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막 파헤치니까 너무 괴로워서 뛰쳐나온다고. 그거를 아이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어린아이고 못한다, 해서 저는 놀이

치료만 하겠다 했죠.(사례 D)

애한테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저희한테는 차라리 애기가 어리기 때문에 나중에 말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을거고 사춘기 자녀나 지금 초등학교 간 애들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말을 안하는 애들도 생기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애한테도 엄청난 심리적 트라우마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 걸 듣기만 하다가 우리 차례가 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자를 보니까..(사례 B)

애기가 ‘사람들이 자기 아빠가 없다는 걸 친구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서 엉엉 울었나 봐요 아까 제가 나가고. (중략) 그런데 이제 벌써 다 이런 걸 이야기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좀 빠르네요 요즘 애들은. 아빠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애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문제로 다가왔나 봐요.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미안하네.(사례 B)

- 비성인 자녀들이 죽음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에서 산재, 과로사, 자살 등의 이슈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큰 상처로 다가온다. 또한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주변인들의 평가 혹은 이질감이 이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들은 주변의 부정적 시선으로부터 가족의 죽음을 잘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낀다.

또 산재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터뷰하고 하면서 기사 나가고 하면 거기 말에 달린 댓글 같은 거 보고 하면 악플 같은 거 달리고 하니까는 저희야 뭐 보고 싶지가 않으니까 안 보는데, 애는 아직 이제 중학교 3학년 쯤 되니까 어떻게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엄청 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 오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을 써놨냐는 식으로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오빠에 대해서 말을 더 못하죠.(사례 F)

우리는 평소에 아빠가 없는 걸 아빠가 일하다 죽었고, 저기 하늘나라에 있고 사진 같은 거 보여주면서 얘기하다가 학교에 가니까. 유치원에 가니까 그게 좀 커지나보네요.(사례 B)

- 유일한 자녀 돌봄의 책임자로 생활하는 유가족의 경우에는 자신의 심리적 건강 문제가 가족의 문제로 전이되기도 한다. 언어발달 단계 상 주 양육자와의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누군가와 대화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지친 상

태에 놓인다.

문제가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되게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둘째를 위해서 말을 해야되요. 언어 치료 때문에. 아이들하고 놀아주기 위해서 계속 말을 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둘째 로봇 조립해주고 이런 건 얼마든지 하겠어요. 인형놀이 역할놀이는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죠.(사례 D)

- 성인 가족의 경우 가족력에 대한 걱정이나 사회적 시선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공공에서 진행되는 심리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산재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는 산재나 노동 문제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가를 통한 적절한 발달지원 및 심리치료,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등의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또한 단순 돌봄이라도 주 양육자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 욕구가 있다.

3) 중증 장애 가족

(1) 산재 사고가 가져오는 가족의 변화

○ 산재사고 직후 가족의 충격

- 장애 가족은 사고 발생 후 병원에 실려 온 가족을 만나면서 산재 사고를 인지하게 된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와 응급 수술이 반복되면서 생사의 기로에 선 가족을 마주하는 것은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준다. 사고 당시에는 장애로서 인식하기보다는 가족이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공포로서 인식된다.

이미 병원에 간 상태고 이 사람은 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심정지가 두 번이나 왔어요. 가자마자 심정지가 두 번이나 와서 30분 동안 심폐 소생 CPR을 하고 그리고 간신히 깨어났고 (중략) 의사들도 만약을 대비해서 오늘을 못 넘기실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단정을 짓더라고요. 오늘을 못 넘기시니까 데리고 오라고... 딸래미 데리고 왔고 2차로 호흡곤란 와서 피범벅 된 것도 딸래미 다 봤고.(사례 A)

응급실에 들어가는데 짐승소리가 났어요. 짐승이 울부짖더라고요. 그런데 커튼이 이렇게 쳐져있는데 그 밑으로 빨간 피가 이렇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다리들이 이렇게 막 보이고. (중략) 소독약이랑 피가 막 쏟아

아저 내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쓰라려. 그러니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사례 C)

- 중증장애를 유발하는 사고 초반 급박한 치료 과정은 응급 수술과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를 대신하여 가족들이 치료 방법이나 수술 등에 대하여 선택하고, 간병에 집중하게 된다. 가족들은 당장 사고 이후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끼면서도 집에 있는 자녀나 경제적 문제도 고민해야 하지만, 다급한 상황 속에서 간병을 중심으로 생활이 구성될 수밖에 없다.

막말로 돈 문제도 신경 써야 하고, 환자의 뻘혀있는 가족들도 신경써야하고 나머지 잡일들도 신경써야하니까. (중략) 휴업급여가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요, 다음 달부터 어떻게 살지 그 걱정부터 했어요. 다음 달부터 어떻게 살지. 병원비는 저 사람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당장 쓸 돈도 없잖아. 그리고 여기서 안 살아도 관리비도 내야하고 재도 여기다 맡겨놔도 사줘야 하는 건 사줘야 하는데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 옆에 두고...(사례 C)

제가 한 3년 넘게 여기서 여기로 와서 산재병원까지 와서 치료한 3년 넘게 와 있으면서 저는 한 번도 간병인을 써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만큼 위급했고, 대신 간병인을 쓸 수도 없었고 이 사람이 저를 원하기도 했지만 제가 제 마음에... (중략) 제가 딸래미도 중 1이면 한창 엄마 손 갈 때인데 사춘기이고 근데 집에 혼자 있거든요. (양쪽으로 마음이 많이 쓰이셨겠어요) 아휴, 그건 말도 못하죠. (사례 A)

- 사고 초반의 생활은 대체로 주간병인인 보호자 또한 병원에서의 생활을 감내해야 하는데, 3차병원에서 큰 수술이 반복되는 최소 몇 개월 동안 이 생활이 이어진다. 병원은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으로서 이 안에서 가족들의 심리적인 중압감은 돌볼 틈 없이 방치된다. 병원생활은 생활 자체가 임시적이고,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된다.

**대학병원에서는 기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는 산재에 대한 이해나 그런 게 전혀 없죠?) 이해도도 없고. 환자, 간호사 나는 보호자 그렇게 있고 거기서는 그냥.. 근데 거기서 더 바라지는 않지만 음. 이게 그런 건 한번쯤 필요한 거 같아요. 그걸 보호자들 상담은 필요한 거 같기는 해요.(사례 C)

- 자녀들의 경우에도 사고 직후 병원에서 부모의 부상을 목격하거나 집에 홀로 남겨지면서 가족에게 생긴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 돌봄의 부재는 자녀들 또한 심리적 부담을 가지게 하여 이로 인한 신체적 통증이 유발되기도 한다.

재가 그 때에는 너무 어렸잖아요. 너무 어리고 이상한 거지. 한쪽다리가 짧고 다리가 없는 게. 아빠 옆에를 안 오더라고요. (중략) 재가 잘 버텨주더니 12월 27일날 병원으로 왔어요. 장염이 와서 설사를... 그래서 12월 27일에 아빠는 7층에, 재는 4층에 같이 입원해 있었죠. 크게 이렇게 저렇다 말이 없는 애인데 엄마아빠가 떨어져 있는 걸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그걸 참고 있다가 그렇게 터진 거 같아요.(사례 C)

○ 장애 당사자 중심으로의 관계 변화

-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고에 대한 정신적 외상은 당사자에게 우울감을 넘어서 성격의 변화로 이어진다. 이 상황에서 예전과 같이 가족관계 외의 다양한 생활을 통하여 이를 해소할 수 없는 조건은 그러한 스트레스와 압박이 가족들에게 전이되도록 하는 구조를 형성한다.

정말 많이 자기중심적이 돼요. 되게 유희던 사람이거든요. 좋은 게 좋은. 아님 말고. 전에는 제가 되게 짜증스러운 사람이고, 자기는 짜증을 받아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랬다가는 큰일이 나요. (중략) 처음부터 확 틀기 보다는 서서히 변해가더라고요. 서서히 변해서 그게 극에 딱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작년에. 작년? 재작년 말, 작년 여름쯤.. 그렇게까지. 그래서 완전 극에까지 치달을 때가 있더라고요.(사례 C)

자기도 몸이 불편하다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빨리 해야 한다거나 이런 순간에 짜증 섞인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해하면서도 그게 서운할 때가 있죠. 그런 부분.(중략) 내가 사고 나고 싶어서 사고 났나. 그건 아닌데 당사자들이 들으면 그게 서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본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도 이해하고 가족도 이해하면 서운할 게 없다는 거예요.(사례 A)

- 산재 가족들도 사고의 충격 외에도 간병, 회사와의 다툼, 변화된 생활과 일의 중첩 등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한다. 또한 끝이 보이지 않는 정신적 신체적 간병이 지속되는 상황은 가족들에게 소진을 가져온다. 이러한 가족들의 소진은 초기

단계에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장애 가족의 주 보호를 맡는 가족구성원의 관계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너 하고는 못 살겠다 그랬어요.(가족 관계 문제는 어디 도움 요청하기 어렵잖아요) 못하죠 (어떻게 나아지셨어요?) 그냥 참았어요. 제가 좀 잘 참아요. 잘 견뎌요. 그러니까... 잘 견디고 있었어요. 견디다가 저도 한계치에 다 달아서 어느 날 제가 애들이랑 다 사라지고 없을 수 있다고. 그만하라고, 그 말만 했어요.(사례 C)

모든 산재환자 보호자들이 우울증은 100%있어요. 저는 100% 있다고 장담해요. 개그 프로그램 보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이해 안 가지죠? 이해 안 가지잖아.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하다가도 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게 우울한 게 나는 그걸 표현하지 않도록 노력하지만 주위 사람들도 몰라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와요. 그래도 환자 앞에선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환자 보호자들은 다 있어.(사례 A)

- 산재 사고로 인한 명백한 피해자인 가족을 돌보는 이들은 피해자 당사자에게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기 어렵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기 어렵다. 가족들은 장애를 입은 노동자 중심의 생활로 삶이 변화하는 것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가족들의 고립감이 심화되기도 한다.

혼자 제가 간병인 하루도 안 쓰고... 했었던 그 이유기도 해요. (원래 다니시던 직장은 남편분이 사고 난 직후에 바로 못하게 된 거예요?) 당연하죠. 3년 동안 제 생활이 없었던 거죠. 3년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중략) 제가 직장을 다닐 수 있지만, 그럼 남편이 케어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사례 A)

그러니까 생각은 젊는데, 생각은 아직 너무 왕성한데 내가 부족한 거야. 그리고 재네들만큼 못 따라가는 거지 신체적으로 운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심 위축되나 봐요.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전에 만약 그걸 제 생각인데,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덜 했을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사회인 야구도 하러 다니고 하던 사람이고 그래서 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취업하셔서 좀 나아 지셨겠어요. 집에만 계셨으면) 어휴 같이 못 있어요. 그런 활동을 전혀 못하니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해요(사례 C)

- 가족들은 대화방법이나 서로에 대한 이해, 환기 등을 경험하게 했던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가족프로그램에 큰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다. 단기적으로라도 가족들의 피로감을 낮추고 회복될 수 있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프로그램 취지가 가족을 이해하는. 간병하는 가족들 환자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가족들은 환자를 이해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쵸? 고마운 표현도 표현을 안 하잖아요. 표현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나 아닌 내 가족 아닌 내 신랑 환자 아닌 다른 분이 나를 위로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정말. 거기에다 언제 리마인드 웨딩 할 일이 있겠어요. 언감생심이죠(사례 A)

○ 재난과 같은 가족변화

- 장애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 또한 산재 이전과는 다른 생존의 방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장애가 자신과 가족의 일이라 여긴 적 없던 가족들이 이러한 삶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하기는 쉽지 않았다. 가족들은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와 산재에 관한 제도와 서비스들, 간병의 기술 등을 사고 이후 습득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산재 병원이든 산재 쪽에 계신 분들이 사고가 나신 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라거나 거기서 부탁을 하면 정말 상세하게 친절하게 그 모든 신청한 걸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있겠지만 산재병원이 있다는 것도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저는 장애인 쪽의 일을 해봐서 다행히... 이런 걸 알아서 처리를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바로 코 앞에 있으면서도 산재병원이 있는지도 모르거든요.(사례 A)

저 보다 더 나이가 있으셔서 예전에 다치셨던 분들은 휠체어 되게 비싸게 주고 쓰세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아는 분한테? 그렇게 살 필요 없는데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휠체어 고치는 것도 되게 비싸게 주고 고치세요. 그거 알려야 해요. 그분도 휠체어를 그 분도 옛날에 산재로 다치셔서 그렇게 되신 분인데 모르니까 전동휠체어 고치는데 몇 십 만원씩 내고 고치신대요.(사례 C)

- 특히 가족이 처한 변화는 재난 상황에 가까워, 가족 모두에게 큰 변화와 문제를 안

겨주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안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에 벅차게 느껴진다. 이럴 때일수록 가족관계에 지속적인 대화와 이해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재난 상황에 머무는 가족들은 자신의 고통에 빠지기 쉽다.

다른 환자들은 자기가 힘들고 입원하시다 보니 인정을 안 하고 생활하시다보니까 그 모든 스트레스가 보호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에 청소 여사님이 제 손을 잡고 ‘고마워, 고마워’ 해서 뭐가 고맙냐고 하니까 있어줘서 고맙다고. 왜 대부분의 남자들이 환자시면 여자들이 떠난다고 해요. 젊은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요. 그 이유가 환자들이 빨리 인정을 안 하고 그 스트레스를 보호자한테 다..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긴 하지만 그건 정말 힘들 거든요.(사례 A)

- 가족들은 치료와 재활에 집중하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끊임없이 장애 가족의 삶을 보조하기 위한 정보를 찾고, 다음 생활을 대비해야 하지만, 산재 직후 생겨난 간병의 부담이나 다른 일들이나 심리적 부담과 중첩되면서 이를 대비하기에 쉽지 않다. 가족들이 정보를 찾고, 신청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며 대체로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찾는다.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모르니까. 그나마 저는 검색도 하고 찾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가지만, 조금 더 나이가 있고 그런 분들은 못 찾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사례 C)

(2) 산재신청 과정이 주는 가족들의 심리적 어려움

○ 뒤늦은 산재보상에 대한 고민

- 산재 초기에는 생존과 간병의 문제에 직면한 가족들이 회사에서 산재보험 신청을 직접 진행해줄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나 회사에서 산재보험 신청 시, 서류 작성 등의 과정에서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고지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차후 이로 인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된다.

산재신청서가 있잖아요. 승인을 받으려면. 그걸 어느 날 가져와서 제가 이걸 이렇게 작성을 해왔는데 한 번 보시고 쓰시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건 엄연한 오류... 기계 오작동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기계 ‘미 조작’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사례 A)

산재 신청은 회사에서 해줬고요.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중략) (그럼 산재 처리되시고 나서 회사에서는 보상이 나오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회사에서 산재 보험 받을 수 있게만) 그것만 딱 도와주셨죠. (사례 C)

저희 여기 병원에서도 보면 내가 환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까 보호자들 뭐 정신없으니까 그냥 회사에서 해달라는 대로 사인을 해주면 되는 건가보다 하고 그냥 사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익 당하는 게 너무 많아요.(사례 A)

- 장해 가족들의 경우 산재 이후 회사와의 합의를 진행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치르게 된다. 가족들은 장애로 인한 비용부담과 회사에 대한 분노와 서운함을 소송의 동인으로 꼽았다. 가족은 재활병원 등에서 다른 산재장해 가족들과 이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법률 과정을 진행하나, 가족들이 회사를 이기기는 쉽지 않다.
- 소송이 쉽지 않아 초기에 포기하는 가족들도 많고, 초기 산재 대응 절차로 인하여 아예 합의나 배상 등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해진 가족들도 있다. 특히 청소년 가족이나 노인 가족이 대리하여 사고에 관한 정황을 담은 문서에 사인할 경우 이것이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

(소송을 결심한 이유) 당연히 제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애 아빠가 설치한 걸 가지고 자기가 설치했다고 이 사람이 설치한 거라고 그 부분을 회사에서는 주장하는 거야. (중략) 그동안에 앞으로 살아갈 간병비라든가 위로금이라든가 어 휠체어라든가 이 사람이 의족을 해야 하니까 의족비라든가 이걸 다 산재 수가를 쳐서 그게 되거든요. 보상이 되는 거거든요.(사례 A)

(산재 사고의) 가해자가 따로 있었으니까. 저는 그것도 되게 저희는 그나마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다치셨는데 산재인데 회사 쪽하고 싸워서 회사 쪽에서도 안 주려고 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가해자가 정해져 있고 보상도 받고 그랬으니까 저희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사례 C)

막 한 5천 만원 가지고 싸우시더라고요. 다리 하나 가지고 5천, 6천

어떤 분은 3천 가지고 싸우면 속에서 열나더라고요. 저희는 그 때 몇 억 가지고 싸울 때였거든요. 저희 한 3억 정도 받았거든요. 어떻게 다리 하나인데 몇 천 가지고 되냐 말이 안 된다고. (사례 C)

○ 망망대해를 헤엄치는 가족들

- 산재 초기, 산재보험 신청에 관하여 이를 잘 알지 못하는 가족들은 당장의 생활의 곤란함에 대한 우려를 가지게 된다. 이후 회사의 신청으로 산재 승인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의 방문과 팜플렛 제공으로 산재수급 절차를 알게 되지만 간병하면서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곤란함을 경험한다.

네 아무도, 한 사람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안 하면. 그러니까 그게 대신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이 있으신 분들은 하기 어려울 거 같아요. (보통은 그걸 다 보호자들이 하세요?) 네. 다 본인이 해야 하는 거예요. 공인인증서 다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나는 내가 공인인증서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했죠(사례 C)

- 산재 이후 가족들은 망망대해에 떠밀린 막막함을 경험한다. 삶의 변화의 폭이 커서 대비하지 못한 삶을 살아야 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이어가기 어렵다. 이 때에 가족들이 이를 책임지고, 꾸려 나가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니까 어떤 기분이나면 내가 헤쳐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도 처음이고 환자도 처음이고 그래서 망망대해에 배 한 채 떨어뜨려놓고 네가 알아서 가라고 이 기분이에요. 헤엄쳐서 가든 노를 저어서 가든 네가 알아서 가봐. 이거. 그 막막함이란 건 정말...(사례 A)

- 근로복지공단에서 알려주는 정보도 제한적이다. 실질적으로 가족들에게 중요한 재활시설 및 보조기구 등에 대한 정보 등이 빠져 있어서 이를 가족이 자력적으로 알아내야 한다. 산재보험을 수급하고, 그 외의 산재 장애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지만, 가족들이 이를 직접 찾아서 신청하고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가족에게 관련 절차와 권익옹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 가족들은 당장에 재활병원이나 의료보조기구, 재활, 간병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어렵다. 응급의료 수술 등이 끝난 이후 재활병원을 옮겨가는 데에 있어서 좋은

재활병원을 찾아 옮겨가는 데에서부터 난항이 있다.

그 때 재활을 **대학병원에서 하느냐 아니면 어디로 가느냐 고민을 하면서, 어디가 재활이 제일 좋은가가 걱정이었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검색을 좀 많이 해봤죠. 그래서 산재 병원을 찾았어요. 산재가 특화된 병원이 있을까. 그리고 집에서 가까운... 사실은 **대학병원이 집에서 제일 가까워요. 그런데 거기는 산재로 특화되어있는 병원은 아니고 여기서 산재로 특화되어 있고 그나마 가까운 곳이 **병원이었어요.(사례 C)

저는 장애인 쪽의 일을 해봐서 다행히... 이런 걸 알아서 처리를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바로 코 앞에 있으면서도 산재병원이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중략) 저도 사회복지 공부를 했는데, 2급이긴 하지만. 그냥 그러면서 많이 이런 것도 했고 하니까 많이 도움이 돼요. 제 신랑을 케어할 줄이야. 제가. (그러니까요. 공부해둔 게 쓸모 있으시겠네요) 맞아요. 많이 도움이 돼요.(사례 A)

-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역할이 아니더라도, 중간체계로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주거나 정보를 전달해준다. 재활 기간이 끝나더라도 직업재활 훈련 참여나 보조기구 구입 및 수리를 위하여 병원에 방문하는 등 관계가 유지되면서 가족들에게 중요한 지지체계가 되어준다.
- 산재 사고의 재활에 있어서 병원의 전문성이나 서비스가 큰 영향을 준다. 산재병원에서 생활했던 사례 모두 이에 만족감을 느끼며, 근로복지공단 재활병원의 전문가들은 환자와 가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치료 외적인 부분의 도움을 주며 지지체계로서의 역할을 한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선생님들이 이사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게 지하주차장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한다. 비가 오는데 휠체어 끌고 다 가야하고 물건도 바로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거가 일반인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일거든요. 계단 한 두 칸 올라가면 되고. 근데 살아보니까 제가 집 얻을 때에도 다행히 엘리베이터 있는 집을 제가 구해서 바로 엘리베이터 있어서.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당시에는 피부로 못 느꼈어요. 그런데 하니까 너무 피부로 와 닿는 거예요(사례 A)

기술적인 도움을 주시면 그만큼 이 사람 몸이 편해지니까. 제일 고맙죠. (중략) 불편하면 어떻게 불편한지 아세요. ‘나 이래요, 왜 그런지 모

르겠어요'하면 사진으로만 찍어 보내면 아세요. 그런 게 너무 고마워요.
(사례 C)

○ 회사와의 합의 혹은 손해배상 소송의 고통

- 산재보험의 연금을 받더라도 가족들은 회사와의 합의 혹은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산재로 인하여 삶이 완전 바뀌어버린 가족들은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금액을 포함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 또한 경제적 영역에서 산재보험의 혜택으로 치료비와 연금을 받아도 치료비와 장애 보조기구의 수가는 보장 수준을 넘어선다. 공식적인 보조기구 외에도 이를 일상적으로 착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드는 생활용품비용과 간병비용 등 장애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은 가족들이 소송 혹은 합의를 하고자 하는 경제적 동인이 된다.

산재에서는 산재 환자는 앞으로 그걸 그런 거를 산재연금이 나오잖아요. 연금과 별도로 회사 측에 위로금이라든가 이런 걸 손해배상을 하죠. (중략) 의족이 애 아빠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에요. 양쪽 대퇴 위란 말이에요. 쪽당 천만원 씩이에요. 의족이 최하. 그러면 산재 수가로는 227만원 한 쪽 당. 그럼 나머지 비용을 제가 우리가 대신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저희가 청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산재 수가가 너무 터무니 없어요. 심지어 한 쪽은 차라리 297만원인가 그래요. 근데 양쪽이면 더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쪽당 227만원만 나오는 거예요. 양쪽 다라서 더 들어간다 이거지.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사례 A)

- 그러나 보험 외 보상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가족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더욱 크게 입히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회사와 다투는 중에도 증언을 피하는 동료들과 어떻게든 보상을 하지 않으려 산재의 노동자 책임을 강조하는 회사로부터 드는 배신감과 억울함은 커지고, 이를 진행하기 위한 변호사 수임료 등이 가족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 특히 손해배상 싸움은 몇 해에 걸쳐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그 결과가 항상 가족에게 유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족들의 상처만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산재 가족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더라도 회사가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거나, 배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을 경험한다.

산재환자들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그런 와중에 겪는 고통도 만

만치 않지만 산재 이후 치료과정에서 겪는 소송이라든가 앞으로 회사하고 싸우든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가해자하고 싸우든 하는 고통은 너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을 다시 꺼내야 하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중략) 녹취한 거 거기 가서 받고.. 증인도 채택해야하는데 증인 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안 해주려 하죠. 퇴사한 직원들 간신히 해서 증인도 했는데 하루 전에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울기도 엄청 울었어요. 그 억울함은 말도 못해요. (사례 A)

막막한 게 뭐냐면 회사 같은 직원에서도 부하관계 부하직원관계 친구들도 현직을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 편만 들 수도 없고 회사 편만 들 수도 없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친했던 직원이라 할 지라도 내가 그런 부탁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와주는 척 하다가도 못하게 돼요. 부담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나 빠져가 아니라. (중략) 사실은. 진짜 소송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죠 (몸이 힘든 게 오히려 낫게 느껴지신...) 네.. (사례 A)

(3) 가족 역할의 과중

○ 전업적 간병이 필요한 초기 치료 기간

- 산재 사고로 인한 중증 장애 발생 시 사고 직후 응급실로 옮겨진 이후 당사자는 지속적인 치료와 수술을 반복하며 병원 내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오르내린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는 거의 한시도 떨어질 수 없이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중환자실에서 꽤 오래 있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치료 중에 또 지혈이 안 되어서 또 호흡곤란이 와서 심정지 왔고 그래서 암튼 2인실 중환자실에서도 한참동안 있었다가 2인실에 와서도 몇 달 동안 있었죠. (중략) 저는 제가 한 3년 넘게 여기서 여기로 와서 산재병원까지 와서 치료한 3년 넘게 와 있으면서 저는 한 번도 간병인을 써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만큼 위급했고, 대신 간병인을 쓸 수도 없었고 이 사람이 저를 원하기도 했지만 제가 제 마음에...(사례 A)

10월 달에 다쳐서 그 다음해 2월 달에 **병원(재활병원)으로 넘어갔어요. (어머니는 **대학병원에 계실 때부터 병원 생활 같이 하셨던 거예요?) **대학병원에서만 같이 있었어요. (중략) 애기 때문에 잠깐씩 왔다가 싶었거든요. 애기 꺼 뭐 챙겨야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뭐 해 달래.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못 찾는 거야. 그런데 그걸 아무리 설명해도

못 찾는 거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되게 갑갑한 거예요. (사례 C)

- 주 간병인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간병을 홀로 맡는 배우자는 ‘남편의 간병은 아내의 몫’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통념의 내면화로 인하여 이를 도맡기도 하지만, 여러 조건 상 다른 간병인을 두기 어려워 자신이 이를 맡게 된다.
- 간병 서비스를 긴급, 단기 서비스로 이용하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이를 보조해주는 서비스를 만나지 못해서 간병을 홀로 도맡게 된다. 원가족 중 일부 간병 시간을 대신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이 간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잠깐씩은 간병인 이모들이 안 해줘요. 쓰면 12시간 내지 24시간 있으신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는 너무 비싸니까. 그 때는 12시간에 6만원이었어요. 24시간에 10만원인가 그랬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중략) 솔직히 밤 같은 경우에 애기 아빠 같은 경우에는 간병할 게 없긴 했어요. 주사 맞고 자버리니까 그런 것도 서비스가 됐으면 써봤을 수도 있어요. 9시쯤 와서 하고 내가 가서 한 9시쯤 가고. 그렇게 간병인 이모 쓰기에는 크게 부담이니까. 그 때는 그랬어요.(사례 C)

○ 일의 중첩과 돌봄 공백

- 치료 시기부터 가족은 자녀양육 부분에 대한 돌봄 공백을 경험한다. 장애 가족의 치료와 재활은 돌봄을 책임지던 주 양육자의 전업적 간병을 필요로 하고, 자연스럽게 양육은 다른 가족이나 주변 지인에게 맡겨지거나 공백 상태로 방치된다.

제가 딸래미도 중 1이면 한창 엄마 손 갈 때인데 사춘기이고 근데 집에 혼자 있거든요. 그래서 이모집이나 아니면 교회 집사님 집에 가 있어라 그러니까 사춘기 때기도 하고... 지가 차라리 강아지하고 혼자있겠다고 해서 그 친구도 계속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철이 빨리 들었죠(사례 A)

- 돌봄의 공백은 자녀(혹은 비성인기 형제)들도 산재로 인한 큰 변화를 느끼게 되는데 이 시기 충분한 돌봄과 보살핌 없이 이를 방치시켜 자녀들의 심리적 어려움이나 발달 지연 등의 문제로 발현되기도 한다. 기존에 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던 가족은 이 과정에서 죄책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

제가 저도 모르게 저희들 다 퇴원해서 일상생활 하고 있더라고요. 저

도 모르게 보상심리로 더 해주려 하고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딸 입장에서 그게 보였나봐.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딸래미가. 엄마, 엄마가 그동안 나한테 못해줘서 해주려 하는 거 아는데 엄마 그렇게 안 해줘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사례 A)

제가 말이 없어요. 크게 이렇게 저렇다 말이 없는 애인데 엄마아빠가 떨어져 있는 걸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그걸 참고 있다가 그렇게 터진 거 같아요. 그렇게 터졌는지 그냥 그렇게 와서 한 이틀 밤 같이 있다 가더라고요. (그럼 병원에 처음 자녀분이랑 같이 가셨다고 하셨는데 그 때 상황을 자녀분이 다 보게 된) 봤죠 다. 그게 제일 미안한..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사례 C)

- 이러한 일의 중첩으로 인한 돌봄 공백은 간병과 돌봄을 도맡고 있는 간병인의 소진을 유발한다. 병원에서는 산재 환자에 대한 간병, 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돌봄을 맡은 가족구성원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빠른 소진을 경험한다. 특히 가족에 대한 정신적 돌봄은 스트레스 해소나 자신에 대한 돌봄 없이 이 상황을 견뎌야 하는 배우자 혼자 견디기 어려운 요소 중 하나로, 배우자의 정신건강이나 심리치료 등이 필요하다.

○ 가족에게 떠밀리는 장애의 부담

- 가족들은 간병뿐만 아니라 재활에서도 함께 재활에 참여하거나, 심리적인 간병을 담당하며 산재 당사자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재 이후 가족들은 당사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된다.

저희가 맨날(주말마다) 저희가 나가면 ‘너네는 맨날 어딜 그렇게 놀러 가니’ 그러는데 놀러갔다 올게요 하면서 토요일이면 나와서 현대 아울렛 있어요. 거기서 3,4시간씩 걷고 그 때는 주변에 아울렛은 다 다녔어요.(중략) 처음에는 답답하니 그냥 나온 거죠. 답답하니 그냥 나왔는데 몇 번 나와서 걷다보니 길이 이상한 거예요. ‘나 왜 거기서는 잘 걷는데 여기서는 이러지?’ ‘그러게. 이상해 당신 왜 그러지.’ ‘이게 기울어진 거 같은데. 야 이거 기울어진 거 같지 않아?’ ‘몰라?’ ‘이상하지 않아?’ ‘몰라.’ 그러면서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중략) (그럼 7-8개월 병원생활 하시는 동안 계속 그렇게) 네 거의 맨날 그렇게 다녔어요. 미쳐죽을 뻔했어요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죽을 뻔했어요..(사례 C)

- 장애나 산재 장애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의 정보접근성이 높지 않아 이를 찾아보고, 결정하는 몫 또한 가족의 몫으로 할당된다. 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간병 정보를 찾고, 치료 이후에 갈 재활병원과 이용 가능한 보조기구 등을 알아 봐야 한다. 응급수술을 받은 병원에서의 최대 입원 기간과 재활 병원에서의 최대 입원 기간이 산재 발생 후 2년을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자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을 경험한다.

그래서 제가 올면서 선생님 제발 부탁이라고 대학병원에서도 어느 기간 되면 나가야 하거든요. 교수님이 그래도 많이 봐주셔가지고 당신이 징계 먹으면서까지 봐주셔가지고 조금 오래 있었던 거거든요. (중략) (여기서 퇴원하실 때에는 여기서도 기간이 다 차서 나가신 거예요?) 치료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산재환자들은. (사례 A)

- 장애 이후 생활 가능한 곳으로의 이사와 리모델링 또한 가족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가족들에게 막막함을 준다. 따라서 가족들은 병원 생활을 하면서 지역 생활을 위한 준비를 한다. 장애접근성이 보장되고, 생활공간으로서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꾸며야 하기 때문에 드는 많은 품을 가족들이 직접 감당할 수밖에 없다.

왜 옛날 아파트를 굳이 몇 천씩 들여서 터냐고. 돈 쓸일이 없다고 같이 사는 사람들도 모르고, 아니 자기 자식인데도 모르고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돈이면 보태서 새 아파트로 가라고 하셨어요. 좀 작은 사이즈로 가더라도 30평대에. 이게 딱 40평 대거든요. 32평 새 아파트면 되게 작아요. 애기 아빠가 돌아다닐 틈이 없어요. (휠체어를) 틀어야 하나. (중략) 혼자 밀고 다니기가 본인이 편해요. 일반형은 혼자 못 밀어요. 일반형은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일반형인 거예요. 그 집안에서 타기가 지가 편해요. 그래서 활동형인 거예요. 혼자 밀고 다니라고. (사례 C)

근데 다리가 그러니까 차를 못 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퇴원하기 전에 이 사람이 손으로 운전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 사람이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차로 운전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쵸?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아. 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니까. 그리고 집도 선생님들이 치료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집을 빌라에 살다가 아파트로 옮겨

야 하는데 왜냐하면 휠체어가 다녀야 하니까. 그런데 계단 오르내리는 걸 못하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사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게 지하주차장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한다. 비가 오는데 휠체어 끌고 다 가야하고 물건도 바로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거(사례 A)

- 가족들은 장애 가족의 치료에 대한 부수적 업무, 보조기구와 생필품을 구입 및 관리하는 일에 애를 쓰게 된다. 장애보조기구를 일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흔히 보조기구라고 이야기되는 물품 외의 물품을 구매하고 보조기구가 고장 날 시 이를 수리하는 등의 전반적 관리의 일을 가족들이 도맡아서 하게 된다.

약 없으면 못 자서 지금도 약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자기야 나 약 떨어졌어’ 하면, 지금도 회사를 가야하니까 그럼 제가 알았어 하고 약 타러 가야하거든요? (중략) 그리고 의족을 신으면 그런 것도 있어요. 맨살에 저기 플라스틱 씌워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실리콘을 씌워요. 한 여름에 그 실리콘을 하루종일 차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땀이 차잖아요. 그럼 땀 차지 말라고 테오드란트 뿌리죠. 그런 걸 뿌리는 게 있어요. 그게 수입이에요 다. 근 200ml 되는 게 만 이천 원 그래요. 나와서 사면 3만원, 2만 8천원 그래요. 그런 거에 비해서 되게 싼 거잖아요. 그럼 제가 한 번씩 사러 가면 2병씩 사와요. 애기 아빠 꺼를. 떨어질 거 같으면 쟁여놓고 사고.(사례 C)

절단환자들은 어느 의족이 좋더라 어떤 거가 좋더라, 어떤 스티브가 좋더라 그런 걸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모임이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모든 좋은 정보들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산재환자들도 자꾸 물어보고 산재환자끼리 좋은 혜택을 받았으면 그걸 같이 누리게 되잖아요. 몰라서 못 받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례 A)

우리는 다 가장들이 다쳤으니까. 가장들이 다쳐서 가장들이 움직여야 하는 걸 우리가 움직여야 하니까 그래야 하니까 어느 집이든 주축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축을 빠져야 하니까 우리가 움직여야 우리가 움직여서 그걸 메워야 하니까 어디 가면 싸대 언니, 어디가 낫대. 그리고 우선 인천병원이니까 야, 거기 가면 인천병원 옆에 가면 더 싸. 여기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 훨씬 괜찮아. 아 그래? 언니한테 되게 많은 정보를 얻었죠. 그렇게 받아가지고 막.. 혜택보고.. 그런 식으로 정보를 많이 받았죠.(사례 C)

- 또한 장애가족에 대한 생활 보조와 지원이 가족의 몫이 되기 때문에 간병인들이 쉴 틈을 가질 수 없어 소진된다. 이 때에 장애접근성이 높은 병원의 구조와 공간의 구성은 가족들이 24시간 간병하지 않아도 환자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족들에게 도움이 된다.

개인생활은 완전 마비면 24시간 간병을 해야 하지만, 다행히 절단환자고 스스로 휠체어 타고 대소변 정도는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잠깐 정도는 볼일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거의 혼자 놔두고 외부에 나가는 건 기껏해야 한 두 시간이지... 만나절도 힘든 거죠.(사례 A)

애기 아빠가 인천병원에서 거긴 병원이고 인천병원이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휠체어 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있고 한 주는 집에 올 수 있게 되어있고 한 주는 제가 가서 있게 되어있으니까 7,8개월 정도 했죠.(사례 C)

(4) 장애 가족으로서 경험하는 사회적 변화

○ 가족의 고립

- 장애는 당사자의 사회생활을 제한하게 된다. 달라진 신체와 장애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적인 구조, 개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차별의 시선들은 이전만큼의 사회생활을 어렵게 한다. 이전에 하던 체육동호회 등을 나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산재 이전에 친하게 지내던 동료나 친구관계도 서운함과 불편한 마음으로 인해 점차 멀어지게 된다.

생각은 젊는데, 생각은 아직 너무 왕성한데 내가 부족한 거야. 그리고 재네들만큼 못 따라가는 거지 신체적으로 운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 심 쪼그라드나봐요.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전에 만약 그걸 제 생각인데,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덜 했을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사회인 야구도 하러 다니고 하던 사람이고 그래서 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아무래도 사고가 나시고는 여가활동이나 그런 건) 전혀 못 하죠. 친구들이 그랬어요. 안 해도 좋으니까 나오라고. 근데 한 번도 안 가더라고요.(사례 C)

일반인들을 만나려면 우리가 배려 안되고 전혀 생각지도 않게 좌식 이런 바닥으로 잡아놔요. 깜짝 깜짝 놀라요. 우리 애기 아빠가 못 앉아요. 여기서. 의족이기 때문에 앉으면 일어나질 못하거든.(사례 C)

- 장해 이전에 다양한 사회적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던 당사자가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것은 활동반경의 변화 외에도 가족들 내에서 머무는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들은 이로 인해 관계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
- 가족들의 관계적 문제는 가족들 간의 스트레스를 더욱 증폭시키고 가족들이 서로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 특히나 ‘가족문제는 다른 곳에서 도움을 청하면 안 된다’는 관념으로 인해 이러한 고립과 심리적 어려움은 심화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이혼 등을 고려하게 되기도 한다.

죽을 뻔했어요. 안 살아야겠구나. 그만 살아야겠구나. 너하고는 못 살겠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하루이틀 알고 사는 게 아니에요. 14살 때부터 알았고, 같이 친구로 오래 알았고 연애도 오래했고, 그렇게 알고선 내가 너 뺏속까지 안다고 그래서 결혼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사람이 변할 줄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너하고는 못 살겠다 그랬어요. (힘드시면 어디에 이야기하고 도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가족 관계내의 문제니까) 못하죠 (사례 C)

- 가족들의 고립은 심리적 어려움과 남들에게 말 못할 고통들을 스스로 감내하는 데에 있는데, 이 때에 가족들 간의 자조모임이 큰 도움이 된다. 이 모임을 통하여 타인은 공감하기 어려운 장해 가족으로서의 어려움들을 공감하고, 서로 지지와 노우를 나누는 안전한 공간으로서 가족들의 중요한 지지체계가 된다.

명절날 무슨 때, 자기들은 아무렇지 않게들 생각을 해. 근데 우리는 턱 하나 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5센티 턱 하나 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야 밥 먹으러 가자.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우리는 의족이 아직 안 나와서 휠체어를 끌고 가야하는데 그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그걸 끌고 나가서 웬만한 식당엔 다 턱이 있어요. 그걸 끌어서 넘으려면 너무 힘든데, 그걸 자기들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식당도 어떤 식당은 2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거기 가기가 너무 힘든데 자기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들은 너무 평범하게 가니까. 그래서 우린 안 가겠다고 이야기해. 그럼 자기들은 심통을 내. 근데 그걸 시시콜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말 안 해도. 그래 알았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사례 C)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병원에 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반갑고 똑같은 시기에 아픔을 겪고 그랬기 때문에.. (서로 위로도 해주시고) 그럼요 말도 못하죠.(사례 A)

○ 법적 다툼이 주는 가족들의 고립감

- 손해배상은 가족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된다. 이 마음은 장애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이 변화에 대한 억울함이 들어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밝히고 자유로워지고 싶은 심리적 동인이 있다. 가족들 또한 이러한 마음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된다.
- 그러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사고의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이 사고의 책임을 두고 회사와 다툼 속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더욱 강화한다. 특히 사고 장면에 대한 진술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은 당사자의 몫이지만 이를 지켜보고, 보조하는 가족들에게도 심리적 돌봄의 어려움이 전가된다.

쉽지 않아요. 다 기억해내고 그래야 하나까... 저는 무너지는 게 이 사람 잘렸던 기계 그걸 또 실제 모델명도 찾아야하고, 그걸 폐기를 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야 하고 기계 모형을.. 이 사람이 또 본인이 그걸 인터넷에서 찾아내서 뽑아냈는데 그걸 보면 무너지죠. 모습만 봐도 무너지죠. (중력) 대부분의 환자 보호자들이나 환자들은 포기해요. 소송은 너무 힘드니까 환자는 다시 떠올리는 것도 힘든 거지만 보호자가 사실은 지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거든요. (사례 A)

- 손해배상 기간 동안 경험하는 사회심리적 어려움은 증언을 거부하는 동료들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 이를 종용하는 회사에 대한 분노로 인한 불안의 증가 등이 계속되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이러한 심리적 상황이 이어지면서 가족들의 고립감과 사회에 대한 배신감, 소외는 점차 커진다.

이 사람 편만 들 수도 없고 회사 편만 들 수도 없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친했던 직원이라 할 지라도 내가 그런 부탁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와주는 척 하다가도 못하게 돼요. 부담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아직도 회사생활을 하고 있고) 어어. 혹시라도 증인이라도 서야 하면 하루 빼고 와야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아무리 내 형제간이래

도 결국은 한 치 걸러야 해요. (사례 A)

○ 장애, 가족의 사회적 욕구

- 산재 가족들은 어렵더라도 장애를 입은 후에도 가장이었던 가족의 사회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가족이 집 안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기보다 사회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주는 (재활) 성공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주 간병인과 가족들의 보조가 필수적이다.
- 재활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오고 나서도 통원치료를 유지하는 것은 신체기능의 회복 목적도 있지만, 당사자의 사회적 욕구 때문에 유지하게 된다. 집으로 돌아온 뒤 밖에 나갈 수 없고, 나가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당사자가 집 안에 고립되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은 장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활동이 불편해지거나 물리적으로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

제가 직장을 다닐 수 있지만, 그럼 남편이 케어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사례 A)

이 사람은 자꾸 도전하려고 해요. 도전하려고 해서 직장 취업 이런 데에도 서로 ***도 합격해도 결국 중증장애인들이 취업하는 건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말은 채용한다 그래도 결국에는 뭐 면접에서 다 떨어뜨려. 이게 어느 기관이든 다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사례 A)

- 기존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것은 당사자에게 심리적 위축과 변화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가족들 또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가족들은 당사자의 경제 활동을 지지하는 것이 경제적인 영역을 넘어 가족 관계 안에서나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느낀다. 따라서 가족들은 장애 이후에도 기존의 성별분업을 유지하게 된다.

(취업을 바로 해서 여러모로 나오셨겠어요. 집에 같이 계셨으면) 어휴 같이 못 있어요. 지금도 주말이면 힘든데. 아주. 그리고 집에도 원래도 잘... 본인 성격도 집에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셔야 하는 타입이에요?) 네. (사례 C)

○ 장애접근성 부족으로 인한 가족의 고립

- 보조기구에 따른 당사자의 삶의 질 차이가 크고, 개인마다 필요한 기구가 달라지지

만 장애 보조 수가로 인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기구를 구입하기 어렵고 경제적 부담이 크다. 또한 관리 영역에서도 기술적 도움뿐만 아니라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다.

보조기구 그런 게 있고 보조금이나 휠체어나 그런 게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그런 것에 대해 이야기하다보면 우리끼리 뭉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정보를 공유하기가. 다른 곳에서는 어려우니까) 네 전혀 우리는 몰랐던 사실들을 좀 요만큼 알게 되면 금방 또 가서 알려줘야 하고, 모르면 말해줘야 하니까 (서로한테요) 응. 알아요? 저기 가면 싸대.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대. (사례 C)

- 가족들의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는 데에는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접근성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도 한 몫을 하는데, 비장애인과 만날 때마다 휠체어 접근성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하고,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배려'받아야 함이 불편하게 다가와 사람들과의 만남을 포기하게 되고 이로 인한 불편함과 소외감이 가족의 몫이 된다.

다른 사람들 모임에 가면 불안한 거예요. 어딜 잡을까, 어디라디? 그래서 자연스레 빠지게 되고 안 가게 되고. 그런 게 배려라는 생각을 애기 아빠 다치고 나서 했어요. 아 이게 배려구나. 이게 정말 배려구나. 그 전에는 배려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배려인 줄 알았어요.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배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쪽 입장에서 하는 게 배려인 걸 알았어요.(사례 C)

- 산재 사고 이후 가족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항상 설명해야 하는 피곤한 관계가 되거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차별적 시선에 대한 불편함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너무 막 뭐 장애인이란 딱지가 붙으면 혜택이 정말 많은 줄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 니들. 웃긴다. 니들보다 우리가 있잖아. 그 혜택을 가지고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요. 되게 크게 명품 그런 거 입고 살고 어떻게 보면 내가 니들보다 세금도 더 내고 살 수도 있어 그래요제가. 웃겨 진짜 그래요.(사례 C)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쳐다보게 되잖아요. 남의 시선은. 그런데 본인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가족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엇그저께도 제 생일날 딸래미랑 같이 양꼬치집 가서 같이 먹었거든요? 스티비 차고? 근데 부

끄럽게 생각한다면 부끄럽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내가 편하고 삶이 행복해
질 수 있다면 그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사례 A)

- 자녀들의 경우 커가면서 장애가 있는 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데 이에 대
한 가족들의 막막함이 있다. 자녀들이 학교생활과 사회에서 다른 어른들을 통하여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나 자녀들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는 막막함이 있다.

몰랐다가, 이제는 인지를 하는 거 같아요. 뭐가 다르다는 걸 정확하게 인
지를 하는 거 같아요. 엄마 우리아빠는 다리 하나가 없어. 그렇게 말할 상
황이 아닌데 지나가면서 말해요. 더 어릴 때는 인지를 못했던 거 같은데 이
제는 조금씩 인지를 해서 지도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뭐라고 물어봐야할
지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툭툭 던지는 거 같아요. (중략) 그런 부분에서 제
가 다 하기에는 어려워요. 누군가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아이들
이 너무 어리잖아요. 이걸 내가 설명을 내가 해줘야하고 아이들이 이해가
되어야하는데 그거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사례 C)

그리고 시아버지가 저희는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자기는 너무 싫다
고. 식당에서 만났는데 너무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것 좀 가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왜요 했더니 너무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서 아버지 저는요 저걸 우리가 창피해하면 **(첫째자녀)이 **(둘째자녀)
가 아빠가 잘못된 줄 알아요. 아빠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건 아빠가
틀리거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아이들이 아빠를 거부해요. 난 아빠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아버님. 저는 이 소리는 애들한테도 해요. 왜
냐하면 멀쩡한 신체를 가지고도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부모
가 있는데 애기 아빠는 조금 다른 신체를 가져도 아이들이나 가정을 위
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해
요. 그런데 그걸 정말 저는 그렇거든요. 그렇게 아이들 있는 데에서 그
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좀 그래요. (사례 C)

(5) 변화된 경제적 욕구

- 병원 중심의 가족생활 변화에서 생기는 소비

- 병원 생활은 가족의 경제적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생활비와 치료 기간 동안 드는 비수가 보조기구들의 비용적 부담을 가져온다. 초기 산재 승인과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거나, 이를 안내받지 못한 가족들은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다.

초반에 들어가는 돈이 되게 많아요 (중략) 휠체어에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아파요, 그럼 밑에 받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침대 오래 누워있으면 또 욕창 나지 말라고 밑에 깔아주는 에어 그런 거 대여하고 뭐하고 그러는 게 잔품떼기가 끊임없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잔품떼기가 깨지는 날은 몇 천원, 몇 만원 깨지면 한 이십만원 어디 갔지 싶은 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만 돈 백 넘게 깨지고 그리고 나 밥 사먹어야지. 삼시세끼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으면 돈이 훑 딸리는 거예요.(사례 C)

○ 수가 불안정에서 오는 가족의 경제적 불안정

- 재활치료를 하면서부터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구체적 고민들을 마주하게 된다. 산재보험이 보장하는 연금과 치료비 영역 외에 보조기구에 대한 수가 외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크고, 이 수가 자체도 안정성이 없는(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장해 가족의 경제적 불안감이 크다.

불안하죠. 불안하고 과장님도 자기도 얘기는 해보지만 어쩔 순 없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구연한 같은 것도 몇 십 년 전 꺼 그대로 보지 말고 공단에서 현실화해서 수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터무니없는 것대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례 A)

- 가족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장애보조기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다.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보조기구들이 많고, 이러한 기구들의 가격이 천차만별인데다 소모품인 경우 지속적인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관련 수가는 필수적인 것 위주로, 부분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낀다.

저희도 처음 했던 의족이 2천 4백만 원에 했거든요? 나라에서 지원이 180만원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거기 연구소에서 해도 1천6백이에요. 나라에서 오롯이 그 기계 값만 해도. 그런데 그 정도를 안 쓰면, 이 사

람 체형을 버텨주질 못해요. 원채 크기도 크고, 사진은 저 만하니까. 크
잖아요(사례 C)

의족 수가라든가. 그리고 이게 많이 발전은 되어 있지만 절단환자들은
피부상태라든가 이런 게 절단 부위에 따라서 많이 힘들어요. 의족 맞췄
다 해도 조그마한 거에 따라 불편하고 그래서 몸에 맞게 바꿔야하는데
내구연한에 따라서 자꾸 줄이려고 그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안에 실리콘이라든가 이런 건 자주 갈아줘야
하는 건데 다 돈이에요. 소모품이야 이게 다. (사례 A)

- 장애 보조기구의 수가 변동이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불안감의 원천이 된다.
그리고 제도를 잘 알아야 알 수 있는 장애보조기구 구입 및 관리의 요령 등은 정보
차이로 인한 가족들의 경제적 욕구의 격차를 더욱 키운다고 할 수 있다.

사제 사람들에게 갈면 자기네들도 먹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잖
아요. 그리고 이게 부르는 게 값인 게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 적
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르는 대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에
요.(중략) (그런 것들도 정보도 인천병원에 가서서 아시게 된 거예요?)
아휴 그럼요(사례 C)

○ 주거공간 개선의 비용

- 가족들은 재활치료기간에서의 치료 시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는 거주 공간은 이전과 달라야 하기 때문에 이사와 리모델링과 같은
비용이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 장애 가족의 주거 공간의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이다. 아파트 구조에 따라서
는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엘리베이터나 지하주차장 등의 인프라
가 필요하기도 하다. 가족들은 집 바닥재를 비롯한 가구를 장애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체하는 과정에서 드는 경제적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

제가 집을 빌라에 살다가 아파트로 옮겨야 하는데 왜냐하면 휠체어가
다녀야 하니까. 그런데 계단 오르내리는 걸 못하니까. (중략) 다행히 엘
레베이터 있는 집을 제가 구해서 바로 엘리베이터 있어서. (사례 A)

속에 인테리어 다 하고 온 거거든요. 오래되어서 그렇지. 왜 여기로
왔냐고 그랬어요. 저희한테. 그거를 되게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요. 속 터지는 소리 하는 거예요. 새 아파트로 가지, 새 아파트는 여기

가 다 통로잖아요. 들어오면 다 복도죠? 휠체어가 다니기가 되게 불편해요. 이 공간, 휠체어가 돌려면 저게 돌아야하는데 커브 틀 공간을 줘야하는데 그 공간이 되게 힘들어요. 이 넓은 공간이 있어야 휠체어가 맘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사례 C)

언니네도 가보면 되게 옛날 아파트거든요? **이 언니네(다른 절단장애가족)도 34평이에요. **이 언니네도 공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저씨 때문에 (사례 C)

○ 현재의 생활 이상의 것들을 제한함

- 경제적 어려움은 당장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외에도 가족들이 미래나 '최소한의 생활' 이상의 것들을 상상하기 어렵게 한다. 가족들은 경제적인 욕구를 사치라고 느끼거나 제한된 삶을 사는 데에 적응하게 된다.

그냥 우리도 내려놓고 사는 정도지 그렇잖아요. 밑바닥을 찍은 사람들이 이제는 건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가 막 일반 사람들만큼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절대 아니거든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사례 A)

- 회사와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받게 되는 보상은 간병비, 위로금, 보조기구 비용 등 현재 산재보험 수급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이다. 산재보험의 연금은 가족들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만, 미래를 상상할 때에는 여전히 막막함을 느끼게 한다.
- 가족들은 장애가 생긴 가족의 빠른 은퇴나 비경제상황을 예상할 수밖에 없고 자녀의 양육이나 노후 측면에서 자신들의 다른 경제활동을 생각해야 한다. 본래 외벌이 가족이었지만, 산재 이후 남편의 이른 퇴직 후의 삶에 대한 우려로 경제활동 준비를 병행하기도 한다.

저는 그래서 여기 공장 같잖아요. 저는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위기감이 항상 있죠. 언니네도 그렇겠지만, 위기감은 항상 있죠. 저희는 분명히 다른 남자들보다 애기 아빠는 10년 이상 빨리 퇴직은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준비는 해요. (중략) 걱정스럽긴 했죠. 안하던 게 길어지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하지 그런 게 있어서 사람이. 그런 느낌이었던 거지 당황스럽거나 그러진.. 어떻게 시작을 해야하지. 그랬던 거죠(사례 C)

3. 사례 간 분석: 산재 가족의 주된 욕구 범주

1) 제도적 소외: 산재보험 승인 절차와 노동자 가족

○ 정보접근의 어려움

- 가족들에게 '산업재해'의 개념은 낯선 개념으로, 산재로 인하여 가족이 중증장애나 사망에 이르더라도 이 상황을 산업재해라고 인지하기 어려웠다. 가족들은 뒤늦게 산재임을 깨닫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재라는 개념을 알더라도, 과로사(과로자살), 질병사 등은 사고사와 달리 산재로 인정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해 산재로 인식하는 데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 산재 신청의 절차가 유가족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전문적인 과정이라는 것도 산재 신청을 늦추거나 망설이게 하는 데에 큰 부분이었다. 산재 신청은 자연스럽게 노무사(법률 전문가)를 통해서나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이러한 부담이 가족들이 산재 신청하는 데에 지연되는 이유로 작용했다.
- 가족들은 산재신청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나 법률적 부분의 정보가 없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권익 침해를 경험할 수 있다. 가족들은 경찰, 근로복지공단 심사 등에서 경험하는 관료화된 태도에 권익침해를 경험하거나, 가족의 죽음이나 사고에 대한 비난으로 인하여 2차적 피해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스스로 보호할 수 없고, 이것이 차후 산재 신청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인지하기 어렵다.

○ 전문가 중심의 절차

-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노무사 섭외가 필수적이다. 특히 가족들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심사에 참여한다고 해도 산재 신청의 전반적인 구상과 진행을 맡은 것은 대체로 노무사의 몫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 중심의 절차라고 할 수 있다.
-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심사위원회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가족들은 심사 절차에서 면담이나 심사에 참여하지만 심사위원들은 어떠한 절차에서 어떠한 이유로 가족들에게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지 고지하지 않는다. 산재 결정을 통하여 통보되지만, 가족들은 정확한 판결 사유 등을 알기 어렵다.
- 가족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대상화되거나 제한된 역할만 수행하기 쉽다. 심사 과정에서 자료 수집이나 답변 등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이 이상의 역할을 하기에는 제

한적이다. 가족들은 ‘증언’ 혹은 ‘증거의 수집가’로서 역할하고, 받은 질문에 대하여 답할 뿐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거나 역으로 질문을 던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문가 중심 절차에서 소외된다.

○ 산재 승인 과정이 주는 공공에 대한 불신

- 산재승인을 받기까지 가족들은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에 대한 불신을 경험하게 된다. 가족들의 큰 입증책임에 비하여 회사에 대한 강제력 없는 법제도에 대한 무능력함 느끼고, 가족을 대신하여 회사를 중재하고 이를 밝혀줄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가 없이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느낀다.
- 산재가족이 마주하는 공공에 대한 불신은 경찰, 심사위원,공단 직원 등의 관료화된 태도로부터 오기도 한다. 경찰의 매뉴얼화 된 질문이나 행정적 편리성을 염두한 설명은 가족들에게 불신을 가져왔고, 기댈 곳이 공단 밖에 없는 가족들이 심사과정에서 서류 요청이나 심사위원회에 참여해서 경험하는 시선은 가족들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만큼이나 심리적 압박을 주었다.

○ 유가족의 일과 권한의 불균형

- 당사자와 가족은 산재 신청 시 자신이 경험한 것들이 산업재해로 인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가족들은 각종 증거와 증언을 수집해야 하고, 이를 통하여 죽음이 회사의 책임임을 드러내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한다.
- 각종 증거와 증언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산재를 승인받는 과정은 가족들에게 어려운 일이다. 가족들은 이를 위하여 사고에 관한 기록들과 증언을 해줄 수 있는 회사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이 일들이 가족의 생활을 무너뜨릴 만큼 많다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죽음의 진실을 숨기려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설득해야 하고, 외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
-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데. 가족들은 현장을 직접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직무에 대해서도 알기 어렵다. 장해 가족의 경우 당사자가 이를 찾아보며 트라우마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를 감내하고자 하지만 역부족이고, 유가족의 경우 아예 정보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를 찾아가기 어려웠다.

○ 개인과 회사의 불균형적 다툼

- 산재 신청과 승인 절차에서 가족들은 회사로부터 산재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관한 증명 서류 등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때에 회사는 패널티를 받는 등 소극적인 참여 유도 조항 외에 이 책임 입증에 대한 강제적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들은 끊임없이 자료를 요구하고, 회사는 무응답으로 응수하는데 죽음에 이르거나 중증장애로 이어질 정도로 큰 산재의 경우 대체로 회사에서는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 회사의 비협조적 태도와 적극적인 방해는 가족들이 산재로 인하여 경험하는 어려움 중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족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다.
- 특히 유가족의 경우 노동자(당사자) 사망 이후 산재임을 깨닫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데, 노동자의 사망 이후 유가족은 현장이나 증인에 대한 접촉이 불가능한 외부인으로서 책임에 대한 입증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 과로사 유가족: 가족에서 시작되는 책임 입증

- 과로사 유가족의 산재 경험은 가족력과 같이 가족에게 원래 병력이 있었는지 여부부터 접근이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자신의 병력이 추가로 드러날 시 산재 승인에 장애가 될까 두려워 치료를 거부하기도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생긴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은 이후 산재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수급에 심리적 장애요인으로 작동한다.
- 과로사 유가족들은 현장조사 등으로 노동자의 일터 여건과 산재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산재 가능성을 입증하고, 산재 심사에 들어서야 현장 조사가 가능해지므로 이미 가족이 죽은 뒤 시간이 한참 흐른 뒤기 때문에 현장 조사의 의미가 크지 않은 것이다. 또한 사망 이전에 가족들이 회사 현장에 들어가 보지 못했으므로 현장조사로 산재와의 인과를 밝히기 어렵고, 사고사와 달리 구체적인 정황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 과로사 유가족은 사건 초기 경찰의 조사와 부검 등을 경험하는데 퇴근 후 집에서 사망한 과로사 유가족의 경우 사망한 장소인 집에 대한 조사와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부검을 결정한다. 이 과정은 오히려 가족들이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는지를 질문하고, 이후 산재 여부를 증명하는 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가족들은 이 과정에서 죄책감에 빠지기 쉽다.

○ 장애가족: 산재신청 과정에서의 권익 보호 어려움

- 인터뷰에 참여한 장애가족(사례A, C)는 일터에서 사고로 증증장애를 경험한 가족들은 회사로부터 별다른 설명 없이 산재 신청 서류에 사인 후 산재 보증을 수급하게 되었다. 장애가족은 응급 수술과 중환자실을 오가는 가족의 급성 치료기에 회사 주도로 산재 신청이 진행되면서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 점을 문제로 꼽았다.
- 장애 가족의 경우 당장의 생계와 병원비가 걱정되는 차에 산재보험 수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만 듣고, 서류에 사인하기 쉽다. 차후 회사와의 합의나 손해배상을 위한 절차에서 산재 신청 서류 등에 적힌 인과관계로 인하여 가족들이 불이익을 경험하는 사례도 발생하지만 가족들에게 이러한 설명을 해주거나 검토를 도와주는 제도는 없다.

2) 제도에서의 배제: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된 재난가족

○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존 복지제도

- 기존의 복지 서비스들은 이러한 가족재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갑작스러운 가족의 위기를 마주한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들은 필요한 서비스에 연계되기 어렵다.
- 가족들은 필요한 복지 제도들을 스스로 찾고, 이를 신청해야 한다. 산재 발행 직후 가족들이 산재 신청과 사후 신변정리나 급성치료기의 전업적 간병 등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활 지속을 위한 서비스를 찾아 신청하기 어렵다. 이 시기 가족들이 받는 심리적 충격과 높은 정신적 피로도는 가족들이 스스로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연계하기 어렵게 한다.
- 일부 가족들 중 복지 관련 직업 경험이 있거나, 주변 지인을 통하여 정보접근성 면에서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연계가 가능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족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는지, 근로복지공단 외에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였다.
- 가족들이 서비스에 연계되더라도 대부분 일회성 연계에 그쳤다. 시청에 도움을 요청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녀발달심리 지원을 받은 가족(사례D)도 지원이 끝난 이후 지속적 관리를 받거나 필요한 다른 서비스에 연계되지 못했다. 놀이치료를 받은 자녀 외에도 다른 자녀와 부모 또한 심리상담의 욕구가 있었지만, 부모의 경우 심리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자녀 돌봄 서비스가 함께 필요한 상황이었다. 심리상담

서비스가 있음을 알아도 자녀 돌봄서비스 연계가 되지 못해 심리 상담을 신청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 산재신청 과정에서 마주하는 국가와 정보기관에 대한 불신 또한 가족들이 기존 복지제도나 가족지원 정책을 받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 특히 심리지원 서비스는 산재 가족 상황에 대한 이해도 있는 전문가가 아니면 라포 형성이 어렵고, 상담일지 등의 기록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공식적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꺼려했다.
- 가족들에게 해당되는 복지제도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재가족을 위한 제도들이 일부 있으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확인 외에도 직접 공단에 전화하여 현재 진행되는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 증빙을 진행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지원 규모가 산재 가족들이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적은 것도 가족들이 이러한 수고를 들여 신청하지 않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사각지대에 떨어진 '재난'가족

- 산업재해는 노동자 가족을 재난상황에 빠뜨린다. 국내의 재난 관리 법령은 재난을 태풍,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난이나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사회재난으로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그러나 가족이 산재 발생 이후 경험하는 상황은 이전에 대비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가족들의 생활 전반이 위기에 빠진다는 점에서 가족 재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산재 가족들이 기존의 복지제도 수혜에 있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체로 산조사 기준에 의해 일반적인 복지수급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아 수혜 대상에서 탈락되었다. 산재 인정 이전까지의 기간이 긴 가족들은 경제적 곤란을 경험할 수 있는 여건에 있었음에도, 사망보험금의 수급이나 남은 가족의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사회보장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배제되었다.
- 재난상황에 처한 가족들에게 보험금이나 비경제활동 인구였던 가족의 취업만으로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지 못했다. 가족의 주된(혹은 유일한) 생계부양자의 사망은 현재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소득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전 시기 1인 생계부양자였던 가족의 경우 노동자의 사망 이후 거의 소득을 상실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산재 가족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기존 서비스

- 심층 면접을 통하여 가족들이 언급한 서비스들은 대체로 가사서비스, 단시간 돌봄 및 간병 서비스와 같이 가족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많았다. 그러나 산재 가족을 위한 돌봄 및 간병 서비스는 거의 없고, 장애 가족들에게 나오는 간병급여의 경우 전업적 간병에만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긴급한 상황에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어 이용이 어려웠다.
- 다른 부분으로는 가족들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산재 신청과 사후 신변정리, 관련 서비스 연계 등을 제안하고 도와주는 권익옹호형 원스톱서비스의 욕구가 컸다. 현재 산재 가족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는 없고 노조나 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 모임의 전문가 등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대한 제도적 이해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적 도움을 받기 어렵고, 노무사의 경우 법률적 신청 과정을 진행할 뿐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제한적인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
- 산재 이후 가족들이 경험하는 소외감과 불신, 불안과 같은 감정적 경험은 서비스 연계에도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어 산재 초기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서비스 연계가 가능한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서비스들은 대체로 가족들에게 이러한 신뢰감을 주기 어려웠다. 특히 심리상담 서비스의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나, 전문적 치료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상담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웠다.
- 산재 승인을 위한 심사에서 가족의 증명 역할이 컸던 가족일수록 공공이 제공하는 심리상담이나 건강검진 등이 가족의 산재 승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느끼기도 했다. 특히 과로사 가족의 경우 가족력으로 인정될까 두려워 상담 서비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하는 데 거부감이 생긴다고 답했다.

○ 장애가족: 근로복지공단 소속 재활병원의 보호망

- 장애가족 중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을 통하여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은 가족들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수혜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재활병원은 이전의 응급수술기와 비교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홀로 생활하기에 무리 없을 정도로 높은 장애접근성을 가진 물리적 환경과 더불어 전문가들이 심리적, 정보적인 차원에서 가

족들에게 여러 도움을 제공했다. 특히 물리적 환경은 가족들을 전업적 간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틈을 주어 가족들의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되었다.

- 일부 산재병원에서 진행되는 가족프로그램은 상담뿐만 아니라 대화법, 관계적 환기가 가능한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하여 가족들은 가족 관계의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는 데에 병원의 도움을 받았다.
- 산재병원의 전문가들은 치료와 재활 과정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년간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가족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퇴원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이들의 생활을 지지해주었다. 가족들은 퇴원 후에도 직업 재활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자주 방문하게 되고, 이후에도 보조기기의 구입 및 수리를 위해서 왕래하면서 다양한 지원체계에 연결될 수 있었다.

○ 산재가족: 다차원적 권익옹호 활동

- 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유가족 중 일부는 유가족 경험을 살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자살유가족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에 참여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라는 과로사 유가족을 위한 매뉴얼과 경험을 담은 책자를 발행했다.
- 가족들은 모임을 통하여 일상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다른 가족에 대한 생활지원 또한 연계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동료지원활동에 대한 전문화와 체계화 욕구가 있었다. 현재는 부족한 전문 인력과 유가족 활동가 인원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유가족들은 이러한 동료지원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 유가족들은 산재 이후 적극적으로 제도적인 공백을 메우는 가족활동에 참여하게 되기도 한다. 산재의 아픔에 공감하며 이를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도록 사회적인 합의를 회사와의 보상 합의 내용에 넣거나, 법제정 운동 등에 참여하는 것 또한 가족들이 산재 사고를 개인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산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행하는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이다.

3) 가족의 역할 과중: 일과 부담의 과중

○ 가족의 역할: 선택과 결정의 부담

- 산재 사고 자체가 가족에게 주는 정신적 충격이 크지만, 산재 이후 갑작스럽게 다

가온 재난 상황에 있어 가족들은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책임을 지게 된다. 산재 가족이 경험하는 선택과 결정의 부담감은 산재 이전에는 한 번도 고민해보지 못한 문제들을 마주하고, 이를 해쳐나가야 함에 있다. 가족들은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크게 겪고, 지나간 선택들에 대하여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고민하며 후회와 죄책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 일의 중첩과 공백

- 가족들은 산재 직후부터 간병, 생계, 돌봄, 산재신청의 일 등을 한꺼번에 경험하면서 일의 중첩을 경험한다. 간병의 경우 장해 가족일 때에 그 일의 비중이 크게 차지하지만, 가족의 죽음을 목격하고 트라우마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은 사망 가족의 구성원에 대한 돌봄도 가족들의 몫이다.
- 대부분의 가족이 간병 혹은 일상지원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산재 승인과 이후 가족의 생활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자신밖에 없어서 이 상황을 홀로 견디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진과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한다.
- 또한 도움 받을 곳 없는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발생하는 공백은 자녀에 대한 돌봄이다. 비성인 가족의 경우 특히 청소년기 이전의 자녀에 대한 돌봄의 공백은 장기적으로 자녀의 정서적 문제로도 야기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이 주 돌봄책임자의 소진과 함께 찾아올 때에 가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더욱 해소되기 어렵다.
- 한편, 경제적 문제는 가족들의 일의 중첩 문제에서 당장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산재 승인 과정이 길었던 가족들이나 간병으로 인하여 생계 활동을 할 수 없는 가족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데, 가족들은 이전과는 산재 이후 경제적 관념이 달라지면서 현재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이로 인하여 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된다.

○ 노조와 가족모임: 권익옹호와 가족 결정권의 보장

- 노조와 시민대책위는 산재 가족들의 선택과 결정의 부담을 줄여준다. 노조의 도움을 받은 가족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신들이 참여한 산재 승인과 산재 보상에 대한 합의에 있어 자신이 한 선택과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노조의 지원은 산재뿐만 아니라 사후 신변정리 등에서도 유가족에 필요한 법률적 도움을 주어 가족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었다.

- 자조모임은 산재가족으로서 경험한 노하우를 전달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우며 산재 가족의 지지체계로서 작동한다. 특히 산재승인 과정을 미리 경험해본 가족들의 경험은 각 과정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이나, 다음 진행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고, 도와주면서 권익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 산재 유가족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은 권익옹호와 가족결정권의 보장에 도움이 된다. 유가족들은 재단에서 만든 유가족을 위한 매뉴얼을 참고하거나, 장례식에 찾아온 가족들을 만나 위로를 받았다.

4) 사회적 관계의 변화: 단절과 고립

○ 기존 관계와의 단절

- 산재 가족들은 산재 발생 이후 가족들의 사회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사회적 관계와의 불편함을 경험한다. 가족들은 주변 사람들의 걱정 어린 말에 담긴 편견에도 상처 입게 되고, 점차 타인이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며 기존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점차 꺼려하게 된다. 산재가족들이 산재를 경험하고 나서의 삶은 '같은 산재 가족'이 아니어서야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 이러한 사회적 관계 변화는 산재 신청 과정에서 회사 동료와 회사 관련된 인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거절을 경험하면서 더욱 심화된다. 특히 동료관계가 좋았던 경우 산재 신청 직후부터 증언을 할 시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연락이 끊기거나, 증언을 거부당하면서 받는 유가족의 상실감이 컸다.
- 산재가족들은 사고 이후 원가족보다도 산재가족 자조모임을 더 편하게 느꼈는데, 특히 사망이나 장해 이후 노동자의 원 가족에 대한 산재가족의 불편함도 나타났다. 원 가족이라 하더라도, 산재 이후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하여 이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배우자나 자녀와 다른 시선을 가지게 되어 가족 간의 갈등 생기거나, 단절을 경험하기도 했다.

○ 회사와의 다툼으로 인한 사회 인식의 변화

- 산재소송은 산재 가족들에게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산재 책임을 입증하는 과정은 가족들이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적대적 감정을 경험하게 한다. 말을 시시때때로 바꾸고, 적극적으로 산재 승인을 방해하는 회사 측의 태도는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사람에 대한 기대와 사회에 대한 신뢰를 모두 무너뜨린다.

- 이 때의 감정은 가족들이 사건 전후를 통틀어 경험하기 어려우리 만큼 강력하다. 회사와의 다툼은 가족들에게 큰 불안과 불신의 감정을 남긴다. 산재 인정을 받고 나서도 가족들은 이러한 감정에서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게 되고, 심리적 내상으로 지속될 여지가 크다.

○ 고립되는 가족들 : 낙인과 비난

- 산재 가족들은 산재 사고 이후 낙인과 비난에 노출된다.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걸린 보험 승인과 보상 문제를 둘러싼 것 외에도 사회적으로 낙인감 있는 단어들이 자신의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산업재해, 노동자, 노조, 보상과 같은 직접적인 산재 처리 과정이 사람들에게 비난받기도 하고, 한부모 가족, 자살, 자녀 잃은 부모, 장애와 같이 사회적으로 ‘불쌍한’ 존재라 인식되는 단어들이 삶에 얹어지면서 경험되기도 한다.
- 이러한 낙인과 비난은 일상생활에 타인과의 만남을 꺼리도록 하기도 하지만, 일반 사회의 노출을 통하여 강화되기도 한다. 특히 언론 기사 등을 통하여 자신의 상황이 알려지거나, 비슷한 사건이 다루어졌을 때에 그 댓글에 달린 비난어린 논조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았다. 이 경우는 sns 등을 통하여 인터넷 여론에 쉽게 노출되는 비성인 가족의 경우 더욱 자주 노출될 수 있다.
- 이러한 낙인과 비난은 보육기관과 교육기관을 통하여 사회화 되는 시기에 ‘잘못된 것’ 혹은 ‘틀린 것’으로 경험되어 자녀들에게 또 하나의 상처로 남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사고 직후보다는 시간이 흐른 뒤 장기적으로 경험되는데 가족들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곤란함을 겪기도 한다.

○ 가족들의 새로운 사회

- 산재 가족들에게 자조모임은 산재 이후 새롭게 형성된 사회적 관계로 산재 상황에 처한 자신들의 처지를 100% 이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관계다. 가족들은 이 안에서 스스로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는다든 것 자체로 위로를 받는다. 사회 안에서 느끼는 이질적 감정이 해소되는 것이다.
- 산재보상을 위한 합의 과정에서 노조와 시민대책위 등의 활동을 함께 했던 연대자

들과의 지속적 관계도 가족들에게는 위안이 된다. 당사자는 아니지만,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준 이들의 존재는 사회적인 고립감을 해소하고 가족들이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해야겠다고 다짐하도록 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도 한다.

○ 장애가족: 장애가족으로서의 사회적 변화

- 장애 가족은 다른 낙인보다도 일상적으로 노출되기 쉬운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면서 사회적 관계와 활동의 제약을 경험하며 사회적 지위가 변동됨을 크게 느꼈다. 가족들은 당사자가 경험하는 변화의 폭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지원체계로서 이를 해소하려 애쓰게 되고, 당사자와 함께 낙인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함께 느꼈다.
- 그러나 이들 가족이 경험하는 사회적 변화는 장애접근성 문제가 크다. 비장애인 지인을 만나기 위해 넘어야 하는 식당의 턱과 좌식 테이블 등은 가족들을 위축되게 하고 이러한 약속에 대한 정신적 부담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문턱이 낮을수록 생활 보조와 간병 역할을 맡은 가족의 부담 또한 줄어들었다.

5) 사회적 문제의 개인화

(1) 산재가족의 사회-심리적 어려움

○ 사회적 문제의 개인화: 정신적, 심리적 통증으로 전이

- 갑작스러운 산재 상황과 그 트라우마는 가족들에게 심리적 어려움을 가져온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개인의 심리적 내상으로 남거나 만성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후 경험에 따라 가족들의 심리적 상태는 달라지며 적절한 지원이나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가족들의 심리적 어려움은 금방 해소되기도 한다.
- 그러나 대부분의 산재 가족들은 사회적 문제 속에서 이를 개인화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인다. 산재 승인 절차 속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렵고 가족들은 물리적인, 정신적인 일의 부담과 사회적 변화 속에서 감정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충격을 받기 때문이다.
- 가족들이 경험하는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들은 가족의 죽음이나 장애를 불러온 사고 자체의 충격도 있지만, 대체로 장시간 사회적인 부조리함과 낙인을 경험하며 강

화된다. 산재 승인 과정이 길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비협조적 태도가 강할수록, 조력자가 없을수록 가족들에게 이 과정은 큰 심리적 내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 또한 가족들이 산재 승인 과정에서 경험한 부정적 감정들도 정신적, 심리적 내상으로 남는다. 그 충격이 크고, 이러한 감정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도록 긴 시간 산재 승인 절차가 이어지면서 가족들의 사회적 불신과 불안은 점차 심리적 문제로 변화되어간다.

- 산재 유가족들이 자신을 드러내며 하는 시민운동도 심리적 고통을 수반한다. 가족들은 활동 과정에서 가족의 죽음에 대해 복기하고 발언하는 역할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산재 유가족임을 알린 이후 일상과 사회 운동의 공간이 구분되기 어렵다. 가족들은 유가족으로서 경험했던 답답한 현실을 바꾸기 위하여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참아가며 활동을 지속하게 된다.

○ 사회심리적 문제의 가족 관계 내 발현1: 가족 관계의 갈등과 단절

- 산재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심리적 충격을 줄 수 밖에 없다. 가족들 모두가 받은 충격적인 상황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거나, 이해할 수 있는 여유를 앗아간다. 궁지에 몰린 가족들은 작고 큰 갈등과 단절을 경험하고 장기화되면서 서로의 상황을 알지만 선불리 나설 수 없어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한다. 산재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한 당사자의 심리적 우울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족에게 전이되고 가족들은 이를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가족해체로 이어지기도 한다.

- 사망 가족의 경우 서로의 추모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비난을 하거나, 산재 승인에 대한 필요성을 다르게 느끼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 장애 가족의 경우 산재의 1차적 피해자인 노동자와 이로 인하여 고통 받는 2차적 피해자인 가족들의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 상처가 생기기도 한다. 노동자는 가족 내 변화에 대한 미안함과 현실 상황에 대한 억울함이 뒤엉켜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가족들은 물리적, 심리적 간병에 점차 지치면서 갈등으로 번지게 되기도 한다.

○ 사회심리적 문제의 가족 관계 내 발현2: 비성인 가족의 발달심리적 문제

- 비성인 가족의 발달심리적 문제는 특히나 산재 사고 직후보다 긴 시간에 걸쳐 관찰된다. 아동의 사회적 경험, 발달단계, 다른 자극 등이 합쳐져서 드러나기 때문이

다. 자녀가 장애가족의 존재나 사망한 가족의 빈자리에 대한 의문을 가지거나 이를 부끄러워하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신체적 고통의 호소, 공황, 자해, 분리불안이나 언어발달 지연 등의 문제로 드러나기도 했다.

- 특히 이러한 어려움은 가족의 사후 홀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 가족의 경우 더욱 크게 느낄 수 밖에 없다. 유가족은 자녀의 돌봄이나 발달에 부모와의 애착이나 대화 등이 필요한 것을 인지했지만 이미 소진이 온 스스로의 치료를 미뤄가며 이를 소화하기가 버겁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돌봄을 맡길 곳이 없어 스스로에 대한 치료 또한 받을 수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다.

(2) 겹겹이 쌓이는 심리적 문제

○ 부정적인 심리적 압박의 지속

- 가족들은 산재 이후 부정적인 심리적 압박 상황에 계속 노출이 된다. 가족의 큰 사고나 사망을 마주한 그 자체가 트라우마를 일으키지만, 이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부정적 상황은 가족을 점차 심리적 압박에 빠뜨린다.
- 가족의 사망 이후 산재 신청이나 산재 승인 과정에 들어서면서, 가족의 죽음/사고라는 큰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게 되는데 그 과정이 가족들에게 주는 심리적인 충격이 크다. 가족들은 그 안에 자신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되새기며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뒤늦게 전조 현상들을 알게 되면서 미안함이나 안타까움을 느낀다. 가족의 죽음이나 사고 직후 이를 지속적으로 곱씹는 과정은 산재가족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다.
- 또한 산재 책임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회사와의 갈등 상황이 주는 심리적 압박이 이에 가중된다. 가족들은 믿었던 동료들에 대한 배신감이나 회사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 등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불신과 불안을 경험하고 일련의 사건이 산재임이 드러나면서 회사의 책임임을 입증하게 되면 회사에 대한 분노를 경험한다.
- 산재 가족으로서 경험하는 사회적 변화 또한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변 지인, sns, 기사 댓글 등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배제감은 어디에서도 수용받거나 이해받을 수 없다는 확신은 가족들을 더욱 위축되도록 하고, 불특정한 사람들과의 마주침이 불안과 공포로 경험되도록 한다.

○ 돌볼 틈 없는 가족의 심리적 문제들

- 산재가족들은 산재 이후 산재 승인과 생활의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을 앞에 두면서 개인적인 돌봄이나 가족 간의 돌봄을 생각할 여유를 가지기 어렵다.
- 그러나 산재 승인 절차를 포함한 산재 경험은 생애 전반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수준의 감정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현실적 문제들로 인하여 이에 대한 고민이나 보살핌을 할 여유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은 가족들의 심리적 문제를 악화시킨다.
- 특히 산재승인 절차 등의 책임을 홀로 지는 가족들의 경우 자신에 대한 돌봄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가족 문제 중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문제로 남는다. 산재 사고 당사자가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지만, 가족들의 경우에도 큰 충격을 공유하며 이를 책임지는 과정에서 점차 이 고통이 강화될 수 있는 처지에 있다.
- 산재가 갑작스럽게 발생했고 이전에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산재가족들 또한 산재 이후 시민운동가로 살아가는 삶을 준비되지 않은 채 맞이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부정적 여론에 자주 노출되고, 끊임없이 산재 이슈가 터지면서 이어지는 중에 가족들이 스스로의 심리적 문제를 돌보며 활동하는 여유를 가지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가족에게 심리적 문제를 해소할 수 없도록 만든다.

○ 만성화: 정신적, 신체적 훼손

- 결국 가족들의 심리적 문제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소되기보다는 만성화될 여지가 있다. 특히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거나 주변의 대안적인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가족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 특히나 정신적 훼손은 신체적 문제로도 전이되는데 가족들이 면역계 이상을 경험하는 등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을 경험하기도 한다.
- 가족들은 산재 승인 과정을 소화하고 나서 다시 생계로 복귀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 산재 신청 과정이 주는 충격으로 인하여 이전과 같이 작업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또 다른 사고가 생길 뻔 하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사례 F).
- 돌봄에 있어서도 가족들의 심리적 문제가 만성화되어 주 양육자로서의 책임이 버거워지기도 했다. 노동자의 자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던 배우자가 한 살도 되지 않은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며 입양을 바라는 경우도 있었으며(사례C), 홀로 육아를 하면서 지쳐서 자녀에게 필요한 돌봄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지만 수행할 여력이 없음을 호소하기도 했다(사례 D).

(3) 산재 가족의 사회적 울타리

○ 단절과 고립의 보호막: 산재 가족 당사자 모임

- 산재 가족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문제는 관계의 변화와 고립이다. 관계의 변화의 경우 기존에 맺고 있던 관계들 즉, 혈연가족 관계나 회사 동료 관계, 주변의 친한 친구들과 같이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이 모임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경험에 가깝다.
- 그런 산재 가족들에게 산재 가족 당사자 모임은 산재가족이라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지 않는 유일한 울타리로서 작동한다. 가족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과 소외는 장시간에 걸쳐 가족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훼손하게 되는데 당사자 모임의 존재는 이러한 고립과 소외감을 희석하고 가족들을 오롯이 인정하는 사회적 경험이 존재하는 곳으로 가족들에게 중요한 지지체계가 된다. 가족들은 원가족보다도 ‘유가족 모임’이나 ‘장해가족모임’을 가족처럼 가깝게 느끼고 있었다.
- 생활에 있어서도 가족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에 가까웠다.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 모임은 가족들 중 일상생활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다른 유가족이 반찬과 청소 등 가사노동을 대신해줌으로써 도움을 주기도 하고, 장해가족 모임의 경우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테리어 및 보조기구 등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가족 생활의 전반적 도움을 주기도 했다.
- 가족들은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면서도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고 치료받고 싶다는 욕구를 드러내기도 했다. 산재 가족의 심리치료에 대한 두려움은 죄책감과 억울함, 불안과 우울과 같은 여러 어두운 감정들이 섞인 상처를 직면하는 것 자체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산재 가족들 안에서 ‘설명할 필요 없이 당연한 것’으로 이 상처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는 이 자체로 가족들에게 안전감을 준다.
- 가족들은 자조모임(당사자모임)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욕구도 보였는데 코로나 등으로 인해 사회적 만남이 제한되는 현실 속에서 가족들의 고립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산재가족 네트워크는 그 자체로 서로에 대한 지원체계로 의미가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당사자 역할: 인정과 지지, 사회구조의 개선자

- 산재 가족들은 같은 입장의 산재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됨으로써 심리적 치유의 역할까지 도맡고 있다. 다른 곳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서로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른 산재 가족의 손을 놓기 어렵다. 가족들은 전문적 상담가가 아니더라도, 서로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로서 심리적 치유를 서로 돕고 있었다.
- 심리적 지원을 넘어 당사자들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가사서비스나 돌봄서비스에 해당하는 도움을 나누거나, 산재 신청 및 승인 과정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소한다. 또한 산재 가족들이 경험하는 곤란함에 대하여 알고 연계받을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서로에게 정보제공하기도 한다.
- 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 모임은 산재 가족의 경험을 토대로 책을 발간하여 가족들의 산재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과로사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김용균재단 등 유가족이 함께 활동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이 산재와 노동안전 문제의 사회적 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산재 분야에서 가족 특히 유가족들은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자살유가족원스톱 서비스 구축 과정에는 실제 과로자살 유가족이 참여하였다. 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은 일본의 사례를 들어 유가족의 동료지원가 활동가 양성과 이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 든든한 동료 지원

- 산재가족들의 사회적 활동 참여는 산재 승인 과정에서 여러 사회적 도움을 받는 계연결고리가 되기도 한다. 가족들은 산재 승인 과정에서 함께하는 유가족이나 시민단체를 통하여 산재 사고가 개인의 아픔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산재보험 승인 이후에도 이 문제의식을 유지하면서 사회개선 활동에 뛰어들기도 한다.
- 사회적 활동은 가족들을 산재로 인하여 아픔을 겪는 피해자에서, 산재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를 바꾸는 활동가로서의 자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하게 한다.
- 산재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도 동료지원 활동은 의미가 있다. 외벌이 가장의 산재로 인한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나 산재 이후 본래 하던 일을 할 수 없도록 지쳐버린 가족들에게 이러한 동료지원가 활동은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 회복의 길로 올라서면서 경제적 안정성도 줄 수 있는 일 자리로서 기능할 것이라 기대된다.

- 양성과정을 통하여 유가족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산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의 지지와 생활 전반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역할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동료 지원활동가의 양성은 다른 산재 가족들에게 상담과 서비스 연계, 산재 승인 과정의 다방면적인 역할을 가족들이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유가족 당사자로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가족들은 지속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노출과 갑작스레 터지는 산업재해 사고나 노동문제에 대한 대응 등으로 일상 생활의 패턴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로 인한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고 있다. 동료지원 양성과정에는 산재 가족 당사자로서 이러한 사회적 활동에서 오는 소진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심리적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기보호적 기술 등이 포함되는 과정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6) 가려진 경제적 욕구

○ 산재 이후 변화된 가족의 경제적 욕구

- 산재 가족들은 산재 이후 경제적 욕구를 크게 드러내지 않게 된다. 이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산재보험이나 회사의 보상이 불충분하더라도 경제적 보상을 이미 ‘받고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하여서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산재 이후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드러내기 어렵게 한다. 특히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만으로 재활을 받는 가족과의 비교처럼 산재보험 수급으로 인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느낌은 가족들이 경제적 욕구를 드러내기 어렵게 한다.
- 사회문화적으로 경제적 보상에 대한 터부로 인하여 경제적 욕구를 잘 드러낼 수 없도록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가족들은 경제적 보상금액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죽은 가족을 ‘팔아먹은’ 것처럼 가족들에 대한 비난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금전적 액수로 책정된 사망과 장애의 무게가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경제적 욕구를 드러내기 어렵다.

- 또한 산재 이전과 이후 삶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상실되는 것 또한 가족들이 경제적 욕구를 잘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데에 일조한다. 산재 이전의 삶은 노동소득을 통하여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꿈꾸기 위해 현재의 노동이 주는 압력을 값진 것으로 느끼게 했다. 그러나 가족의 죽음이나 장애는 이러한 현재의 희생이 주는 허망함을 깨닫게 한다. 가족들은 현재를 잘 영위하는 것 이외의 기대를 하기 어렵고 경제적 불안정성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욕구의 변화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잘 드러내지 않도록 한다.

○ 가족의 경제력 상실

- 산재연금액, 국민연금액 등은 사망 이전 노동자의 (임금)소득액과 연관이 깊다. 따라서 기존에 안정적 일터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경우 장애 혹은 사망 이후 산재연금을 통하여 유가족이나 장애 이후의 가족의 생활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불안정 노동자 가족의 경우 산재연금을 받더라도 부족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
- 생계 책임자의 죽음이나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를 일부 산재보험이 해소해주긴 하지만 가족들이 느끼기에 충분한 수준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산재 이후 경제활동의 변화를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갑작스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 구성원의 일자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경험한다. 특히 중년 여성이 갑작스레 생계책임을 맡을 경우 식당 아르바이트나 영세자영업 같이 불안정한 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 가족들은 산재 사고 이후의 충격이 만성화됨으로써 경제활동이 어려운 몸 상태가 되어 가족 소득이 상실되기도 한다. 산재 사고 이후 치유와 회복 보다는 산재 승인을 위한 사회적 활동이나 정보 수집 등을 이어가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지고, 신체적 문제로 발전되면서 가족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이전처럼 경제활동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로써 가족들의 경제력이 연이어 상실되기도 한다.

○ 산재 보험의 불충분성

- 본 심층면접에서 드러난 산재연금의 불충분성 중 가장 도드라진 부분은 산재승인 이전까지 가족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특히 과로자살, 질병사망 등은 산재 승인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

- 산재연금은 당장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변화된 삶을 위한 시작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특히 이사는 모든 산재 가족들에게 중요한 이슈였다. 유가족들의 경우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이사를 고려하게 되고, 장애의 경우에도 장애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와 리모델링을 고려하게 되기 때문이다. 주거 문제는 가족의 경제적 불안정에서 큰 문제가 되지만 이와 관련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가 없어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 장애가족의 경우 장애 보조기구 수가 등이 일부만 보장이 되면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부보조금도 대체로 가족들이나 당사자의 욕구보다 낮은 수준의 보조기구에 대한 책정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 보조기구를 활용하기 위한 생활용품을 비롯하여 경제적 부담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은 장애가족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다.
- 이는 중증장애 가족의 소득이 높게 책정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경제적 욕구가 여전히 크다는 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산재 보험이 연금 등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조하지만 장애가족들이 장애 이후 경험하는 추가비용을 모두 포괄하기 어렵고, 목돈이 필요한 시기에는 더욱 이러한 경제적 보장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

○ 산재의 필연적 가족부담

- 산재 상황은 많은 부담을 가족들의 몫으로 돌린다. 산재 당사자에 대한 치유와 회복 프로그램, 충분한 지원이 없다면 그것이 오롯이 가족 자원 안에서 마련되어야 하고, 이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직결될 수 있다.
- 유가족의 경우 사후 신변정리 과정에서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이 노동에 있어 경제적으로 자기 부담이 있는 직종의 경우 가족들이 갑작스레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을 경험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 무기력감과 우울을 경험하는 가족들에게 경제적 문제 또한 지속적인 압박으로 남는다. 특히나 양육의 책임을 홀로 지는 유가족의 경우 자녀의 발달지연, 심리치료 등이나 학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우려로 생계 활동을 하려고 하지만, 자신이 일을 나갈 경우 자녀를 돌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어가게 된다.
- 장애 가족은 장애가 생긴 이후에도 가족 내 성별분업은 유지되는 경향이 있었다. 주 간병인이 직접 생계에 뛰어들 경우, 중증장애 가족이 집 안에 고립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선뜻 이를 선택하기 어렵다. 산재 장애 가족의 사회생활 단절은 개인의 정신적 측면이나 가족관계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 영향을 주므로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부족한 삶을 오히려 선택하게 된다.

〈표 21〉 산재 가족의 욕구 범주 종합 분석표

범주		하위범주
산재보험 승인 절차에서의 가족 소외		정보 접근의 어려움 전문가 중심의 절차 산재승인 과정이 주는 공공에 대한 불신 유가족의 일과 권한의 불균형 개인과 회사와의 불균형적 다툼
		과로사 유가족: 가족에게서 시작되는 책임입증 장애가족: 산재신청 과정에서의 권익 보호의 어려움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된 재난가족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존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떨어진 재난가족 산재 가족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기존 서비스
		장애가족: 근로복지공단 소속 재활병원의 보호망 과로사 유가족: 다차원적 동료지원활동
가족역할의 과중		가족의 역할: 선택과 결정의 부담 일의 중첩과 공백
		노조와 자조모임: 권익옹호와 가족결정권의 보장
사회적 관계의 변화: 단절과 고립		기존 관계와의 단절 회사와의 다툼으로 인한 사회 인식의 변화 고립되는 가족들: 낙인과 비난 가족들의 새로운 사회
		장애가족: 장애가족으로서의 사회적 변화
사회적 문제의 개인화	산재가족의 사회-심리적 어려움	사회적 문제의 개인화: 정신적, 심리적 통증으로 전이 가족 관계의 갈등과 단절 비성인 가족의 발달심리적 문제
	겹겹이 쌓이는 심리적 문제	부정적인 심리적 압박의 지속 돌볼 틈 없는 가족의 심리적 문제들 만성화: 정신적, 신체적 훼손
	산재 가족의 사회적 울타리	단절과 고립의 보호막: 산재 가족 모임 당사자 역할: 인정과 지지, 사회구조의 개선자 튼튼한 동료 지원
가려진 경제적 욕구		산재 이후 변화된 경제적 욕구 가족의 경제력 상실 산재보험의 불충분성 산재의 필연적 가족부담

제 4 장. 결론:산재(사망) 노동자가족지원정책제안

1. 산재 및 산재가족 지원을 위한 법체계 개선

1) 산재가족 지원 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한 법 개선: 재난가족지원법 제정

- 현재 산재와 관련된 법은 주로 산재 사망의 경우 유족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 집중되어 있으며, 질병이나 장애 산재의 경우 의료적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산재가족을 보호하는 법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산재는 당사자 가족에게는 갑작스런 재난 상황이다. 사망 유가족에게는 가족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충격이, 중증 장애 산재 가족에게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장애 상태가 가족의 경제생활, 사회생활 등에서 산재 이전과 다른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한다. 또한 산재로 인한 사망과 장애는 일반적인 사망사고나, 장애와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 물론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 서비스 시스템은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생애주기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욕구들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따라서 산재 가족이 직면하는 위험에 대한 사회서비스 욕구는 기존의 사회복지 체계 안에서 해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에서 산재 가족의 경험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산재가족이 경험하는 문제들이 단순한 돌봄 욕구, 의료서비스 욕구, 심리서비스 욕구와 다른 재난과 같은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또한 현재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산재 뿐 아니라, 자살,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의 재난 상황에 직면한 가족의 특수한 욕구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없다. 건강가족지원, 긴급지원 등 파편화된 가족지원 서비스가 존재할 뿐이다.
- 산재가족 지원 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한 접근은 두 가지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산재 가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위기 가족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 현행 가족 지원제도는 대표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상의 위기가족 긴급지원, 긴급복

지지원법상의 긴급복지서비스가 있다. 그러나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법의 주된 목적이 가정이 사회통합을 위한 기능을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있으며, 재난에 직면한 위기가족 긴급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난개념이¹²⁾ 자연재난이나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어 산재가족을 포괄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산재와 관련된 특수성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다.

-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은 주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산재가족의 의료, 소득보장 욕구를 충분히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다.
- 따라서 현행의 위기가족 긴급지원에서 재난의 범위를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에 추가하여 산재까지 포괄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둘째는 재난가족지원법을 새롭게 제정하여 가족재난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재난가족에 대한 법적 지원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 앞서 제안한 건강가정기본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 등 기존의 위기 가족에 대한 법적 지원 체계를 산재가족을 포괄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은 새로운 법적지원체계를 만드는 것보다 실행이 용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가족지원체계는 여러 부처별로 나누어져 산재해 있어 재난상황에 직면한 가족들이 경험하는 다층적 욕구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 따라서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적 재난 뿐 아니라, 산재, 자살 등의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재난 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새롭게 구성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재난가족지원법을 도입하여 기존의 위기가족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재난가족지원법 중심으로 통합하여 포괄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12) 건강가정지원법 제21조의2는 재난에 직면한 위기가족의 긴급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서 재난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재난가족 지원법은 재난의 정의와 지원 대상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천재지변 같은 자연적 재난, 전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 산재와 같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재난 등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대상자의 범위를 재난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및 유가족과 친구 그리고 재난 구조 및 서비스 제공 종사자 등을 포괄하도록 규정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가족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산재가족 권익 옹호를 위한 법 개선

- 앞 절에서는 산재가족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체계의 개선을 살펴 보았다. 이 절에서는 산재가족의 권익 옹호를 위한 법 개선 내용을 살펴본다.
- 먼저 산재 승인 절차와 관련된 지원 체계 개선 방안으로 산재 사업장의 산재 관련 자료 제출과 관련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
 - 현행 산재보상보험법 제117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질문하거나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이때 사업장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제129조 제2항 제4호) 규정되어있다.
 - 그러나 이 규정은 임의 조항일 뿐이고, 현장 조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인력 구조상 촘촘한 조사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권이 산재승인 신청인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산재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이 회사에 대하여 질문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제재하는 강제 규정은 없다.
 - 따라서 산재 신청 과정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근로복지공단보다 훨씬 적극적인 산재 승인 신청인에게도 질문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불응 시에는 신청인의 입증 책임을 덜어주는 방식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판례에서는 사용자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신청인의 입증책임을 덜어 준 사례가 존재한다(대법 2017.8.29. 선고 2015두3867 판결).
- 둘째, 산재 가족 권익 옹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 산재 가족에게는 산재 승인 관련 법적 절차, 산재 불승인 시 불복 절차나 산재 이후

회사와의 합의나 손해배상 등의 과정에서 전문적 법률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다.

- 현재 증명 책임이 개인(노동자, 유가족)에게 있는 구조는 개인이 거대 법인인 회사와 싸우도록 하는 구조를 양산해 가족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
- 산재 가족들의 경우 산재 이후 가족이 법적 조사를 받거나 서류에 사인을 하는 등 차후 가족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 권리나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고지받지 못했고,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법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 권리와 침해 가능성에 대한 고지가 필요하다.
- 그리고 산재 심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절차가 한 차례 더 이어지면서 이중의 조사과정을 거침.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공단)의 중재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3) 산재법상 복지 증진 사업 지원 대상 및 사업 범위의 확대

- 산재 가족에 대한 법적지원체계의 개선과 권익옹호를 위한 법개선 뿐 아니라 산재 가족에 대한 폭넓은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산재법 제9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장학사업 등 복지증진 사업의 대상을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에서는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유족뿐만 아니라 중증 영양상태 또는 장애 1~7급 등의 가족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 그러나 지원이 필요한 가족의 범위는 더 넓을 수 있다는 점과 안정적인 산재 가족 지원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현행 산재법 제92조 제1항 제2호의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산재 가족에 대한 지원이 생활안정자금 용자와 장학사업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산재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면 다양한 형태(현금, 현물, 보건·복지 서비스 등)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법 개정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산재가족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와 서비스 욕구

1) 산재가족 지원 통합 시스템의 구축

- 산재가족 통합지원 시스템의 목적은 산재 승인부터 이후 생활상의 물질적 심리적 어려움 등 전 과정에 대한 포괄적,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산재 발생시 산재 승인 및 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리한다.
- 현재 산재 가족의 특수한 욕구에 대한 지원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이며, 산재가족들은 자발적인 가족 모임이나 민간단체의 지원 시스템에 의존하여 산재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 산재 가족에 대한 지원은 산재가족에 대한 특화된 지원방식 보다 공공 소득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 시스템에서 산재가족이 포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위기에 직면한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들은 돌봄, 취업, 의료, 심리상담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산재가족이 이용하기에는 분절적이고 단편적이어서 산재가족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소득 기준 등 자격조건의 제약으로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도 제한적이다.
- 따라서 산재가족 통합지원 시스템을 통해 산재발생 시점에서의 권익옹호 및 긴급가족지원,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돌봄 등 가족지원, 장기적으로는 일상생활의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및 자조모임 지원 등 산재가족에게 필요한 단계별 지원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산재는 가족이 예상치 못하게 경험하는 위기 상황이다. 따라서 산재초기 가족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기력한 경향이 있기때문에, 가족들에게 서비스 정보를 전달하고, 다양한 행정적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2) 산재 가족의 주요 서비스 욕구

(1) 산재 심리 상담의 특수성을 고려한 동료지원 상담가의 역할

○ 산재 유가족들은 산재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심리상담과는 차별화된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 특히 일반적인 심리상담에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일반적인 트라우마 상담과 달리 산재와 산재가 가족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동료지원상담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전문적 트라우마 상담과 산재를 이해하는 동료지원상담가의 역할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산재가족 지원 서비스에는 필수적이다.

(2) 돌봄지원

○ 자녀돌봄, 가사 및 간병과 관련된 서비스는 산재 사고 직후 필요한 서비스로 자주 언급되었다.

- 자녀돌봄 서비스, 가사 및 단시간 간병 서비스는 산재로 인해 돌봄 책임과 간병을 전담하게 되는 경우, 소진을 막고, 산재 관련하여 필요한 다양한 사후 조치들을 이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었다.

- 그러나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내에서 이러한 서비스는 소득 기준 등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산재 가족에 대한 긴급돌봄지원 서비스는 조건없이 보편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3) 심리지원

○ 산재승인여부를 떠나 작업장에서의 재해나 사망사고는 산재가족들에게 매우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남긴다. 특히 산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상당수의 유가족들은 자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는 유가족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산재가족에 대한 심리지원은 산재가 가족의 책임이 아님을 명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망사건 산재 승인 여부 통보시(특히 불승인 통보시) “유가족의 탓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위로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같은 문구를 기재하는 심리적 지지가 필요하다.

○ 산재가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는 단발적 서비스 연계를 넘어 지속적이고 장기

적인 모니터링과 개입이 필요하다.

- 비성인 가족(자녀, 동생 등)이 경험한 가족의 장애나 죽음으로 인한 심리적 상실감은 뒤늦게 발현되어 가족들에게 잠재적 문제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심리상담 뿐 아니라 가족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족지원 프로그램,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높다.

(4) 경제적 지원

- 산재 이후 가족의 경제적 욕구는 개인의 저축, 다른 가족들의 원조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에서의 보험급여가 존재하지만, 주 생계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특히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의 경우 큰 도움은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가족들은 개인의 저축이나 다른 가족의 원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 특히 중증 장애 산재의 경우 의료비 지출과 보장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로 인해 일반적인 가구와 달리 소비지출 수준이 높았다.
 - 따라서 산재보험 급여의 적절성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5) 동료지원가 양성 및 제도 운영

- 산재라는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동료지원가 제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동료지원가는 산재 가족의 심리·사회적 욕구 해소와 산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산재가족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기때문에 산재 가족에 대한 수용적 지지체계를 구축하는데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동료지원가는 산재가족에게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사례관리, 당사자간 지지와 위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동료지원가는 산재가족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나오며

- 노동조합과 시민대책위는 산재 승인 관련 자료조사와 확보에 있어서 노동자 가족의 개별적 대응보다 효과적이고, 가족의 어려움도 덜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그러나 반대로 노조나 시민대책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족의 경우 산재 승인 및 위기극복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특히 자살 산재유가족들은 사회적인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산재 사실을 드러내기 어려워하고 있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였다. 심지어 산재 승인 신청 자체를 꺼려하거나,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산재승인도 어려워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 있었다. 산재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며 사회적 타살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낙인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더하여 ‘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념은 산재유가족에게 사회적 시선이 주는 두려움이라는 또 다른 고통을 부여하고 있었다.
- 그리고 산재가족들에게 죽음이나 장애는 산재보상금으로 해결될 수 없는 심리적 트라우마와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로 인한 경제적 보상을 바라보는 통상적인 불편한 시선들은 산재가족들에게 이중의 상처를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산재는 사회적 타살이며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사회적 위협이다. 따라서 산재가족에 대한 지원은 동정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아닌 인정과 사회적 연대의 관점이 필요하다. 따라서 산재가족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산재의 특수성만을 고려한 협소한 접근보다는 보편적 재난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재에 특화된 정책보다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사회적 보호시스템의 틀에서 산재 관련 정책들이 통합되고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 물론 산재가족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작업장에서 산재가 사라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다.

참고문헌 정리

[연구보고서]

- 국제노동법연구원 (2015). 비전속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강화 방안. 고용노동부
- 국제노동법연구원 (2015). 대리운전기사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전속성 기준 마련 연구. 고용노동부
- 박은주 (2015).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 개편방안 연구.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 연구센터
- 박용규 (2018).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을 산정·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양재성 (2015).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합리적 재분류 방안,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센터
- 우송대학교 (2018). 자녀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 및 자녀 유족수급권 보장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 우송대학교 (2019). 자녀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 지급기준에 관한 연구. 고용노동부
- 임찬수, 신슬비 (2015). 2015년 산재요양종결자 취업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센터.
- 장석훈·신슬비 (2020). 2020년 산재보험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2차코호트 3차 조사).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 충남대학교 산학연구 (2017).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 한국노동연구원 (2016). 배달대행 배달원의 종사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 강화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 한국노동연구원 (2018). 서비스업종 취약계층에 대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 한국노동연구원 (2019).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 한국사회정책연구원 (2018).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편 방

안. 고용노동부

한충현 (2015).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 연구.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센터.

한충현, 이승욱 (2015). 산재근로자 내일찾기서비스 효과성 분석 연구.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센터.

[학술지]

강윤경, 김지원, 홍세희 (2019). 재근로자의 일자리 만족도에 따른 프로파일의 잠재 전이분석과 영향요인 검증. 『장애와 고용』, 29(1), pp. 35-60.

김영춘 (2018). 산재 근로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3), pp. 813-822.

신운철, 여현옥, 권준혁 (2015). 이동식 크레인 사망재해 원인분석 연구. 『2015년 대한안전경영과학회 춘계학술대회』, pp.10-17

이준상 (2019).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23(4), pp. 91-113

임정연, 이영민 (2016). 원직복귀 산재근로자의 직장적응 영향요인 분석. 『인문사회 과학연구』, 17(1), pp 531-564.

장동한, 문성현 (2015).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의 차원에서 분석한 산재보험제도의 발전적 운영 방안, 『貿易 研究』, 11(2), pp. 433-448

최창보 (2015). 산재보상보험의 예방급여제도 도입 검토. 『노동보험포럼』, 제8권 제 1호(통권 제15호).

[단행본]

김인숙. (2016).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방법과 분석』. 집문당

더불어사는 삶 사단법인

희망씨